

2017년도
종합편성PP(MBN)
재승인 백서

2018. 2.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목 차

I. 2017년도 종합편성 PP 재승인 주요경과	1
II.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5
1.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건, '15.4.29)	7
2.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속기록, '15.4.29)	25
3.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안건, '15.9.24)	41
4.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속기록, '15.9.24)	59
5. '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세부계획(안건, '16.8.11)	63
6. '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세부계획(속기록, '16.8.11)	81
III. 재승인 신청 안내	97
1. 2017년도 종합편성PP 재승인 신청 안내	99
IV. 시청자 의견 청취	213
1.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문	215
2. 시청자 의견청취용 사업계획서 요약문	219
V. 재승인 심사	225
1.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227
2. 세부 심사기준	231
3. 심사평가 결과	251
4. 심사의견서	257
5. 심사위원회 회의 및 사업자 의견청취 속기록	263
1) 제1차 회의	265
2) 제2차 회의	283
3) 제3차 회의	301
4) 제4차 회의	313
5) 사업자 의견청취	327
VI. 재승인 의결	353
1. 종편PP 재승인 의결(안건, '17.11.27)	355
2. 종편PP 재승인 의결(속기록, '17.11.27)	373
VII.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청취 반영여부 공표	387
1. 종합편성PP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공고문)	389

**I . 2017년도 종합편성 PP
재승인 주요경과**

주요 경과사항

- '15. 4월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의결
※ '16년 이후 실시될 지상파방송 재허가 및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사전 확정·공표
- '16. 8월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 의결
※ 심사위원회 구성(심사위원 위촉기준 및 결격사유 포함) 및 운영 방안, 추진일정 등
- '17. 4. 25. 재승인 신청법인 대상 설명회 개최
- '16. 5. 30. MBN 재승인 신청서 접수
- '17. 9월 MBN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17.9.1~30.)
- '17. 11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17.11.8~11.10.)
- '17. 11. 17. 사업자 의견청취
- '17. 11. 27. MBN 재승인 의결(조건부 재승인, '20.11.30까지)

<참고> 2017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재승인 주요경과 사항

○ 재승인 사업자 : 종편PP(TV조선, JTBC, 채널A), 보도PP(YTN, 연합뉴스TV)

□ 주요 경과사항

- '15. 4월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의결
※ '16년 이후 실시될 지상파방송 재허가 및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사전 확정·공표
- '16. 8월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 의결
※ 심사위원회 구성(심사위원 위촉기준 및 결격사유 포함) 및 운영 방안, 추진일정 등
- '16. 8. 12 재승인 신청법인 대상 설명회 개최
- '16. 9 ~ 10월 YTN, 연합뉴스TV, TV조선, JTBC, 채널A 재승인 신청서 접수
- '17. 2. 7 '16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위원회 보고
- '17. 2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17.2.20~24)
- '17. 3. 6, 10 TV조선, JTBC, 채널A 의견청취
- '17. 3. 9 보도PP 재승인 의결
※ 재승인 : YTN·연합뉴스TV('20.3.31까지)
- '17. 3.22 TV조선 청문 실시
- '17.2.26~3.23 상임위원 간담회 8회 개최
- '17. 3.24 TV조선, JTBC, 채널A 재승인 의결
※ 재승인 : JTBC('20.11.30까지), 채널A('20.4.21까지), 조건부 재승인 : TV조선('20.4.21까지)

※ 2017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재승인 백서('17.8월 발간) 참조

**Ⅱ.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1.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안건, '15.4.29)**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2015 - 18 - 078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5. 4. 29.	
공개여부	공개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제 출 자	위원장
제출일자	2015. 4.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5. 4. 29.(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1. 의결주문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승인 심사기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부터 적용하기 위함
- 동 계획을 고시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방송법령상 고시 제정의 위임 근거가 없어 우선적으로 이를 의결하여 적용하고, 현재 개정 추진 중인 방송법에 위임 근거가 신설되는 경우 고시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허가·승인 대상

연도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지상파 라디오방송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	공동체라디오방송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
16년	MBC 계열사, 지역 민방 등 34개사	안동MBC, KNN, 광주 방송, 대구방송, G1, 제주방송 6개사	-	-
17년	KBS·MBC·SBS·EBS 등 10개사	KBS, MBC, SBS, YTN, 한국, 유원 DMB 6개 사	관악, 마포, 성남, 성서, 영주, 광주, 공주 공동체라디오 FM 7개사	TV조선, JTBC, 채널A, MBN 4개사, YTN, 연합뉴스 TV 2개사
18년	국악방송, TBN 2개사	-	-	-

※ DMB의 경우 '15년 재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18~'20년 재허가 심사 예정

나. 심사위원회 구성(안)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15인으로 구성
-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기본계획(안) 수립시 결정
-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구분	분야	비고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분야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분야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	담당 과장

다. 심사항목 및 배점

-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

심사사항(대분류)	비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제4호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제5호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2호,5호,6호,7호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

-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 지침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심사사항	지상파방송				PP	
	TV	R	DMB	공동체R	종편	보도
1.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400	-	400	400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50	250	200	350	210	260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50	150	120	200	190	160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100	180	350	100	80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100	100	100	100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방송평가는 종전 재허가·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필요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기본계획 의결 시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정함

라. 재허가·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승인 거부'를 의결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심사기본계획 수립시 결정

4. 추진일정

- '16년 이후 : 당해 방송사업자 세부 심사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심사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허가·승인 심사

붙임.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 1부. 끝.

(붙임)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

2015. 4.



방 송 정 책 국

□ 대상 방송사업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

연도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지상파 라디오방송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	공동체라디오방송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
16년	MBC 계열사, 지역 민방 등 34개사	안동MBC, KNN, 광주 방송, 대구방송, G1, 제주방송 6개사	-	-
17년	KBS·MBC·SBS·EBS 등 10개사	KBS, MBC, SBS, YTN, 한국, 유원 DMB 6개사	관악, 마포, 성남, 성서, 영주, 광주, 공주 공동체라디 오FM 7개사	TV조선, JTBC, 채널A, MBN 4개사, YTN, 연합뉴스 TV 2개사
18년	국악방송, TBN 2개사	-	-	-

※ DMB의 경우 '15년 재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18~'20년 재허가 심사 예정

□ 심사 기본방향

-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공익성 실현 및 시청자 권익 보호 여부와 이전 (재)허가·승인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
-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 실시
-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 심사위원회 구성

- 각 분야 전문가로 9 ~ 15인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기본계획(안) 수립시 결정
- 위촉기준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련분야 전문가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

구분	분야	비고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분야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분야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	담당 과장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구성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심사위원회 임무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 결정
-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 및 (재)허가·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 필요시 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제시 등

□ 심사기준 및 배점(안)

-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

심사사항(대분류)	비 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제4호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제5호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2호,5호,6호,7호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

- 매체별/채널별 특성과 기존 재허가·승인 배점 등을 고려해 심사 기준별 배점을 차별화
 - (지상파/종편·보도PP) 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공성, 공익성 제고 책무를 강하게 부여하기 위해 '2. 방송의 공적책임'의 배점 비중이 큼
 - (종편PP) 도입시 정책목표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3.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의 배점에 큰 비중을 부여
 - (DMB/공동체R)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배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심사사항	지상파방송				PP	
	TV	R	DMB	공동체R	종편	보도
1.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400	-	400	400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50	250	200	350	210	260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50	150	120	200	190	160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100	180	350	100	80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100	100	100	100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심사사항(대분류)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심사항목(중분류)은 매체별/채널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차별화
 - (지상파TV) 지역방송사와 중소방송사 방송광고판매 지원 이행 정도 등
 - (중편·보도PP) 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등
 - (DMB) DMB 전용 프로그램 (재)제작·편성, 채널구성, 난시청 해소 노력 등
 - (공동체R) 소출력 커뮤니티 매체에 적합한 방송프로그램 기획 등
- 매체별/채널별 구분없이 방송평가는 40%, 재허가·승인 심사결과는 60%를 반영(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외)
 - 종전 재허가·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 종전 재허가·승인시 기 반영된 제재 감점은 제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함
-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기본계획 의결 시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영
 - 세부 심사기준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재허가·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승인 거부'를 의결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심사기본계획 수립시 결정

붙임. 매체별/채널별 재허가·승인 심사기준(안)

<붙임> 매체별/채널별 재허가·승인 심사기준(안)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90(비계량) 80(비계량) 80(비계량)	250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⑥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100(비계량) 50(비계량)	150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⑦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⑧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⑨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비계량) 20(계량) 50(비계량)	100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⑩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⑪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⑫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 지원 이행 정도** ⑭(재)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10(비계량) 60(비계량)	100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광고판매 지원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배점은 ⑭으로 병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지상파라디오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 점	
1.방송평가	①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청취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90(비계량) 80(비계량) 80(비계량)	250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⑥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100(비계량) 50(비계량)	150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⑦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⑧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⑨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비계량) 20(계 량) 50(비계량)	100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⑩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⑪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⑫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⑬(재)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 점	
1.방송평가	①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80(비계량) 60(비계량) 60(비계량)	200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방송프로그램 편성실적 및 편성계획의 적정성 ⑥DMB 전용 프로그램 (재)제작 및 확보 계획의 적정성 ⑦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⑧채널구성 계획 이행여부 및 계획의 적정성	10(비계량) 30(비계량) 50(비계량) 30(비계량)	120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⑨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⑩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⑪난시청 해소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⑫DMB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30(계량) 50(비계량) 50(비계량)	180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⑬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⑭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⑮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⑯(재)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4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60(비계량)	100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공동체라디오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①지역주민을 위한 방송의 공적 역할 수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②청취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소출력커뮤니티 매체로서 지역사회발전 기여실적 및 계획	120(비계량) 80(비계량) 150(비계량)	350
2.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④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⑤공익성 관련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50(비계량) 50(비계량)	200
3.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⑥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⑦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⑧재무적 건전성 ⑨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30(비계량) 50(계량) 120(비계량) 50(비계량)	350
4.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⑩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⑪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⑫(재)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감점(계량)* 감점(계량)* 100(비계량)	100
5.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할 수 있음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5.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비계량) 70(비계량) 20(비계량)	210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⑦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90(비계량) 80(비계량) 20(비계량)	190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⑧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⑨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⑩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30(계량) 20(비계량)	100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⑪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⑫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⑬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⑭(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승인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방송평가	①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150(비계량) 80(비계량) 30(비계량)	260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⑦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60(비계량) 70(비계량) 30(비계량)	160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⑧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⑨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⑩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40(비계량) 30(계량) 10(비계량)	80
5.방송발전을 위한 자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⑪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⑫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⑬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⑭(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승인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2.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속기록, '15.4.29)**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5. 4. 29.(수) 14: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5-18-078)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방송정책국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승인 심사기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부터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동 계획을 고시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방송법령상 고시 제정의 위임 근거가 없어 우선적으로 이를 의결하여 적용하고, 현재 개정 추진 중인 방송법에 위임 근거가 신설되는 경우 고시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허가·승인 대상은 밑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15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기본계획안 수립 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관련 분야는 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가 있는데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배점은 밑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허가·승인 여부 결정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승인 거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심사기본계획 수립 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2016년 이후에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심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의결안건> 4페이지에 채점 대항목이 있습니다. 지상파TV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은 1,000점 중에 250점입니다. 종전보다 얼마나 상향 조정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여기에 있는 항목별 점수들은 기존에 있던 점수들을 대부분 분류만 재분류해서 집어넣은 것이고, 사실상 거의 동일한 점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대항목 점수는 동일한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 아래에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부분과 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부분의 배점이 제일 높는데 종전과 같다고 한다면 소항목 배점을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첨부자료를 보시면 중분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중분류가 지상파 같은 경우 공익성과 관련해서 4가지 항목으로 배점되어 있었는데, <붙임> 6페이지를 보시면, 그 부분들이 중분류 <2>번, <3>번 항목 2가지로 통합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대분류의 큰 점수는 그대로 있고 소분류에서만 조정한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주로 중분류...

○ 김재홍 상임위원

- 기본계획의 중분류...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시행세칙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시행세칙이라고 하면 보통 심사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부분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향후 세부지침으로 수립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항목이 많고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크게 움직이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지상파 TV의 경우 중분류 2항에 보면 공적책임·공정성이 90점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80점으로 되어 있는데, 중분류에서 공정성 항목이 전보다 얼마나 올라간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했을 때도 90점이었습니다. 공적책임·공공성 이행실적과 실현계획으로 해서 각 40점, 50점을 배정해서 90점이었기 때문에 그 점수를 합치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중분류도 배점이 조정된 것이 없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각 매체별로 항목들이 서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 심사 기본계획에서는 배점을 조정한다기보다는 그런 항목들을 조정·통합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진행됐지 배점을 크게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배점이 변경된 것은 종편 부분이나 뒷부분에 있는데, 여기에는 방송평가가 기존에 350점 반영되던 부분에서 400점으로, 저희가 방송평가를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점 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상파TV는 그런 변화도 없고, 종편에서 공정성·공적책임이 많이 올라간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 10페이지의 종편을 보시면 <2>번 항목에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이 110점이었는데 이번에 120점으로 10점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상파TV에서는 대분류, 중분류의 배점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종편에서만 바뀐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종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방송평가가 350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400점으로 늘어나면서 밑에 있는 <4>번 재정적 기술항목을 기존보다 약간 낮추었습니다. 그 부분을 낮추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부분을 10점 높이고, 그런 약간의 일부 미세조정은 있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종편 심사 배점기준이 종전과 비교해서 바뀐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바뀐 것은 방송평가가 350점에서 400점으로 늘어나서 50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50점이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해, 경영 부분, 경영·재정실적 부분을 일부 40점 정도 감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대분류 기준으로 하면 10점 정도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종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지적되어 온 것은 보도의 공정성 문제와 균형 있는 편성 비율의 문제 그리고 콘텐츠 투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배점 조정이 없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와 관련해서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부분과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부분의 점수를 10점 정도 추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경영·투자 실적 부분의 적정성 부분에도 점수가 배점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종편은 아까 제가 지적한 항목의 배점이 일부 상향된 것 같이 보이는데, 지상파TV의 경우에도 방송의 공정성과 콘텐츠 투자 분야가 계속 강조되어 오고 있으므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배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하는 대분류, 중분류에 변경이 없다면 큰 변화, 큰 개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시행세칙을 정할 때 그 틀 내에서 할 수 있을 텐데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만약 콘텐츠 투자 부분을 강화한다면, 심사항목 하단에 '재량평가'라고 해서 10%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재량평가 항목으로 조금 늘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기본적인 배점이긴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부심사기준을 만들 때 보다 타이트(tight)하고 까다롭게 만든다면 보다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와 별도로 재허가 재승인의 배점 항목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또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개선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점수를 만들 때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점 만점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도 개선안은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큰 틀의 점수변화를 주기보다는 체계를 바꾸고 이것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2가지 목표가 있지요. 기본계획과 고시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재허가·재승인 때 우리가 중시하는 방송의 공정성이나 콘텐츠 투자를 개선하기 위해 채점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것인데 후자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100%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은 저희가 '14년 2월부터 10월까지 연구반을 운영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문가 토론회와 방송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긴 했는데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아까 고 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 정도 여유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부계획이 만들어지면 그때 어느 정도의 보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것이 2016년부터 시행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2015년도, 금년 방송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15년 말에 재허가 시기가 돌아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달 초 위원회에서 심사계획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2016년 1월 1일부터지만 실질적으로 2016년 말 도래하는 사업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 배점 항목을 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계 부위원장

- 지난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재난방송과 관련해서 재허가·재심사 때 우리가 좀 더 배점을 높여서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런 상황에 관련해서 배점표의 어떤 부분이 재난방송과 관련한 평가 부분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일단 개략적인 것은 제가 설명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고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뒤에 <붙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붙임> 6페이지 지상파입니다. <3>번 ⑥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붙임> 10페이지 종편입니다. <3>번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다시 말씀 드리면 지상파 <3-6>, 종편 <3-7> 같은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송평가'라고 400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총 배점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지상파의 경우에는 방송평가가 만점이 900점인데 그중에 60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편의 경우에는 만점이 700점인데 그중에 65점이 재난방송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방송 부분을 저희가 강조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좋은 틀이 있는데 그것은 재허가·승인 당시에 만약 재난 이슈가 클 경우에는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번을 보면 모든 사업자에 대해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기준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심사기준을 수립할 때 방송평가에서도 재난방송 배점이 강화되고, 또한 엄격하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방송평가를 담당하는 방송기반국과 협의해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허원계 부위원장

- 그러니까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가 400점인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 배점에 큰 변화는 없지요? 원래 원안에도 있는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평가 내용은 많이 변화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일단 현재까지의 방송평가에는 지상파나 종편에 점수가 배점 되어 있는데, 방송기반국에 확인해 보니까 연말까지 방송평가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재난방송 관련 배점이 없었던 위성·유료방송, SO 부분에도 그런 부분을 추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강화되면 400점 부분에 또 반영이 되는 것이고, 아까 전영만 국장이 말씀 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익성 관련 프로그램에 배점을 하고 있고, 재난방송 이슈가 크게 터지게 된다면 전

체 배점의 10%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해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해에 한해서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여지도 일부 두고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현재 방송평가에, 플랫폼사업자는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SO와 위성방송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배점을 분명히 다시 해서 거기까지도 의무를 지우도록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재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주 좋은 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이라는 상황이 매년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그해에 꼭 평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우리가 재난에 대해 이 부분을 반영시켜서 가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참고로 여기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상파 같은 경우에 ②번, 또 종편 ②번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부분이 있는데….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이 부분은 세부 심사기준을 만들 때 어떤 것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겠지만,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방송법 제5조와 제6조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난방송은 아시다시피 방송법에는 없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그 내용이 있다 보니까, 세부심사기준은 그 당시에 확정하겠지만, 저희가 현재 예시로 가지고 있는 것에는 빠져 있는데, 재난방송도 공적책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는 것도 적극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심사계획 수립에 따라서는 재난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제4조, 제5조, 제6조 위주로 평가가 되지만, 재난방송이 큰 의미를 차지하면 그것도 역시 공적책임·공공성의 한 부분이 될 테니까 반영이 가능할 여지도 있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리고 우리가 감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감점은 보통 방송평가에서 반영이 많이 됩니다.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했을 때 1년치와 2년

치는 방송평가가 반영되어서 들어가고, 당해 연도는 방송평가 그다음에 나오는 관계로 재허가 때 바로 감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6페이지 단서를 보시면 감점기준은 기본적으로 방송평가에서 적용하는 감점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평가규칙을 개정할 때 감점기준을 강화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재허가 심사 때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감점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동일하게 감점할 예정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이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은 추후 방송법에 위임근거가 마련되면 고시로 제정할 내용이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번에 처음 보고할 때,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임시허가 승인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이것은 법이 아닌 기본계획이고 추후에 고시로 들어갈 내용인데, 그렇다면 '재허가·승인', '거부', 그다음에 650점 미만이라면 '조건부'로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기본계획상에는 '재허가·승인', '조건부 재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승인 거부' 이렇게 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정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보고할 때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임시 허가나 승인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제도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당시에 시작할 때는 그 부분까지 마련해서 연구용역까지는 마쳤습니다. 다만, 사업자의견수렴 결과 아무래도 사업자의 방송운영이나 법적지위가 약간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당시의 연구계획에는 근거조항 정도 들어가는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묶어서 하기 보다는, 이 부분이 사전에 공표하는 것이 빨리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전공표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부분은 추후에 좀 더 검토해서 임시 허가제 도입 방향, 이런 구체적인 운영내용들은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사무국에서 판단해서 이번에 재허가 심사기준, 기본계획안만 먼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상황의 불가피성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를 하다 보면 재허가 불허 점수, 재승인 불허 점수를 맞고도 별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조건부'로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불허임에도 불구하고 불허 이후의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조건부를 붙여서 재허가나 재승인을 내렸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연구용역도 하였고 지난번 보고 때 언급도 했던 만큼 이와 관련된 제도정비가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기본계획을 의결하면 실질적으로 2016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임시 허가나 임시 승인제도를 법제화해서 적용한다고 해도 앞으로 빨라야 2017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연구도 있고 저희 내부 검토도 있고, 다만 사업자들 일부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보고접수를 이미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허가 승인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이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본계획의 의미는 최소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아주 크게 높여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객관성·투명성·공정성들을 다 중전보다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계획안이 잘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앞에서 보고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서둘러서 이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사항, 심사항목 내지는 배점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까 세부기본계획을 의결할 때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레버리지(leverage)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결국에는 심사사항, 심사항목별로 배점도 의미가 크지만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점수를 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50점이라고 하는 분기점을 가지고 있지만 매년 재허가·재승인할 때마다 점수 주는 것이 800점, 900점이라면 배점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650점 언저리에서 아래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점수를 준다면 배점의 5점, 10점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은 운영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임시 허가·승인 제도 관련해서 말씀 드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더 짧게 준다면, 아니면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한다면 그것은 정도의 차이입니다. 임시적으로 한다는 것과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짧게 갖고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한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허가·재승인 제도에 대한 연구를 꼭 하고 계신데, 실제로 실익, 유효성을 잘 따져서 지금의 제도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것이 항상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할 때는 기존 제도와 상대비교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서 이번 기본계획이 잘 준비가 되어서, 틀은 중전의 재허가·재승인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여러 가지 유의미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사전적으로 예측 가능성도 높이면서 시의적절한,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이 일어난 해에는 또 그런 측면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 시의성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준비된 계획은 두가지 측면에서 중전에 저희가 운영해 왔던 제도보다는 크게 진전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결국은 운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재허가·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시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이번에 임시 허가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는데, 임시 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합니다, 시행령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에 넣으면 되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법을 고쳐야 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법을 개정해야 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허가 같은 경우에는 전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파법령이나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 저희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아직 검토 중이라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검토 중이라는 것을 여기에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임시 허가제를 검토하기 전에는, 지금까지 재허가·재승인을 해 준 경우에도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말하자면 재허가 거부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조건을 붙여서 그냥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형식적이다” 하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심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조건을 붙이는 대신 좀 더 실효성 있는,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서 기한을 설정해서 임시 허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 중에 조건을 이행하면 정식 재허가로 전환하는 제도를 검토했던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연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방송법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을 적극 검토해야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실질적이다, 실효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임시 허가 또 임시 허가 못 지않게 중요한 것이 방송시설의 양도·양수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기본계획 형태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방송사업자들의 의견도 일부 수용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지난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포함하여 방송사업자 의견수렴까지 해서 이번 기본적인 형태, 틀을 종합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방송사업자들로부터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배점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일부 방송사업자들은 방송 배점에 대해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반영은 못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국 배점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3.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
(안건, '15.9.24)**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2015 - 51 - 227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5. 9. 24.	
공개여부	공개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에 관한 건

제 출 자	위원장
제출일자	2015. 9. 24.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에 관한 건

<2015. 9. 24(목),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1. 의결주문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2. 제안이유

- '15.4.29. 제18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중 위원회 검토결과 재허가·승인 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수정내용

가. 재허가·승인 여부의 결정

제18차 위원회 의결('15.4.29)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승인 거부'를 의결-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제18차 위원회 의결('15.4.29)	수정안
<p>○ <u>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심사 기본계획 수립시 결정</u></p>	<p>○ <u>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u></p> <p>- 다만, 심사사항 중 ‘<u>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u>’과 ‘<u>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u>’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u>조건부 재허가</u>’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u>조건부 재승인</u>’ 또는 ‘<u>재승인 거부</u>’를 할 수 있음</p>

4. 향후 계획

- '16년 이후 도래하는 재허가·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승인시 적용

붙임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 1부. 끝.

(붙임)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안)

2015. 9.



방 송 정 책 국

□ 대상 방송사업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

연도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지상파 라디오방송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	공동체라디오방송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
16년	MBC 계열사, 지역 민방 등 34개사	안동MBC, KNN, 광주 방송, 대구방송, G1, 제주방송 6개사	-	-
17년	KBS·MBC·SBS·EBS 등 10개사	KBS, MBC, SBS, YTN, 한국, 유원 DMB 6개사	관악, 마포, 성남, 성서, 영주, 광주, 공주 공동체라디오 FM 7개사	TV조선, JTBC, 채널A, MBN 4개사, YTN, 연합뉴스 TV 2개사
18년	국악방송, TBN 2개사	-	-	-

※ DMB의 경우 '15년 재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18~'20년 재허가 심사 예정

□ 심사 기본방향

-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공익성 실현 및 시청자 권익 보호 여부와 이전 (재)허가·승인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
-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 실시
-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 심사위원회 구성

- 각 분야 전문가로 9 ~ 15인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기본계획(안) 수립시 결정
- 위촉기준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련분야 전문가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

구분	분야	비고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분야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분야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 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	담당 과장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구성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심사위원회 임무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 결정
-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 및 (재)허가·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 필요시 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제시 등

□ 심사기준 및 배점(안)

-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

심사사항(대분류)	비 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제4호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제5호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2호,5호,6호,7호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

- 매체별/채널별 특성과 기존 재허가·승인 배점 등을 고려해 심사 기준별 배점을 차별화
 - (지상파/종편·보도PP) 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공성, 공익성 제고 책무를 강하게 부여하기 위해 '2. 방송의 공적책임'의 배점 비중이 큼
 - (종편PP) 도입시 정책목표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3.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의 배점에 큰 비중을 부여
 - (DMB/공동체R)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배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심사사항	지상파방송				PP	
	TV	R	DMB	공동체R	종편	보도
1.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400	-	400	400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50	250	200	350	210	260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50	150	120	200	190	160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100	180	350	100	80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100	100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심사사항(대분류)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심사항목(중분류)은 매체별/채널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차별화
 - (지상파TV) 지역방송사와 중소방송사 방송광고판매 지원 이행 정도 등
 - (중편·보도PP) 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등
 - (DMB) DMB 전용 프로그램 (재)제작·편성, 채널구성, 난시청 해소 노력 등
 - (공동체R) 소출력 커뮤니티 매체에 적합한 방송프로그램 기획 등
- 매체별/채널별 구분없이 방송평가는 40%, 재허가·승인 심사결과는 60%를 반영(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외)
 - 종전 재허가·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 종전 재허가·승인시 기 반영된 제재 감점은 제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함
-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기본계획 의결 시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영
 - 세부 심사기준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재허가·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승인 거부'를 의결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붙임. 매체별/채널별 재허가·승인 심사기준(안)

<붙임> 매체별/채널별 재허가·승인 심사기준(안)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방송평가	①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90(비계량) 80(비계량) 80(비계량)	250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⑥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100(비계량) 50(비계량)	150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⑦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⑧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⑨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비계량) 20(계량) 50(비계량)	100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⑩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⑪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⑫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 지원 이행 정도** ⑭(재)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10(비계량) 60(비계량)	100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광고판매 지원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배점은 ⑭으로 병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지상파라디오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방송평가	①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청취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90(비계량) 80(비계량) 80(비계량)	250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⑥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100(비계량) 50(비계량)	150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⑦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⑧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⑨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비계량) 20(계량) 50(비계량)	100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⑩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⑪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⑫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⑬(재)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방송평가	①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80(비계량) 60(비계량) 60(비계량)	200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방송프로그램 편성실적 및 편성계획의 적정성 ⑥DMB 전용 프로그램 (재)제작 및 확보 계획의 적정성 ⑦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⑧채널구성 계획 이행여부 및 계획의 적정성	10(비계량) 30(비계량) 50(비계량) 30(비계량)	120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⑨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⑩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⑪난시청 해소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⑫DMB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30(계량) 50(비계량) 50(비계량)	180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⑬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⑭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⑮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⑯(재)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4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60(비계량)	100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공동체라디오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①지역주민을 위한 방송의 공적 역할 수행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②청취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소출력커뮤니티 매체로서 지역사회발전 기여실적 및 계획	120(비계량) 80(비계량) 150(비계량)	350
2.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④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⑤공익성 관련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50(비계량) 50(비계량)	200
3.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⑥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⑦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⑧재무적 건전성 ⑨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30(비계량) 50(계량) 120(비계량) 50(비계량)	350
4.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⑩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⑪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⑫(재)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감점(계량)* 감점(계량)* 100(비계량)	100
5.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할 수 있음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5.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방송평가	①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비계량) 70(비계량) 20(비계량)	210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⑦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90(비계량) 80(비계량) 20(비계량)	190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⑧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⑨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⑩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30(계량) 20(비계량)	100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⑪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⑫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⑬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⑭(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승인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방송평가	①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150(비계량) 80(비계량) 30(비계량)	260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⑦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60(비계량) 70(비계량) 30(비계량)	160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⑧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⑨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⑩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40(비계량) 30(계량) 10(비계량)	80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⑪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⑫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⑬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⑭(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6.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승인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배점의 10%이하에서 반영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을 포함한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

**4.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
(속기록, '15.9.24)**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5. 9. 24.(목) 09:05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에 관한 건 (2015-51-22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5년 4월 29일 제18차 위원회에서 방송사업자 심의·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중 위원회 검토 결과 재허가·승인 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허가·승인 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주요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제18차 위원회 의결 당시에는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 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승인’ 또는 ‘재허가·승인 거부’를 의결하되,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당해 방송사업자의 세부 심사 기본계획 수립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 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재허가·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의결하여 주신 내용은 ‘16년 이후 도래하는 재허가·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승인시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부분은 전에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락됐던 부분이 뒤늦게 발견되어서 추가되는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5. '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세부계획
(안건, '16.8.11)**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2016 - 45 - 162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6. 8. 11.	
공개여부	공개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제 출 자	위원장
제출일자	2016. 8. .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16. 8. 11(목),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1. 의결주문

-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17년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3. 주요경과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의결('15.4.29.)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 의결('15.9.24.)

4. 주요내용

가. 재승인 대상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 2개사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 >

방송분야	방송사업자명	방송채널명	대표자	승인유효기간
종편PP	(주)조선방송	TV조선	변용식	'17. 3. 31.
	(주)제이티비씨	JTBC	김수길	'17. 3. 31.
	(주)채널에이	채널A	임채청	'17. 4. 21.
	(주)매일방송	MBN	조현재	'17. 11. 30.
보도PP	(주)와이티엔	YTN	조준희	'17. 3. 12.
	(주)연합뉴스티브이	연합뉴스TV	박노황	'17. 3. 31.

※ 승인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주)매일방송의 심사는 분리하여 진행

나. 심사 기본방향

-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인으로 구성
 - ※ 심사위원 위촉기준 및 결격사유는 붙임 참조
-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안) >

구 분	분 야 (인원)	비 고
심사위원 (13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 률 분 야(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분야(3)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 술 분 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운영

-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 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재승인 여부, 재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 심사위원회 임무

-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심사항목·배점과 평가방법 결정
- 심사평가 및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 필요시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 제시 등

※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라.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항목 및 심사사항별 배점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사전 기본계획) >

심사사항	종편PP	보도PP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계	1,000	1,000

*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마. 재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5. 추진일정

- '16. 8월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 의결
- '16. 8~9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 공지
 - ※ 종편PP 중 승인유효기간이 '17.11월인 (주)매일방송은 별도 진행
 - ※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신청 설명회 개최('16. 8월)
- '16. 9~10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서 접수
 - ※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 전까지 재승인 신청(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 '16.10~12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 접수

- '17. 1~2월 중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7. 2~3월 중편·보도PP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17. 4월 중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 공지
 - ※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신청 설명회 개최('17. 4월)
- '17. 5월 중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서 접수
 - ※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 전까지 재승인 신청(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 '17. 6~9월 중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 접수
- '17. 10~11월 중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7. 11월 중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017년도 중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안). 끝.

2017년도
종합편성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

2016. 8.



방 송 정 책 국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

□ 대상 방송사업자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 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 2개사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 >

방송분야	방송사업자명	방송채널명	대표자	승인유효기간
종편PP	(주)조선방송	TV조선	변용식	'17. 3. 31.
	(주)제이티비씨	JTBC	김수길	'17. 3. 31.
	(주)채널에이	채널A	임채청	'17. 4. 21.
	(주)매일방송	MBN	조현재	'17. 11. 30.
보도PP	(주)와이티엔	YTN	조준희	'17. 3. 12.
	(주)연합뉴스티브이	연합뉴스TV	박노황	'17. 3. 31.

※ 승인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주)매일방송의 심사는 분리하여 진행

□ 심사 기본방향

-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 실시
-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안)

-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인

< 심사위원회 구성(안) >

구 분	분 야(인원)	비 고
심사위원 (13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 률 분 야(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분야(3)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 술 분 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계획

○ 심사위원 위촉기준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 심사위원 결격사유

- 2014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에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 2014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의 100분의 1 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
-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의 독자권익위원회, 시청자위원·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 일정 기간을 정하여 법률·정책·경영·회계 등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계약

-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인 일간신문사·뉴스통신사·방송사업자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기고 또는 방송 출연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법인의 2017년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자
- 2014년 1월 1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승인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주)와이티엔)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 심사위원회 운영(안)

○ 기본방향

-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 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재승인 여부, 재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 심사위원회 임무

-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심사항목·배점과 평가방법 결정
- 심사평가 및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 필요시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 제시 등
 - ※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의견청취

- (청취내용)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등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참석대상)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
 - ※ 불가피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사전 양해를 얻어 대리인 참석 가능
- (청취일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방법)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 심사평가 방안

- (평가원칙)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신청법인의 제출 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
- (평가방식)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계량 평가 : 방송평가, 재정력 능력, 법령위반 및 시정명령 횟수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정량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를 부여
 - 비계량 평가 : 다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각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 범위 내에서 구체적 점수를 부여

< 비계량 평가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 >

구분	등 급	내 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0% 이상 20% 미만

-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2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 점수 및 최저 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심사기준 및 배점(안)

-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5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

심사사항(대분류)	비 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제4호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제5호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2호,5호,6호

- 심사항목 및 심사사항별 배점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세부심사 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심사사항	종편PP	보도PP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계	1,000	1,000

*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재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 추진일정

- '16. 8월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 의결
- '16. 8~9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 공지
 - ※ 종편PP 중 승인유효기간이 '17.11월인 (주)매일방송은 별도 진행
 - ※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신청 설명회 개최('16. 8월)
- '16. 9~10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서 접수
 - ※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 전까지 재승인 신청(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 '16.10~12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 접수
- '17. 1~2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7. 2~3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17. 4월 종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 공지
 - ※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신청 설명회 개최('17. 4월)
- '17. 5월 종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서 접수
 - ※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 전까지 재승인 신청(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 '17. 6~9월 종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 접수
- '17. 10~11월 종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7. 11월 종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붙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방송평가	①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비계량) 70(비계량) 20(비계량)	210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⑦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90(비계량) 80(비계량) 20(비계량)	190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⑧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⑨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⑩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30(계량) 20(비계량)	100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⑪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⑫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⑬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⑭(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 감점(계량) * 70(비계량)	100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방송평가	①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150(비계량) 80(비계량) 30(비계량)	260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⑦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60(비계량) 70(비계량) 30(비계량)	160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⑧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⑨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⑩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40(비계량) 30(계량) 10(비계량)	80
5.방송발전을 위한 자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⑪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⑫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⑬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⑭(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 감점(계량) * 70(비계량)	100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6. '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세부계획
(속기록, '16.8.11)**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8. 11.(목) 09:35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가.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16-45-16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승인 대상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개사이며, 승인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주)매일방송의 심사는 분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조화로운 방송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고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도 면밀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13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는 기본계획에서 의결한 대로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기본방향은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승인 여부, 재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임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배점과 평가방법 결정, 심사평가 및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필요시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 제시 등입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심사항목 및 심사사항별 배점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편·보도PP 재승인 관련 심사사항별 배점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여부 결정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

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적 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9월까지 종편·보도 PP 재승인 신청 공지를 하고 9월에서 10월 중에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월에서 3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종편·보도PP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주)매일방송에 대해서는 '17년 4월부터 별도로 재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이미 의결해 놓은 재승인 기본계획을 일부 구체화한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예를 들면 심사항목이나 배점, 재승인 여부 결정내용은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과 차이가 없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차이가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지금 세부계획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이 자세히 되어 있고,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심사 기본방향에 정리해서 집어넣은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중에 신생 보도전문채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의 후발주자로 방송계에 뒤늦게 출범을 해서 안착을 하고, 또 방송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사회적인 공헌도, 이런 것을 따져 볼 때 건전한 발전을 도와주어야겠다는 측면에서 후발주자에 대한 배려, 또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베풀었다면 베풀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첫 번째 심사를 할 때는 많은 부분을 유예하고 후발주자로서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배려가 있었다면 이제 돌이켜보건대 종편 4사와 또 신생 보도채널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안착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면에서도 경영적 안정을 이루었고, 여러 가지 손익분기점도 벗어났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과 매체력도 지상파에 못지않게 크게 증대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년 전에 저희들이 재승인 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배점이나 심사기준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종편과 보도채널이 발전을 했고, 또 우리 사회에 상당한 일익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첫 번째 심사에 여러 가지 적용됐던 기준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매체력 증대라든가 또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걸맞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그런 점을 착안해서 후시 배점을 강화한다든가 심사기준을 바꾼 것이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종편의 영향력을 고려하고 그동안 종편이 자기들의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행을 좀 더 담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콘텐츠 투자실적이나 제작계획 같은 부분에 대한 배점을 강화했고, 3년 전 심사의 경우 그때는 정량적인 심사 평가기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량평가의 비중을 다소 높였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면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이제는 신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의 품질, 여러 가지 조화로운 편성, 아까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 심사방향에도 조화로운 편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방송의 품질과 조화로운 편성에 관한 배점 같은 것이 강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종편 심사에 관한 기본계획이 의결됐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어떨습니까? <붙임>에 대분류, 중분류가 나와 있던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수정·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한 번 먼저 여쭙 보고 싶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전 기본계획을 저희가 작년에 마련한 취지가 사전에 저희 심사기준을 미리 공표해서 알려 줌으로써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지금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리 제시했던 심사 배점에 따라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방송을 그렇게 심사에 대비해 왔기 때문에 지금 심사기준을 바꾸면 혼선이 일어나고 또 예측 가능한 측면에서 우리가 따른다, 이런 판단이라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대분류·중분류는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소분류에 해당하는 심사 세부항목이라도 심사위원들에게 재량을 줘서, 아까 제가 강조했던 방송의 품질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편성이 제대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매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방송의 공적 책임, 또 공공성·공정성·공익성 이런 부분들이 많은 배점으로 평가가 되어야만 거기에 걸맞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분류 재승인 심사기준에 보면 <2>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이 부분이 21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임>에 보면 비계량으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120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부적으로 배점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지금 단계에서는 조정할 수가 없고,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을 세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들을 높이 반영한다든가 심사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방송에서 출연진이 나와서, 소위 패널입니다. 패널이 나와서 뉴스의 뒷이야기라든가 해설을 할 때 지나치게 검증되지 않은 막말을 한다든가 검증되지 않은, 아니면 말고 식의 해설을 하는 경우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지적들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패널들의 전문성, 방송의 품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패널들의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만 방송의 품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막말이 없어야 품격 있는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한 내부적으로 방송사 내부의 검증하는 노력이 있느냐,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항목에서 배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현재 대분류 <2>번 심사항목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항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실제로 세부심사기준에서도 공적책임이나 공정성 이행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향후 실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세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세부심사항목을 정해서 심사위원들의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 방송의 품질, 품격 있는 방송을 위해서 패널들의 전문성 검증,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검증되지 않은 말을 함부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부과했는지, 또 방송사가 그런 자격미달의 패널이 나와서 여러 가지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런 출연진의 출연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배제하고 있는지 그런 실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런 실적들에 대해서 사업자가 재승인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그 내용을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들을 저희가 보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방송사 내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패널의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발언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검증하는 장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들여다봐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편들도 이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지상파에 버금가는 매체의 영향력을 갖게 됐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방송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품질과 또 편성에 관한 심사가 3년 전과는 달라야겠다, 첫 번째 심사 때와는 달리 걸맞은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방송품질에 관해서 세부심사항목을 마련해서 대분류·중분류 배점을 지금 바꿀 수 없다면 심사위원들에게 그런 것을 주문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마지막에 지적하신 출연자 관련된 공적책임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3년 전에 재승인할 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행실적을 6개월마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지금도 현재 계속 점검하고 있고….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형식적으로는 그런 출연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또 그것이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행측구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러 차례 점검과 저희의 이행측구의 내용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은 될 수 있겠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기본적으로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심사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 검토할 때도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는 됐습니다만 심사의 기본방향 또한 우리가 작년 4월 29일 의결했던 방송사업자 재허가 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준용해서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것이 심사의 기본방향이라는 것은 종편이나 보도PP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입장, 즉 정책의 방향이나 정책의 지향성들이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 두 번째 '품격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조화로운 방송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한다', 이것이 사실은 정책의 방향성, 즉 심사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절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기본방향을 정하지 않더라도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이 부분들은 반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기본계획을 2010년 9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당시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을 하셨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당시 의결된 내용에서 정책방향 및 추진방향,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은 정책목표로서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4가지로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절차를 거쳐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것 기억하고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정책 방향, 최초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재승인 심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어떻게 이번 심사에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작년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이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배점에 반영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4가지 정책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평가하십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국장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최초의 종편PP 정책 기본계획에 의결된 내용대로 보면 그 정책목표가 지금 달성되지 않고 있다, 달성 정도가 미흡하다, 이것이 대체적인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의결된 종편PP 정책목표나 기본방향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재승인 심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느냐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정책목표 달성이 미흡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사 기본방향이나 심사항목들을 보면 약간 기계적이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론 심사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도 지금 기본계획 의결하고 나중에 심사결과가 나올 때 의결하는 과정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최초의 종편PP 도입할 당시의 정책목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했던 그 정책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재승인 과정에서 철저히 점검해 달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 세부기준에서 중요한 핵심은 역시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의 기본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방향에 우리의 정책목표, 정책철학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 이행여부도 면밀히 심사, '도'가 아니고 '여부'이라고 쓰는 것이 좋겠는데 그 자료를 심사위원이 구성되면 제공하고 설명할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 심사 기본방향은 방송사업자들에게도 중요한 참고사항이겠지만 심사위원들께 드리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의 주문일 수도 있고 이것을 참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봐 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설명을 잘하고 자료를 제공해서 중점을 두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부분 기본방향에 적시된 이 내용들에 관해서는 과락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심사사항별로 과락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공정성·공익성, 콘텐츠 투자는 모르겠는데 50점 이하를 득점하면 총점이 넘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조건부 재승인으로...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중점사항이 일정한 수준에 과락하면 아주 강력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재승인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를 잘 반영시켜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말씀하신 부분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이 안건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대부분 공감합니다. 심사 기본방향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과 관련해서 다 아시는 것이지만 제가 잠깐 인용해 보면 방송법 제69조 제3항을 보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시청시간대에는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본방향의 두 번째 동그라미 첫째 줄 내용이 다 유사하긴 한데 저는 자구를 약간 손을 봤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자구가 뜻은 똑같은데 왜 저는 그런 수정 자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뒤에 '조화로운 방송 편성'보다는 '방송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앞에 방송프로그램과 중첩되니까, 그렇게 워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심사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될 텐데 그분들이 이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이런 것들은 사무처에서 다 제공해 드려야 하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예를 들면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거에 최초로 승인할 당시 방통위의 정책방안도 다 참고로 했으면 합니다. 저는 결국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이, 종편이나 보도PP에 대해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바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지만, 저는 대부분 그분들이 일반 국민, 시청자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다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그분들이 엄정하게 심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하면서 거기에 부합되거나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사 기본방향의 두 번째 내용도 저희가 그동안 논의해서 추가도 하고, 사실 방송법이나 시행령, 그리고 심사기준들을 이렇게 쪽 보면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심사 과정에서 감안이 되고 고려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표현을 일부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품격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조화로운 방송 편성’ 이것을 아까 제가 듣기로는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조화로운 방송 편성’ 이 말이 어색해서 ‘방송프로그램’을 붙여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앞단에 있는 ‘방송프로그램’이 양쪽으로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의 차이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좋은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했을 경우에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이것과는 크게 걸리는 것은 없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 표현은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조화로운 편성’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어의 순서를 조금 정리하는 것으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밑줄에도 아까 부위원장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도 면밀히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는 방송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심사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이 표현 자체가 부수적인, 부차적인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도'를 빼고 다른 표현을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냥 '도'자를 아예 빼버리지요. 이것이 아마 취지는 위에 '중점심사'가 있으니까 이것도 중점심사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도'자를 쓴 것 같은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면밀히 심사' 그냥 '도'자를 아예 빼버리면 그런 오해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을 부대상항이나 기타처럼 하지 말고 아예 동그라미 별도 항목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중점 심사하는 것이 포함 안 된 것이 재승인 권고사항이었는데 편성비를 문제입니다. 과도한 보도 편성비율이 계속 지적을 받아왔는데 아직도 다 시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와 권고사항 이행은 매우 중요한 심사대상이다, 중점사항이다 해서 이것을 별 항목으로 그냥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러면 저희는 사실 동그라미 안에 작대기를 쓴 것이 단계가 다르다고 보지 않고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인데 부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불편하시면...

○ **김재홍 부위원장**

- 독립된 항목으로...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부위원장님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옵션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본문에 세 번째 줄에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그리고 콤마(,) 하고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조건이나 권고사항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와 조금 분리되는 것으로 하고, 세 번째 동그라미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나저러나 '도'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첫 번째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요. 쪽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으로...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저도 그렇게 제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되면 '왜 또 이것만 따로 댔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게 해야 첫 번째 동그라미는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운영한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심사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이것이 내용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서...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병렬적으로 나열해서... 그러면 문구를 그렇게 수정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심사의 기본방향의 표현을 고치는 것 이외에는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제가 아까 읽은 내용대로 심사의 기본방향 두 번째 항목을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Ⅲ. 재승인 신청 안내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 안내



목 차

I. 재승인 개요	101
1. 재승인 대상 사업자	101
2. 재승인 신청서류 제출	101
3. 재승인 여부 결정	102
4. 추진일정	102
5. 유의사항	103
II. 재승인 심사	104
1. 심사 기본 방향	104
2. 심사절차	105
3. 심사위원회 구성	106
4. 심사사항(항목) 및 배점	106
III. 재승인 신청서류 및 작성·제출요령	107
1. 제출서류 및 제출부수	107
2. 작성 및 제출 요령	109
3.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110
IV. 재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111

I. 재승인 개요

1 재승인 대상 사업자

-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승인 유효기간이 '17.11.30에 만료되어 동법 제17조에 따라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재승인 신청서류 제출

- 제출기한 : 승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17.5.30(화)까지 제출)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재승인 신청서(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등), 부속서류, 별도제출자료 등
- 제출처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재승인 담당자 앞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문의 : 방송지원정책과 재승인 담당

- 02-2110-1431, anobb@kcc.go.kr 또는 02-2110-1435, kinninji@kcc.go.kr

3

재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4

추진 일정

- '17. 5. 30(화) 재승인 신청서 접수 마감
- '17. 6월~9월 신청서 검토, 서류보정, 시청자 의견접수 등
 -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의견 수렴 관련 사항을 자사 방송을 통해 공지 (자세한 사항은 추후 통보)
- '17. 10월~11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7. 11월 재승인 여부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고지 예정

- 재승인과 관련된 각종 신청(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
-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
-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Ⅱ. 재승인 심사

1 심사 기본 방향

-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 실시
-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 신청서류 접수 및 보정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및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 제출서류 세부 검토 후 미제출서류 징구 및 보정사항 통보
- 시청자 의견 청취
 -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
 - 재승인 대상 방송사는 시청자 의견 관련 사항을 자사 방송을 통해 공지
- 현장실사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 시행
- 의견청취 :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 참석대상 :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
 - 청취일시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방법 :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 심사평가 :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통보 및 공표
 - 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등 심사결과 통보
 -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등 심사결과를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표

3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인

< 심사위원회 구성(안) >

구 분	분야 (인원)	비 고
심사위원 (13인)	심사위원장 (1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3인)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 률 (2인)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 (3인)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 술 (1인)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 (3인)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4

심사사항(항목) 및 배점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 및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5개 심사사항으로 구성

심사사항	배점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계	1,000

*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Ⅲ. 재승인 신청서류 및 작성·제출 요령

1 제출서류 및 제출부수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재승인 신청서, 부속서류, 별도제출자료, 요약문 등으로 구성

<재승인 신청 서류 현황>

1. 신청공문
2.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 ① 재승인 신청서
 - ② 서약서
 - ③ 신청법인 명세
 - ④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 ⑤ 승인장 사본
 - ⑥ 주간기본편성표
3. 부속서류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5.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 5.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은 원본 보정 후 제출

□ 제출부수

구분	서류	원본	사본	CD	비고
최초 접수시	1. 신청공문	1	-	-	-
	2.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1	2	1	-
	3. 부속서류	1	2	1	-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2	-	-	파일 제출 (재무제표 등)
보정 후 재접수시	1. 신청공문	1	-	-	-
	2.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1	2	1	
	3. 부속서류	1	2	1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	-	-	필요시 재제출
최종 접수시	1. 신청공문	1	-	-	-
	2.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1	18	1	
	3. 부속서류	1	18	1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	-	-	필요시 재제출
	5.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1	18	1	

※ 보정 후 접수일은 추후 조정하여 통지

○ 부속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재승인 신청서 제출일 현재 대표자와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기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작성 관련 세부 제출 자료

○ 별도제출자료

- 2014년, 2015년, 2016년 감사보고서 각 2부
- 재무제표 및 추정재무제표 엑셀파일(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내역)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월(재무제표)
 - 2017년 ~ 2022년(추정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엑셀파일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월(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방송 프로그램 장르 분류 현황, 자체제작비 산출내역 엑셀파일('14~'22)
- 주주현황 및 주주변동내역 엑셀파일

○ 승인장은 스캔하여 그림파일(JPEG)로 변환, 수록

2

작성 및 제출 요령

-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
- 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
- 제출서류는 한글문서(hwp)로 작성하고, 기본글꼴 및 크기는 “휴먼 명조, 13”, 표는 “중고딕, 12”로 작성, A4용지(210×297mm)를 사용하며,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여 표기
 - ※ 재무제표는 한글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고,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파일로 제출
-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
- 제출하는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안쪽 면에는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또는 “원본과 같음”,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사본의 경우 겉표지 오른쪽 상단에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18),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를 기재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은 별도로 20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 서류의 해당항목을 적시
 - ※ 원본 보정 후 별도 제출
- 첨부 재승인신청서 양식은 표준양식이며, 각 사업자별 특성에 맞게 편집·수정하여 제출
- 기간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적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최종 제출은 8월 31일까지), 계획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작성

- 방송계획 작성 시 '20년은 윤년 고려(총 방송시간 527,040분으로 맞춰 작성)
- 주요 실적이 3페이지 이상인 경우, 최신일자 순으로 3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부속서류로 제출
- 신청서 접수 이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 목차는 상세히 작성
- 매 장마다 재승인 당시 계획과 이행실적 대비표 작성
- 각종 이행실적 작성 시 2014년(9월~12월) 및 2017년(1월~3월)은 전년 대비 증감비율 작성 제외
- 재무 관련 이행실적의 2014년(1월~12월)은 전년대비 증감비율 작성
- 각종 계획 및 추정치 작성 시 2017년(12월)은 전년대비 증감비율 작성 제외
- 재무 관련 계획 및 추정치의 2017년(1월~12월)은 전년대비 증감비율 작성

3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담당자 현황
- 이은호 사무관(02-2110-1431), 김민지 주무관(02-2110-1435)
- ※ 재승인 신청서 작성 관련 사항은 상기 담당자에 문의

IV. 재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 지침

2.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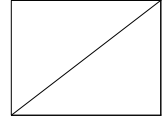
- ① 재승인 신청서
- ② 서약서
- ③ 신청법인 명세
- ④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 ⑤ 승인장 사본
- ⑥ 주간기본편성표

3. 부속서류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5.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재승인신청서



**종합편성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원 본

2017. 5. 30.(보정할 때마다 바꿔서 제출)

로고 (주)○○방송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목 차

I. 재승인 신청서	0
II. 서약서	0
III. 신청법인 명세	0
IV.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0
V. 승인장 사본	0
VI. 주간기본편성표	0

I. 재승인 신청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최대액출자자		생년월일
승인 내용	승인번호		승인일자
	소재지 (주된 사무소)	주소 : 전화 :	공급분야
법 또는 승인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위반사항	위반횟수	시정조치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사업수지건적	역무제공내용	수신자 불만처리

「방송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재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제출서류	1.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서 1부. 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100,000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 재승인신청서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1. 승인 내용

※ 소재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2. 법 또는 승인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별첨”으로 기재한 후 사업계획 해당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3.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 각각의 항목에 “별첨”으로 기재한 후 사업계획 해당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Ⅱ. 서약서

서 약 서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관하여 재확인하고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소유 제한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에 기술한 사업계획 등이 국민과 방송통신 위원회와의 공적 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본 법인은 재승인을 받을 경우, 재승인 유효기간 동안 방송법을 준수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5월 일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Ⅲ. 신청법인 명세

1

개요

※ 방송사의 설립목적, 운영방향, 방송현황 등을 기술

2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

※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초 승인장 교부일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연혁을 기술

4

법인 현황

구분		세부 내역			
방송법인 명칭		국문			(약칭)
		영문			(약칭)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법인설립일자		자본금(단위:억원)			
구분	회사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약력	임기
법인대표자					... ~ ...
편성책임자					-
임원					... ~ ...
					... ~ ...
					... ~ ...
					... ~ ...
					... ~ ...
5%이상 주요주주 현황		주주명	대표이사	참여지분(%)	회사자본금

5

주주 관련 사항

1. 주주 현황

① 구성 주주의 법인명 (성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② 구성 주주간 특수 관계자 명	출자비중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③ 대기업 해당 여부 (0, ×)	④ 외국인 지분 총합 비율 (%)	⑤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 여부 (0, ×)
				주 식 수	지 분 율	법인명 (성명)	대 표 자	국 적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총계												

※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구성주주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세부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음

※ 엑셀 파일로도 별도 제출

- ①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 법인은 법인명을, 개인은 성명을 기재하며, 개인 주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만 기재
- ② 구성주주 간 특수관계자 명 :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당해 방송사업자의 구성주주 간 관계를 표시하되, 특수관계자가 복수로 있을 경우에는 복수의 특수관계자 명을 기재
 - 각 방송사업자는 5%이상 주주에게 <6. 기타 제출사항>의 ‘특수관계자 확인서(인감도장 날인 必)’를 작성토록 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받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5%이상 주주사가 특수관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사에 ‘특수관계자 확인서’의 첨부1(주주현황)을 제공해야 함.
 - ※ 5% 미만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자 확인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기재사실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 정확한 사실을 기재
- ③ 대기업 해당여부 : 구성주주가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란에 "O"을 표기
- ④ 외국인지분비율(%) : 해당주주의 방송법제14조에 따른 외국인 지분 비율(%)을 기재
- ⑤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 여부 : 구성주주가 방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 해당 란에 "O"을 표기

2. 주주 변동내역(재승인장 교부시점~'17.3.31.)

(단위 : 백만원)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고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 엑셀 파일로도 별도 제출

3. 주주 및 자본금 변동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변동 계획
주 주	
자본금	

※ 해당 사업자만 기재하며, 기업공개 계획 등을 포함

IV.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1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적 및 계획

1. 공적책임

가. 재송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의 공적책임 수행실적 및 방송 서비스의 보편성 구현 수행실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차원에서 방송심의제재 건수 감축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과 관련 사항을 포함시킬 것
 - 출연자 섭외 시 전문성 등 자질 검증장치, 관련규정 등
 - 부적절한 발언으로 방송심의제재(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포함)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출연자에 대한 조치사항

프로그램명 (분야)	제재 조치명*	처분일자 (의결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자체 조치사항 (조치일자)**
000 (보도)	주의, 경고 등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 0조제0항	방송언어 객관성	외부출연자 3명 출연정지 1개월 (2014.1.1.)
	권고, 의견제시		선거방송 심 의에 관한 규정 제0조 제0항	정치적 중립	진행자 1명 경고 및 프로그램 폐지 (2015.12.10.)
	자체 제재				

* 제재 조치명은 방심위 제재의 경우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권고’, ‘의견제시’ 등으로 표기하고, 방송사 자체 제재의 경우는 ‘자체 제재’로 표기

** 자체 조치사항 : 진행자, 제작진, 내부 출연자, 외부 출연자 등에 대한 조치사항 기재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방송의 공적책임 구현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를 위한 향후계획

2. 공정성·공익성 구현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관련 이행실적
-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이행실적
- 방송언어 순화 실적
- 편성규약(제정일자, 주요내용, 공표방법·공표현황, 주요 이행사항 등)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관련 이행실적 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방송의 공정성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시청자 권익 보호 실적 및 계획

1. 시청자 참여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시청자 의견 반영 등 시청자 참여 보장방안의 이행실적
-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운영계획 관련 이행실적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양식)

○ 운영 현황						
구 분	2014년 9월~12월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합계	
시청자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건수						
제시의견 활용실적 건수						
○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시정 요구) 반영 내역						
순번	제안내용	시청자위원회 제시의견 반영 내역		제안시기	비고	
○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시정요구) 중 미반영 내역						
순번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내역	미반영 사유		비고		
○ 시청자 위원 명단(연도별 작성)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요이력	추천부문	추천단체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편성실적(양식)

(단위 : 분, %)

2014년 9월~12월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비고
(방송시간) (분)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편성 세부 내역 >

방송기간	프로그램 명	방송시간(분)	비고
'14. 1. 1 ~ '15. 9. 30	시청자 세상	60	
'15. 9.31 ~ '16. 10. 7	시청자 평가	60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시청자 참여 관련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시청자 불만처리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시청자 불만처리 실적', '연도별 자체심의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시청자 불만처리 관련 이행실적
 - 자체심의 기구 설치 및 운영 관련 이행실적

시청자 불만처리 실적(양식)

(단위 : 건)

구분	불만접수건수	불만처리건수	미처리건수	불만처리비율(%)
2014년 9월~12월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합계				

시청자 불만 상세 내역(상위 5대 사유)

(단위 : 건)

구분	사유 1	사유 2	사유 3	사유 4	사유 5	합계
2014년 9월~12월	건수					
	비율(%)					100%
2015년	건수					
	비율(%)					100%
2016년	건수					
	비율(%)					100%
2017년 1~3월	건수					
	비율(%)					100%
합계	건수					
	비율(%)					100%

시청자 불만 미처리건수 상세 내역(상위 5대 사유)

(단위 : 건)

구분	사유 1	사유 2	사유 3	사유 4	사유 5	합계
2014년 9월~12월	건수					
	비율(%)					100%
2015년	건수					
	비율(%)					100%
2016년	건수					
	비율(%)					100%
2017년 1~3월	건수					
	비율(%)					100%
합계	건수					
	비율(%)					100%

□ 연도별 자체심의 현황(양식)

<20xx년>

전체 방송 프로그램 편수	심의현황			심의 미필 건수	심의시기			심의결과	
	대본 심의 건수 (비율)	제작물 심의 건수 (비율)	전체 심의 건수		사전 심의 건수 (비율)	당일 심의 건수 (비율)	사후 심의 건수 (비율)	지적 건수	이행 건수

※ 자체심의 규정과 연도별 자체심의 세부실적(심의실적, 지적사항 및 시정내용 등)은 부속서류로 제출
 ※ 전체 방송프로그램 편수는 실제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편수를 말하며, 전체심의건수 보다 많아야 함
 ※ 전체심의건수는 대본 심의건수와 제작물 심의건수의 합이며, 심의시기의 총 건수와 일치하여야 함

※ 2014년도 실적은 9월 1일부터 31일까지, 2017년도 실적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시청자 불만처리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관련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등에 대한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기여실적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양식)

연도	일자 ¹⁾	지역 ²⁾	유형 ³⁾	주관 또는 주최 단체	참여 내용	금액(백만원) ⁴⁾	비고
2014년							
소계							
2015년							
소계							
2016년							
소계							
2017년							
소계							
합계							

※ 2014년도 실적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7년도 실적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작성

※ ①지역적 ②사회적 ③문화적 기여실적은 아래 양식에 따라 각각 별도로 작성

- 1) 동일 사업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00.00.00 외 0건(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등)
- 2) 시·도(서울특별시는 제외) 단위로 구분하여 기재
- 3) 기부, 후원, 협찬,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4) 관련 입증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 지역사회 발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실적(양식)

< 개요 >

(단위 : 분, %)

구분	2014년 9월~12월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계
	방송시간 (분)	방송시간 (분)	전년 대비 증감 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 대비 증감 비율	방송시간 (분)	
제작 실적			%		%		

< 세부내역 >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 <세부내역>의 방송시간 합과 <개요>의 방송시간은 동일해야 함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계획
 -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관련 계획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
 -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관련 계획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방송시간, 편성비율, 방송실적 등은 월간방송실시결과 작성기준과 동일하게 작성

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

1. 기획·편성의 우수성 및 독창성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의 당초 기본방향 및 목표와의 부합 여부
- 방송분야별, 장르별 편성 관련 이행실적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양식)

분야	2014년 9월~12월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시간	비율(재방)	시간	비율(재방)	시간	비율(재방)	시간	비율(재방)	시간	비율(재방)	시간	비율(재방)	시간	비율(재방)	시간	비율(재방)
보도																
교양																
오락																
총계																

- 1) 분야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 2) 재방송 비율의 합은 연간 총 방송시간 중 재방송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도록 작성

<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이행실적 >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프로그램 주요 제작계획 (프로그램명)	이행실적		비고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 방송프로그램 장르별 편성 실적(양식)

(시간 : 분, 단위 : %)

장르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대담								
교육·문화·예술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음악쇼								
퀴즈·게임쇼								
코미디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합계		100%				100%		

※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

※ 해당 표에 대한 증빙으로 p.41 <참고> “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양식 1>“방송 프로그램 장르 분류 현황” 별도 제출(엑셀파일 양식 준수)

〈참고〉 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

장르	정의
뉴스	○ 국내외 사건, 사고, 쟁점 등과 관련해서 진행자를 중심으로 기자가 취재한 사실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정규 뉴스 및 특별 편성 뉴스포함)
탐사보도	○ 국내외 특정 시사 쟁점에 대해, 심층적인 탐사 취재 사실 및 관련 분석내용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시사논평	○ 국내외 시사 쟁점 관련 보도내용(자사 및 타사)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 사실에 입각한 촬영과 합리적 재구성을 통해 현실을 기록하는 프로그램
생활정보	○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있는 정보와 화제 거리를 안내하거나 소개하는 프로그램
토론·대담	○ 특정 주제에 관해 진행자가 관련 전문가의 입장을 묻거나 관련 전문가가 찬성 반대 등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프로그램
교육·문화·예술	○ 교육 : 정규교과과정을 다루거나 그에 준하는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 교양 강좌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 ○ 문화·예술 : 전통문화예술과 현대문화예술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
드라마	○ 서사(narrative)구조를 지니는 허구적 구성물(fiction)
버라이어티쇼	○ 토크 버라이어티 쇼, 연예정보 쇼, 토크 쇼, 연예시상식, 시청자 비디오 모음 등의 오락 쇼 프로그램
음악쇼	○ 대중음악 일반을 다루는 프로그램
퀴즈·게임쇼	○ 지식이나 재치,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
코미디	○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의 연기 비중이 높거나 프로그램 전체의 목적이 희극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영화	○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서사가 있는 허구물
스포츠	○ 모든 종류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스포츠 뉴스(뉴스)와 특정 스포츠의 교습(교육·문화·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외
애니메이션	○ 실사영화와 다르게 다양한 제작방식을 통해서 구현되는 장르로 셀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페이퍼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등을 의미

※ 토론·대담 프로그램이란 특정주제에 관해 찬성·반대를 토론하거나 한 인물에 대해 집중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향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양식은 아래 참조

□ 방송프로그램 편성 계획(양식)

분야	2017년 12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간 ¹⁾	비율 ²⁾ (재방 송)	시간	비율 (재방 송)	시간	비율 (재방 송)	시간	비율 (재방 송)	시간	비율 (재방 송)	시간	비율 (재방 송)
보도												
교양												
오락												
총계		100% (재방 송)		100% (재방 송)		100% (재방 송)		100% (재방 송)		100% (재방 송)		100% (재방 송)

- 1) 분야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 2) 재방송 비율의 합은 연간 총 방송시간 중 재방송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도록 작성

□ 주요 방송 프로그램 편성계획

편성일자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기획의도 및 개요	비고

□ 방송 프로그램 장르별 편성 계획(양식)

(시간 : 분, 단위 : %)

장르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간	12월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비율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대담												
교육문화예술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음악쇼												
퀴즈게임쇼												
코미디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

※ 해당 표에 대한 증빙으로 p.41 <참고> “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양식 1>“방송 프로그램 장르 분류 현황” 별도 제출(엑셀파일 양식 준수)

2. 편성의 자율성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관련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2

방송프로그램 수급·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

1. 수급 실적 및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관련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양식은 아래 참조

□ 연도별 방송 프로그램 수급 실적(양식)

<20XX년>

구분		재승인 시 사업계획			실적		
		시간 ¹⁾	비율	비용 ²⁾	시간	비율	비용
자체	순수자체제작 ³⁾						
	공동제작 ⁴⁾						
	소계						
외주제작 ⁵⁾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소계						
구매	국내물 구매 ⁶⁾						
	국외물 구매 ⁷⁾						
	소계						
총계			100%			100%	

- 1) 제작원별 프로그램 시간 및 비용 합은 연간 시간 및 비용(총계)이 되도록 작성
- 2) 비용은 제작비(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외주제작사 지급비용, 구매비용 등임
- 3) 순수자체제작 : 방송사 단독으로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 가지는 경우
- 4) 공동제작 : 방송사업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기획, 투자, 제작하는 경우(공동기획, 공동 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
- 5) 외주제작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경우(방송법 제72조제1항). 단, 공동제작의 3요건 중 당해 방송사업자가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외주제작에 포함하며, 구매로 분류되는 경우
- 6) 국내물 구매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자를 위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 7) 국외물 구매 :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 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2014년도 실적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7년도 실적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기준으로 작성

구분	2014년 9월~12월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시간 ¹⁾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자체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외주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구매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총계																

1) 제작원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 방송 프로그램 투자 실적(양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F)	2015년(G)	2016년(H)	연평균 증가율(I)***	2017년 1~3월
자체제작 (A*)				%	
외주제작 (B)				%	
구매 (C)				%	
합계 (A+B+C)				%	
매출액 (D)				%	
매출액 대비 투자 비율 (E)**	%	%	%	%	%

* A = 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 E = (A+B+C)/D*100

*** I = (H/F)^(1/2)-1

※ 해당 표에 대한 증빙으로 p.48 <참고> “방송프로그램 직접제작비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양식 2> “자체제작비 산출내역” 제출(엑셀파일 양식 준수)

〈참고〉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

□ 개요

- 방송사업자가 기획·편성하고 자체 제작(순수 자체제작, 공동제작)하여 방송되기 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직접제작비와 간접제작비로 구분
 - (직접제작비) 원고출연료, 음향영상재료비, 미술재료비, 제작진행비 등 자체·공동제작 프로그램의 기획·제작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간접제작비) 임직원 인건비,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등 프로그램 기획·제작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방송 프로그램 투자 실적 및 계획” 관련 자료 작성 시,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비용은 직접제작비에 한함

※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기획비·여비·도서인쇄비·조사연구비·회의비·소모품비·피복비등 간접적 성격의 비용은 반드시 간접제작비로 분류

□ 세부분류기준

가. 직접제작비

- ① 원고출연료 :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출연료(전속금 포함), 문예비(작가료) 등 비용
- ② 음향영상재료비 :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방송 저장매체(CD, tape 등) 및 음반CD 구입비, 효과료 등 비용
- ③ 미술재료비 :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장비, 소품비, 무대·장비 설치운반비, 프로그램CG 등 비
 - ※ 미술재료비의 소품비를 소모품비 또는 지급수수료에 포함 가능
- ④ 제작진행비 : 뉴스제작 관련 취재 진행성 취재비, 프로그램 제작 관련 진행성 경비로서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투입되는 외부인력 용역비 등(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 없는 제작진행비는 제외)
 - ※ 제작진행비의 진행비를 지급수수료에 포함 가능

- ⑤ **외부장비이용료** : 외부에서 프로그램 제작장비(음향, 조명, 카메라, 특수효과 등)를 임차하는 비용
- ※ 외부장비이용료를 임차료에 포함 가능
- ⑥ **외부시설이용료** : 외부에서 프로그램 제작시설(장소, 차량 등)을 임차하는 비용
- ※ 프로그램 제작차량 : 취재차량, 중계차량, 특수차량, 제작장비 운반차량
 - ※ 외부시설이용료를 임차료에 포함 가능
- ⑦ **기획비** :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사전 자료조사, 회의 및 도서구입비 등에 따른 비용(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없는 기획비는 제외)
- ※ 기획비를 도서인쇄비, 조사연구비 또는 회의비에 포함 가능
- ⑧ **여비** :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국내외 출장비(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없는 여비는 제외)
- ⑨ **도서인쇄비** : 퀴즈프로그램 문제출제용 도서구입비 등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된 도서인쇄비(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없는 도서인쇄비는 제외)
- ※ 도서인쇄비를 기획비 또는 조사연구비에 포함 가능
- ⑩ **소모품비** : 미술재료비의 소모품비 또는 드라마 등 방송제작과 연계되는 사무용 문구류와 소모성 잡품 비용(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 없는 소모품비는 제외)
- ⑪ **피복비** : 재난재해 현장 취재를 위한 취재, 촬영기사 방한복, 우의 및 헬멧 구입경비 등 비용(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 없는 피복비는 제외)
- ⑫ **수선유지비** : 프로그램 제작차량 및 방송장비 이용에 따른 수선유지비용(단, 프로그램 제작차량 및 방송장비의 감가상각비, 건물 및 송·중계소 시설 유지비용 등의 수선유지비는 제외)
- ※ 프로그램 제작차량 : 취재차량, 중계차량, 특수차량, 제작장비 운반차량
 - ※ 방송장비 : 음향, 조명, 카메라, 특수효과 등
 - ※ 제작차량의 수선유지비를 차량유지비 또는 보험료에 포함 가능
- ⑬ **차량유지비** : 프로그램 제작차량 이용에 따른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 유지비용(단, 프로그램 제작차량의 감가상각비 등의 차량유지비는 제외)
- ※ 프로그램 제작차량 : 취재차량, 중계차량, 특수차량, 제작장비 운반차량
 - ※ 차량유지비를 보험료에 포함 가능

- ⑭ **수도광열비** : 프로그램 제작장소 및 방송장비 운영을 위한 전력료, 발전용 유류 등에 따른 비용(단, 건물 및 송·중계소 시설 운영 등의 수도광열비는 제외)
- ※ 방송장비 : 음향, 조명, 카메라, 특수효과 등
- ⑮ **통신비** : 현장 중계방송, 보도기사 송고 등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이용하는 중계 단말기 사용료(위성, LTE 등) 등에 따른 비용(단, 자체 및 외주제작 프로그램 완성품을 송신소, 중계소, 타방송사로 송출하는 비용 등의 통신비는 제외)
- ※ 통신비를 회선사용료에 포함 가능
- ⑯ **보험료** : 프로그램 제작차량, 운전자, 방송제작장비 등 보험료(단,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없는 차량, 송출장비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
- ※ 프로그램 제작차량 : 취재차량, 중계차량, 특수차량, 제작장비 운반차량
- ⑰ **지급수수료** : 미술재료비의 소품비 및 진행비*(단, 프로그램 제작비 정산감사 수수료 등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 없는 지급수수료는 제외)
- * 프로그램 제작 관련 진행성 경비로서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투입되는 외부인력 용역비 등
- ⑱ **임차료** : 프로그램 제작관련 외부장비이용료 및 외부시설이용료(단,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없는 임차료는 제외)
- ⑲ **조사연구비** :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사전 자료조사에 투입되는 용역비 또는 물품비 등에 따른 비용(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없는 조사연구비는 제외)
- ※ 조사연구비를 기획비 또는 도서인쇄비에 포함 가능
- ⑳ **회의비** :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된 회의비용(단,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 없는 회의비는 제외)
- ※ 회의비를 기획비 또는 조사연구비에 포함 가능
- ㉑ **외부제작인력 인건비** :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된 외부인력의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단, 임직원의 인건비는 제외)
- ※ 인건비를 제작 진행비 또는 지급수수료에 포함 가능
- ㉒ **외부제작인력 복리후생비** :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된 외부인력의 식비 등 복리후생비(단, 임직원의 복리후생비는 제외)
- ※ 복리후생비를 제작진행비 또는 지급수수료에 포함 가능

㉓ **외부제작인력 법정부담금** :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된 외부인력의 건강 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정부담금(단, 임직원의 법정부담금은 제외)

※ 법정부담금을 제작진행비 또는 지급수수료에 포함 가능

㉔ **기타** : 기타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연관된 비용

※ 시상비, 통신전재료, 중계권료, 저작권료, 회선사용료 등

나. 간접제작비

① **임직원 인건비** : 임직원의 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 등 인건비

② **임직원 복리후생비** : 임직원의 복리 및 후생에 사용된 비용

③ **임직원 법정부담금** : 임직원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④ **감가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물리적·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방송장비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된 부분

⑤ **무형자산(방송프로그램 외 무형자산)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물리적·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된 부분

⑥ **세금과공과** : 법인세를 제외한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세금 및 각종 공과금

⑦ **직접제작비 항목* 중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

* 기획비·여비·도서인쇄비·조사연구비·회의비·제작진행비·소모품비·피복비·수선유지비·차량유지비·수도광열비·통신비·보험료·지급수수료·임차료·기타(회선사용료) 등

⑧ **기타** : 기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할당이 어려운 항목

나. 향후 5년간 계획

-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양식은 아래 참조

<2017년~2022년까지 연도별 제작 계획>

구분		2017년 12월			2018년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자체	순수자체제작						
	공동제작						
	소계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국외물 구매						
	소계						
총계			100%			100%	

구분		2019년			2020년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자체	순수자체제작						
	공동제작						
	소계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국외물 구매						
	소계						
총계			100%			100%	

구분		2021년			2022년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자체	순수자체제작						
	공동제작						
	소계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국외물 구매						
	소계						
총계			100%			100%	

구분		2017년 12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 간	비 율	시 간	비 율	시 간	비 율	시 간	비 율	시 간	비 율	시 간	비 율
자체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외주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구매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총계													

□ 방송 프로그램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F)	2018년 (G)	2019년 (H)	2020년 (I)	2021년 (J)	연평균 증가율(K)	2022년 (L)
	12월						
자체제작 (A)						%	
외주제작 (B)						%	
구매 (C)						%	
합계 (A+B+C)						%	
매출액 (D)						%	
매출액 대비 투자 비율 (E)	%	%	%	%	%	%	%

* A = 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 E = ((A+B+C)/D*100)

*** K = (J/F)^(1/4) - 1

※ 해당 표에 대한 증빙으로 p.48 <참고> “방송프로그램 직접제작비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양식 2> “자체제작비 산출내역” 제출(엑셀파일 양식 준수)

2. 제작·협력 실적 및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관련 이행실적
 -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노력 관련 이행실적
 - 신규 플랫폼 진출 실적
 - 국내·외 콘텐츠 유통 실적
 -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 관련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계획
 -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노력 관련 계획
 - 신규 플랫폼 진출 계획
 - 국내·외 콘텐츠 유통 계획
 -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 계획

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

1. 공익성 관련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재난방송 및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재난방송 편성실적
- 공익적 프로그램(비상업적 공익광고·캠페인 포함) 편성 실적

재난방송 편성실적(양식)

< 재난방송 편성실적 >							
구분	2014년 9월~12월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비고
	방송시간 (분)	방송시간 (분)	전년 대비 증감 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 대비 증감 비율	방송시간 (분)	
재난방송	(%)	(%)	% (%)	(%)	% (%)		
전체 방송시간	(%)	(%)		(%)		(%)	

< 재난방송 세부 편성실적 >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 재난방송 편성실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등 참고하여 작성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양식)

<연도별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

(단위 : 분, %)

연도 구분	2014년 9월~12월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비고
	방송시간 (분)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실적					-			%			

※ 계획이 없었던 경우 실적만 작성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세부 내역 >

일시	프로그램 명	방송내용	방송시간(분)	비고
'14.01.01	더불어 삼시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 이야기	60	재방 2회

※ 본방 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방시 비고란에 횟수 기재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계획(양식)

2017년 12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편성시간 (분)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		%

2.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

가. 재송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소수시청자 그룹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장애인 방송 편성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시청자 권익실현 관련 이행실적
-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관련 이행실적
- 장애인 지원방안 관련 이행실적
-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관련 이행실적

□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편성실적(양식)

<연도별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 (단위 : 분, %)												
구분	연도	2014년 9월~12월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비고
		(방송시간 (분))		방송시간 (분)		전년 대비 증감 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 대비 증감 비율	(방송시간 (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어린이·청소년						-			%			
장애인												
다문화가정·노약자· 외국인												
기타												
계												

< 소수 시청자 그룹 프로그램 세부 편성 내역 >					
일시	구분	프로그램 명	방송내용	방송시간(분)	비고
	어린이· 청소년				재방 2회

※ 소수시청자 그룹별(어린이·청소년, 장애인 등) 세부 편성내역을 기재
 ※ 본방 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방시 비교란에 횟수 기재

□ 장애인 방송 편성실적(양식)

유형	2014년 9월~12월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비고
	(방송시간 분)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수화방송	(%)	(%)	(%)	(%)	%	(%)	(%)	%	(%)	(%)	
자막방송	(%)	(%)	(%)	(%)		(%)	(%)		(%)	(%)	
화면해설방송	(%)	(%)	(%)	(%)		(%)	(%)		(%)	(%)	
전체방송시간	(%)	(%)	(%)	(%)		(%)	(%)		(%)	(%)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장애인 방송 편성 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구분	2017년 12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어린이·청소년	(분 %)	(분 %)	(분 %)	(분 %)	(분 %)	(분 %)
장애인	(분 %)	(분 %)	(분 %)	(분 %)	(분 %)	(분 %)
다문화가정·노약자 ·외국인	(분 %)	(분 %)	(분 %)	(분 %)	(분 %)	(분 %)
기타	(분 %)	(분 %)	(분 %)	(분 %)	(분 %)	(분 %)
전체방송시간	분 (100%)	분 (100%)	분 (100%)	분 (100%)	분 (100%)	분 (100%)

□ 장애인 방송 편성계획

분야		2017년 12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막방송	시간(분)						
	비율(%)						
화면해설 방송	시간(분)						
	비율(%)						
수화방송	시간(분)						
	비율(%)						
전체 방송시간	시간(분)						
	비율(%)						

3.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

1. 조직 및 인력 운영실적 및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조직 및 인력 운영실적, 교육훈련 실적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고용현황', '직원 교육투자 현황', '직원 교육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고용 현황(양식)

○ 개요

(단위 : 명)

구분	2014년 9월~12월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정규직								
계약직								
계								

※ 자회사가 있는 경우 별도 작성

○ 직급별 인력 고용 현황('17.3.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임원	정규직					소계	계약직					소계	합계
인원	정원													
	현원													
인건비총액														
인건비평균														

※ 각 사업자별 내부 직급체계에 맞게 구분하여 작성하되, 인건비는 근로소득원천 영수증 상의 연간급여총액(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음) 기준

※ 정원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말 것

○ 부문별 인력구성 현황(2017.3.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임원	방송직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 영업 홍보	기타	소계
		기자	PD	아나 운서	방송 기술	기타 방송	소계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소계												

※ 임원, 방송직(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 영업홍보, 기타 등으로 구분

※ 내부 조직도(2017.3.31. 기준)



※ 사업자별 내부 조직도를 작성

□ 직원 교육 투자 현황(양식)

(단위 : 백만원)

연도 유형	2014년 9월~12월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계	
	금액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국내전문교육					%			%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 타												
합 계												

□ 직원 교육실적 세부내역(양식)

(단위 : 백만원)

기간	교육유형	교육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 교육유형은 「국내전문교육,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타」, 방법은 「위탁, 강사초빙, 견학, 연수」 등으로 구분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교육훈련 계획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향후 인력 수급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향후 인력 수급계획(양식)

구분		'17년 12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정규직	신규						
	경력	자체					
		외부					
계약직							
계							

※ 자회사가 있는 경우 별도 작성

2.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실적 및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경영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 경영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3.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가. 향후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기존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채널확보 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관련 이행실적
-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적 관계 구축 관련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 계획 기본 전략 및 방향 관련
- 향후 5년간 시장전망
- 기업 내·외부 환경 분석
- 채널확보 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전략
-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적 관계 구축 계획

4.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투자실적 및 향후전략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투자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사업운영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5. 자금조달 및 운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프로그램 제작, 방송시설 설치 등 연도별 자금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산출 근거를 제시
- 자금 조달계획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자기자본, 타인자본)으로 구분하여 자금운영 계획에 따른 추정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조달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6. 사업성 분석

- '17년~'22년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등에 근거하여 추정 재무제표(아래 양식 참조)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추정근거 제시) 사업성을 분석
 - 추정 현금흐름 등을 기초로 DCF 방법에 의한 순현재 가치(NPV), 내부 수익률(IRR), 손익분기점을 산출하고, 할인율 등 그 구체적인 산정 근거 명시

□ 추정재무제표(양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0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1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2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요약 재무 상태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요약 손익 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방송프로그램비용						
	기타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외관리비						
	인건비						
	기타 판관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재무 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 엑셀 파일 별도 제출

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1. 재무구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5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6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7년 1~3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요약 재무상태 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요약 손익계산 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재무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별첨으로 제출, 엑셀파일 별도 제출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월
- 2014년, 2015년, 2016년 감사보고서 각 2부 : 별도 제출
- 전년대비 증감비율은 실적 칸 두 번째 줄에 ()로 작성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자료 작성기준을 근거로 최근 3년간(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월)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재무비율 작성

2. 수입현황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			%			%				
광고 매출액			%			%			%				
협찬 매출액			%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			%			%				
방송시설 임대 매출액			%			%			%				
행사 매출액			%			%			%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				
기타사업매출액			%			%			%				
총 계			%			%			%				

※ 수입금액의 총합은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금액과 동일해야 함

※ 수입현황 구분 기준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함

나. 방송 프로그램 제공, 광고, 협찬, 방송 프로그램 판매, 방송시설 임대, 행사, 기타 방송사업, 기타 사업 매출액

○ 상기 항목별 세부 매출액 내역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			%				
			%			%			%				
합 계			%			%			%				

※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 예)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은 플랫폼 사업자별로 구분하고, 방송프로그램 판매는 국내·외 등으로 구분

3. 추정수입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		%		%
광고 매출액		%		%		%
협찬 매출액		%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		%		%
방송시설 임대 매출액		%		%		%
행사 매출액		%		%		%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
기타사업매출액		%		%		%
총 계		%		%		%

구분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		%		%	
광고 매출액		%		%		%	
협찬 매출액		%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		%		%	
방송시설 임대 매출액		%		%		%	
행사 매출액		%		%		%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	
기타사업매출액		%		%		%	
총 계		%		%		%	

나. 방송프로그램 제공, 광고, 협찬, 방송 프로그램 판매, 방송시설 임대, 행사, 기타 방송사업, 기타 사업 매출액

○ 상기 항목별 세부 예상수입 내역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구분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

1. 방송시설설치 운영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제작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실적', '국산장비 도입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 실적(양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9월~12월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 세부 내역은 부속서류로 제출

□ 국산 방송장비 도입 실적(양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9월~12월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나. 향후 5년간 계획

- 방송제작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계획', '국산장비 도입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 계획(양식)

구분	2017년 12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 국산장비 도입 계획(양식)

구분	2017년 12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제작,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 계획 관련 이행실적
-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실현 관련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제작,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 계획
-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계획 등

**4.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

1. 방송산업 발전 기여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현황'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계획의 이행실적
- 방송인력 양성계획의 이행실적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4년 9월~12월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계	
	금액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연구개발 총투자				%			%					

※ 계획이 없었던 경우 실적만 작성

연구개발 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연구분야	연구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합 계				(%)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방송발전 기여 계획
 - 방송장비 산업기여 및 연구개발(R&D) 계획
 - 방송인력 양성계획

2.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 향후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3. 콘텐츠 산업 육성·기여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 이행실적
- 콘텐츠 산업 관련 사회환원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산업 육성 관련 향후 계획
- 콘텐츠 산업 관련 사회환원 관련 향후 계획

다. 콘텐츠 펀드 운영 실적 및 계획

- 콘텐츠 펀드 설립 계획 대비 실적표

구분	계 획				실 적			
	펀드명	펀드규모	자사투자금액	투자연도	펀드명	펀드규모	자사투자금액	투자기간
'11년 승인 시								
'14년 재승인 시								
'17년 재승인					X			

※ 출연, 출자 등 투자를 분할하여 실시한 경우, 투자완료 시점 기준 작성

- 콘텐츠 펀드 세부운영 실적 ('11년~'17.1~3월)

※ 계획 대비 실적 표 상의 내용을 포괄하여 콘텐츠 펀드 투자내역 등 관련 성과 필수 기입,
관련 증빙자료 부속서류로 제출

○ 콘텐츠 펀드 세부운영 계획 ('17년 재승인~22년)

※ 계획 대비 실적 표 상의 내용을 포괄하여 상세기입

2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현황

- ※ '17.3.31. 기준으로 작성 후 필요시 재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시까지 보완
- ※ 방송법 위반 현황은 심의제재, 시정명령 및 심의제재 이외의 행정처분을 제외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상세내용을 적시할 것

□ 방송법 위반 현황(2014.9.1. ~ 2017.3.31.)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 ※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 및 소속 임·직원의 방송법 위반사례
- ※ (예시) 법인의 방송법 위반 사례, 소속 임·직원이 방송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 공정거래법 등 타법 위반 현황(2014.9.1. ~ 2017.3.31.)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및 소속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및 기타 법률 위반사례

※ (예시) 법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소속 임직원이 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 심의제재 현황(2014.9.1. ~ 2017.3.31.)

프로그램명	제재 조치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 고
	주의, 경고 등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0조제0항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심의제재 현황을 양식대로 작성(법정제재 받은 것만 작성)

□ 시정명령 및 심의제재 이외 기타 행정처분 현황(2014.9.1. ~ 2017.3.31.)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비 고
과태료					
과징금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시정명령, 심의제재 이외 행정처분명(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위반일자('yy.mm.dd), 위반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3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현황

※ '17.3.31. 기준으로 작성 후 필요시 재승인 심사위원회 개최까지 보완

□ 시정명령(불이행) 등 현황(2014.9.1. ~ 2017.3.31.)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비 고
시정명령				불이행	재승인조건 위반
업무정지 등					시정명령 불이행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시정명령(불이행), 처분·위반일자('yy.mm.dd), 위반
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4**[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사항 이행여부 등**

- o 사업자별로 <붙임-참고> 항목별로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
 - 자료작성은 요약, 본문, 별첨 자료로 구성·작성 (필요시 요약·본문·별첨을 묶어서
부속서류로 별도 제출)

1. 재승인 조건**가. 요약**

재승인 조건(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나. 본문 (재승인 조건 내용 및 이행실적)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다. 별첨(증빙자료 등)

2. 권고사항

가. 요약

권고사항(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나. 본문

<권고사항>

<이행실적>

다. 별첨(증빙자료 등)

<붙임-참고>

□ 종편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14년도에 종편PP 4사(TV조선, JTBC, 채널A, MBN)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

구 분	내 용
<p>재승인 조건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운영실적을 매반기(6.30일, 12.31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이상 편성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p>권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선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편PP의 위상에 걸 맞는 수준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출 것 - 편성위원회가 일선 기자나 PD 등 실무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 (주)제이티비씨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려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능력 보완책을 수립할 것 ○ (주)채널에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확대할 것

5. 기타 제출사항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1

시청자 의견청취 관련 공표 자료

□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양식)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 명시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제3장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제4장.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제5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 3페이지 이내로 작성

특수관계자 확인서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이 확인서는 주식회사 0000가 2017년 0월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데 따른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의 준수 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인(법인)은 주식회사 0000 주주(첨부1) 가운데 본인과 방송법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자비중		본인(법인)과의 특수관계자 여부
			주식수 (주)	지분율 (%)	
본 법인명					본 법인
총 계					

또한, 본인은 2014년 9월 1월부터 2017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주식회사 0000 주주(첨부1) 중 본인(법인)과 채무보증 관계에 있던 자의 명단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단위 : 백만원)

연월일(보증기간)	보증인	피보증인	보증내용	보증금액	비 고

2017년 5월 일

주 주 명 :

대표자명 : (인)

- 첨부 : 1. 주주현황(2017.3.31 기준) 1부
2. 인감증명서 1부

< 참고 > : 특수관계자 관련 법령 (방송법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2010.1.26., 2016.5.27.>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임원
 -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 나목·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3.10., 2008.2.29., 2016.5.27.>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④ 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2008.2.29., 2013.3.23.>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삭제 <2016.5.27.>

제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 영 제3조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2.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호에 따른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4.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단독으로 또는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개인
5.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및 그 대표자
6.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의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첨부1)

주주현황

(2017.3.31 기준)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자비중	
			주식수(주)	지분율(%)
총계				100%

(첨부2) 인감증명서 1부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14.9.1.~'17.3.31.)

1. 대표자 변경 현황

성명	재 직 기 간	주요약력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2. 편성책임자 변경현황

성명	재 직 기 간	주요약력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위원회 신고일자를 기재

3. 재승인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성명 (직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자 성명 및 관계	비고
성명 (대표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성명 (편성책임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 재승인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제출

4. 편성책임자 공표 현황

편성책임자	공표방법	공표일시	횟수(회)

4

협찬 운영 현황('14.9.1.~'17.3.31.)

1. 협찬 운영 방향

2. 협찬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4년 9월~12월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프로그램 제작 협찬	(%)	(%)	(%)	(%)
캠페인 협찬	(%)	(%)	(%)	(%)
행사 협찬	(%)	(%)	(%)	(%)
시상품 협찬	(%)	(%)	(%)	(%)
기타 협찬	(%)	(%)	(%)	(%)
협찬수입 총계	(%)	(%)	(%)	(%)
전체매출액				

5**방송사업 관련 각종 소송 및 분쟁 현황('14.9.1.~'17.3.31.)**

1. 개요('14.9.1.~'17.3.31.)

2. 주요 내용

6

관계회사 현황

□ 관계회사 현황(2017.3.31. 기준)

(단위 : 천원)

법인명	관계 ¹⁾	주요사업	지분율 (%)	콘텐츠 등 거래금액				비고
				2014년 9월~12월	2015년	2016년	2017년 1~3월	

1) 신청 법인 기준으로 지배회사는 '지배', 종속회사는 '종속'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는 '계열'로 표기

7

특수관계자 방송사 및 다른 방송사업자 지분 소유 현황

1. 특수관계자 방송사 현황(2017.3.31. 기준)

특수관계자명	승인·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국(채널명)	유형	특수관계내용	관련 법령
		PP	계열회사	방송법시행령 3조1항0목0호
			30% 출자	
			30% 출자	
			계열회사	
			계열회사	

2. 다른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현황(2017.3.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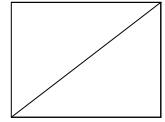
지분 소유 방송사업자명	승인·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사업자명(채널명)	유형	출자금액 (단위:천원)	지분율 (%)
		지상파		

V. 승인장 사본

VI. 주간기본편성표

- 재승인 대상이 되는 방송국의 주간기본편성표 제출
- 2017년 3월 31일 기준, A4 용지 규격

재승인신청서



부속서류

원본

2017. 5. 30.(보정할 때마다 바꿔서 제출)

로고 (주)○○방송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목 차

1. 법인등기부 등본	0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0
3. 편성규약 전문	0
4. 자체심의 실적	0
5. 자체심의 규정	0
6. 재무상태표(2014년,2015년,2016년,2017년 3월)	0
7. 손익계산서(2014년,2015년,2016년,2017년 3월)	0
8. 기타	0

별도 제출 자료

1. 2014년, 2015년, 2016년 감사보고서 2부
2. 재무제표 및 추정재무제표 엑셀파일
 -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내역 포함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월(재무제표)
 - 2017년 ~ 2022년(추정재무제표)
3. 재무제표 관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엑셀파일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월(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4. 방송 프로그램 장르 분류 현황, 자체제작비 산출내역 엑셀파일('14~'22)
5. 주주현황 및 주주변동내역 엑셀파일

IV. 시청자 의견청취

1.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방송 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의견 접수 대상

- 2017년 하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구분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유효기간 만료일
종합편성	(주)매일방송	MBN	장대환 장승준	2017년 11월 30일

2. 의견 접수 기간

- 2017년 9월 1일(금) ~ 2017년 9월 30일(토)

3.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MBN)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수급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문화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 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참고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 2017년 9월 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팩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channel@korea.kr

5. 유의사항

- 전화, 방문으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끝.

2. 시청자 의견청취용 사업계획서 요약문

□ MBN

구분	주요내용
<p>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장승준(1981.6.13) - 주요 경력 : 매일경제신문사 기획실장 • 편성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류호길(1957.3.1) - 주요경력 : 매일방송 기획실장 • 자본금 : 2796.5억 원 • 주주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 등
<p>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통합과 민주적 여론 형성 기여 -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아이템과 출연자에 대한 3단계 검증 시스템 구축 : 외부전문가 포함 출연자 심의위원회 구성·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제재 종편 4사 가운데 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보와 막말, 편파 방송으로 인한 법정 제재 최소화 -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편성의 자율성과 공정성 강화 - 국가 아젠다 제시를 통한 국가 발전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N 포럼, 세계지식포럼, 국민보고대회 지속 개최 -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 편성 - 시청자위원회·시청자평가원·자문위원단 운영을 통한 시청자 의견 수렴 - 다양한 사회공헌 행사 개최 및 후원 - 지역·세대·계층·성별간 갈등 치유와 사회통합 프로그램 편성 - 수화·자막, 화면해설 방송을 통한 장애인 시청권 확대 - 방송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 정기적인 방송언어 교육 실시 등 방송언어 순화 노력 • 향후 5년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품격 제고를 위한 출연자 관리 지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 균형 섭외와 아이템 선정의 객관적 기준 마련 노력 -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탐사보도 프로그램 신규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세대간 갈등 치유 프로그램 확대 -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기획보도 강화 - MBN Y 포럼 등 국가 어젠다 제시를 통한 국가 발전 기여 - <소나무>를 비롯해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적극 편성 - 국민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프로그램 발굴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 35%, 교양 30%, 오락 35% 비율을 기본으로 균형잡힌 장르별 편성 준수 - 프로그램 기획 강화를 통한 새 시청층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0대 타깃 신규 예능, 교양 프로그램 론칭 : 지속적인 20~40대 시청률 상승 - 본방비율 55% 조기 달성(2016년) - 강화된 편성위원회를 기반으로 공정성 훼손 사전 방지 - 제작비 선지급,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방송 제작 생태계 활성화 - 인포테인먼트, 힐링 교양 등 새로운 장르 개척으로 20분기 연속 종편 시청률 1위 기록 • 향후 5년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균형 편성(보도비율 34% 이하) - 연평균 증가율 15% 이상의 적극적인 콘텐츠 투자 확대 - 세대 공감형 가족 드라마 기획 편성 - 크로스 미디어를 고려한 신규 콘텐츠 개발 - 글로벌 마케팅이 가능한 포맷의 콘텐츠 개발로 한류 확산 기여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경영·재정·기술적 능력</p>	<p>1. 경영적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 시 사업계획의 이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확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 - 매출 증가 기반 2016년 BEP 달성 - 전문 방송인 육성을 위한 임직원 재교육 강화 • 향후 5년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효율성 제고와 흑자 기초 정착 - 2019년 기업공개를 통한 투명경영 실현 - 시청률 3% 조기 달성 - N스크린 전략을 통한 시청층 저변 확대

	<p>2. 재정적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 시 사업계획의 이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 최소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실현 · 향후 5년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비율 10% 미만의 재무건전성 유지 <p>3. 기술적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HD 방송시스템 도입 - 편집시설, 그래픽 제작시스템 증설 및 보안시스템 교체 - 국산 방송장비 적극 도입 · 향후 5년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고양 삼송 MBN 제작센터 설치(2021년 완공 예정) - 디지털 제작지원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보도정보시스템, APC 아카이브 시스템 증설 - UHD 콘텐츠 제작 시스템 구축
<p>제5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 방송장비 적극 도입 - TTA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 인증제품 구입 - 방송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및 인턴십 제도 확대 운영 - 유료방송 사업자, 프로그램 공급자와의 상생 협력 · 향후 5년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HD 등 첨단기술 실용화 - 뉴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확대 - 방송전문 인력 고용 창출 - VR, MCN 등 방송 4차 산업혁명 선도

V. 재승인 심사

1.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순번	분야	성명	소속
1	심사 위원장	이광재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2	방송 미디어	이상기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3	방송 미디어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4	방송 미디어	최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5	법률	김영성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6	법률	양윤숙	법무법인 태울 변호사
7	경제 경영 회계	강평경	서강대 경영대학 부교수
8	경제 경영 회계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부교수
9	경제 경영 회계	이태민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10	기술	허남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소 Project Leader
11	시청자 소비자	김자혜	(사)소비자시민모임 회장
12	시청자 소비자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13	시청자 소비자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2. 세부 심사기준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 세부심사기준(안)

2017. 11.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1 개 요

-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세부심사항목(소분류)으로 분류되며, 재승인 심사 세부계획에서는 심사사항, 심사항목과 배점만 제시
 -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그에 따른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

2 세부평가 방법

- (기본원칙)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12인) 전원이 각자 신청 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 시정명령, 법령위반 등 이미 방송평가에 반영된 행정처분 사항은 제외하여 계량항목의 중복을 최소화
- (평가유형)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계량평가 : 방송평가와 재정적 능력, 법령 위반 정도, 시정명령 건수 및 이행여부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정량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
 - 비계량평가 : 다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각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 범위 내에서 구체적 점수를 부여

< 비계량 평가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 >

구분	등 급	내 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0% 이상 20% 미만

□ (점수 계산) 재승인 대상 사업자의 최종 점수는 세부심사항목별 계량평가 점수와 비계량평가 점수의 합으로 구함

- 계량평가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량적 방법으로 산출한 점수를 부여 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함
- 비계량평가는 세부심사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사 위원 점수의 평균으로 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함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재승인 여부 결정)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세부계획에서 정한 재승인 여부 결정 방안 >

총점	심사사항 점수	재승인 여부
650점 이상	다음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재승인 / 조건부 재승인 / 재승인 거부
	상기 심사사항을 제외한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승인 / 조건부 재승인
650점 미만	.	조건부 재승인 / 재승인 거부

【 세부심사항목 구성 】

- 각 심사항목을 과거실적과 미래계획 간 균형 있게 심사평가하기 위해 실적과 계획으로 구분하여 세부심사항목 구성

< 세부심사항목 구성 예시 >

심사항목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세부심사항목	-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u>이행실적의 적정성</u> -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u>실현계획의 적정성</u>

- 일부 심사항목*은 실적과 계획을 구분하지 않고 과거실적만 반영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 권고 이행여부

【 세부심사항목 배점 】

- (배점 비중) 방송평가(400점) 외 심사항목의 배점(600점)에서 일부 심사항목*의 실적과 계획의 비중을 같게 하여 총점 1,000점 중 종편 PP는 실적 731점(방송평가 400점 포함), 계획 269점으로 구성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심사항목에 따른 실적, 계획 배점(안) >

심사항목	배점	
	실적	계획
①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
②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60	60
③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	40
④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8	12
⑤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45	45
⑥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40	40
⑦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8	12
⑧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30
⑨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30	-
⑩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8	12
⑪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2	18
⑫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감점)	-	
⑬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 여부(감점)	-	
⑭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70	-
합 계	731	269

4

주요 심사항목의 평가방법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계량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및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이후의 방송평가 점수를 반영
 - '13년도, '14년도, '15년도 방송평가 평균 점수(700점 만점)는 557.01 반영
 - 다만, 동일사안이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14년 재승인 시 반영된 감점 점수('13.1.1.부터 '14.8.31.까지)를 제외하고 반영
- 방송평가 점수 700점을 400점으로 환산 시 MBN의 방송평가 점수는 318.29점(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감점	계량

- (적용대상 및 기간) 재승인 신청법인의 '14.9.1.부터 '17.8.31.(또는 '17.9.30.)까지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 적용 기준

▲ 1안('17. 8. 31.) : '17년 2월 종편3사 재승인 심사 시 행정처분 적용기간 적용 예 (3년 : '14.2.1.~'17.1.31)'에 따름
▲ 2안('17. 9. 30.) : '17년 2월 종편3사 재승인 시 재승인 유효기한('17년 3.31)의 전전월인 '17년 1월 31일까지 적용한 예를 감안하여 MBN의 재승인 유효 기한('17.11.30)의 전전월인 '17년 9월 30일까지 적용함

- (관계법령 범위)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법무부 등 11개 기관과 관련한 방송, 상사 및 공정거래 분야 등에 대한 법 위반사항
 - 다만,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행정처분은 제외

○ (참조 기준) 방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방송평가를 참조하고 그 외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기준을 참조

법령위반	기준점수
방송법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4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10점, 5천만원 초과 - 15점 · 심의제재 :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공정거래법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4점, · 시정명령 : -8점, · 과징금 : -10점
그 외 법령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2점, · 시정명령 : -4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5점, 5천만원 초과 -7.5점

※ '16.7.1. 이후 방송실적분에 대한 심의제재의 감점을 강화(위반유형별로 3회 이상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공정성, 객관성, 재난방송, 선거방송 관련 유형은 2배 감점, 기타 유형은 1.5배 감점)

○ (감점 기준) 방송평가 점수 7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법령위반	행정처분	감점점수	
방송법 위반	과태료	-2.29	
	과징금	5천만원 이하	-5.71
		5천만원 초과	-8.57
	심의제재	① 주의	-0.57
		② 경고	-1.14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2.29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2.29
		②+③, ②+④	-2.86
③+④, ②+③+④	-3.43		
공정거래법 위반	과태료	-2.29	
	시정명령	-4.57	
	과징금	-5.71	
그 외 법령 위반	과태료	-1.14	
	시정명령	-2.29	
	과징금	5천만원 이하	-2.86
		5천만원 초과	-4.29

※ '16.7.1. 이후 방송실적분에 대해 강화된 심의제재를 반영하여 감점 적용

◆ '15년까지는 연평균 감점 사항(방송평가 결과)을, 방송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16.1.1.부터 '17.8.31.(또는 '17.9.30.)까지는 감점 합계를 반영

- (소송중인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여부) 방송평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과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확정된 행정처분만을 대상으로 안정된 심사평가가 가능하도록 소송 중인 행정처분에 대해 감점 유예

※ 소송 제기 여부는 재승인 심사 개시일 직전 근무일 18:00 기준으로 확정

【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이행여부 】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계량

- (적용 대상 및 기간) 재승인 신청법인의 '14.9.1.부터 '17.8.31.(또는 '17.9.30.)까지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 (시정명령 범위)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하되,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시정명령 등은 제외
 - 소송중인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는 감점 유예
- (참조 기준) 방송평가 시 적용한 감점기준을 참조

구분	기준점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8점 · 시정명령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10점 5천만원 초과 - 15점

- (감점 기준) 관련법령 위반사례에서와 동일하게 방송평가 점수의 환산비율을 고려하여 적용
 - 방송평가 점수 7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행정처분		감점점수
시정명령		-4.57점
과징금	5천만원 이하	-5.71점
	5천만원 초과	-8.57점

◆ '15년까지는 연평균 감점 사항(방송평가 결과)을, 방송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16.1.1.부터 '17.8.31.(또는 '17.9.30.)까지는 감점 합계를 반영

【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경영·재정·기술적 능력(100)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30)	부채비율	12	계량
		자기자본순이익율	9	계량
		총자산증가율	9	계량

- (세부심사항목) 지상파 재허가와 방송평가 등에서 심사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의 주요지표 중 대표적 지표인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과 총자산증가율을 세부심사항목으로 마련

※ '10년 및 '14년, '17년 2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시 재정적 능력 평가지표와 동일

- (대상기간) 신청법인의 최근 3년간('14년, '15년, '16년)의 재무현황을 대상으로 평가
- (평가방법)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지표별 전 산업 평균(m), 표준편차(a)와 대상회사의 지표값(A)을 비교
- (최저점 설정)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평가의 최저점을 지상파 재허가 심사 시와 같이 20%로 부여

※ '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시에는 신생매체로서의 특수성과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의 형평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최저점수를 30%로 부여

세부심사항목	지표값(A) 범위별 취득점수		
	$A < m - 2a$	$m - 2a \leq A \leq m + 2a$	$A > m + 2a$
부채비율(12점)	12점	$[0.6 + 0.8 \times (m - A) / 4a] \times$ 배점	2.4점
자기자본순이익율(9점)	1.8점	$[0.6 + 0.8 \times (A - m) / 4a] \times$ 배점	9점
총자산증가율(9점)	1.8점		9점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점수를 400점으로 환산 하여 계산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사회·문화적 필요성(210)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 제5조(공적책임) 실현실적 · 방송서비스의 보편성 구현실적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실적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실적(심의제재 건수 감축 노력, 출연자 자질 검증 및 심의제재의 원인이 된 출연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 ·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패널의 다양성 포함) 관련 이행실적의 적정성 ·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 방송언어 순화실적 · 편성규약 제정·공표 현황 및 이행실적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 제5조(공적책임) 실현방안의 구체성 · 방송서비스의 보편성 구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방안의 구체성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실현 계획(심의제재 건수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p>감축 노력, 출연자 자질 검증 및 심의제재의 원인이 된 출연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관련 실현 계획의 적정성 ·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실현 계획의 적정성 · 방송언어 순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의지 · 편성규약 이행 관련 향후 계획의 적정성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70)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 의견 반영 등 시청자 참여 보장방안의 이행실적 ·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방송법 제87조)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실적(방송법 제89조) · 시청자 불만처리 이행 실적 · 자체심의기구 설치·운영 실적(방송법 제86조)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 의견 반영 등 시청자 참여 보장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시청자위원회 운영계획의 적정성(방송법 제87조)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계획의 적정성(방송법 제89조) · 시청자 불만처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자체심의기구 설치·운영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방송법 제86조)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기여실적 ·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관련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등에 대한 이행실적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이행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이행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등에 대한 이행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방송 프로그램 기획 · 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90)	방송 프로그램 기획 · 편성 이행실적의 적절성(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프로그램 기획 · 편성 (방송분야, 장르별 조화로운 편성 포함) 이행실적의 적절성 · 편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 관련 이행실적(방송법 제4조)
		방송 프로그램 기획 · 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프로그램 기획 · 편성 (방송분야, 장르별 조화로운 편성 포함) 향후 계획의 적절성 · 편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방안의 실현가능성 (방송법 제4조)
	방송 프로그램 수급, 제작 · 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80)	방송 프로그램 수급, 제작 · 협력 실적의 적절성(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투자 이행 실적의 적절성(재무상태 대비 콘텐츠 투자금액의 적정성 포함)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관련 이행실적 ·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관련 이행실적 · 신규 플랫폼 진출 실적 · 국내외 콘텐츠 유통 실적 ·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 관련 이행실적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투자 계획의 적절성(재무상태 대비 콘텐츠 투자금액의 적정성 포함)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관련 향후계획 ·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관련 향후계획 · 신규 플랫폼 진출 계획 · 국내외 콘텐츠 유통 계획 ·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 관련 향후계획
	공익성 관련 방송 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20)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적 프로그램(비상업적 공익 광고·캠페인 등) 편성 실적 · 재난방송 편성 및 개선 실적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 실적 · 장애인 방송 편성 실적 ·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이행실적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적 프로그램(비상업적 공익 광고·캠페인 등) 편성 계획 · 재난방송 편성 및 개선 계획의 적정성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 계획의 적정성 · 장애인 방송 편성 계획의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적정성 ·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의 적정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100)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	경영·투자 실적의 적정성 (20)	· 조직 및 인력 운영 실적 · 교육훈련 실적의 우수성 · 경영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이행실적의 적정성 · 채널확보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전략의 이행실적 ·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전략적 관계 구축 관련 이행실적 ·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투자실적
		경영·투자 계획의 적정성 (30)	·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의 적정성 · 교육훈련 계획의 우수성 · 경영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관련 계획의 적정성 · 채널확보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관련 계획의 적정성 ·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전략적 관계 구축 계획의 적정성 ·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의 적정성 · 프로그램 제작, 방송시설 설치 등 연도별 자금운영 계획의 적정성 · 자금조달규모의 실현가능성 · 추정재무제표의 적정성 · 추정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30)	부채비율(12)	· 부채총액/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률(9)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총자산증가율(9)	·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전기총자산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20)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8)	· 연도별 제작, 송출 시설 등에 대한 투자실적의 적정성 · 국산장비 도입실적의 적정성 · 콘텐츠 제작·편집기술 등 방송기술 확보 관련 이행 실적의 적정성 ·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실적의 적정성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12)		· 연도별 제작, 송출 시설 등에 대한 투자계획의 적정성 · 국산장비 도입계획의 적정성 · 콘텐츠 제작·편집기술 등 방송기술 확보 계획의 적정성 ·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100)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30)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12)	· 방송장비산업 기여 및 연구개발(R&D) 이행실적 · 방송인력 양성 이행실적 ·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관련 이행실적 ·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실적 · 콘텐츠산업 관련 사회환원 이행실적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18)	· 방송장비산업 기여 및 연구개발(R&D) 계획의 적정성 · 방송인력 양성 계획의 적정성 ·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의 적정성 · 콘텐츠산업 관련 사회환원 계획의 적정성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감점)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법인이 위반한 법 위반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 평가에 반영된 법 위반 건수는 제외하고 평가 (방송법 위반 시) - 과태료 : - 2.29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5.71점 5천만원 초과 - 8.57점 - 심의제재 : ①주의 -0.57점, ②경고 - 1.14점, ③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 2.29점, ④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 2.29점, ②+③, ②+④ - 2.86점, ③+④, ②+③+④ - 3.43점 (공정거래법 위반 시) - 과태료 : - 2.29점 - 시정명령 : - 4.57점 - 과징금 : - 5.71점 (그 외 법령 위반 시) - 과태료 : - 1.14점 - 시정명령 : - 2.29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2.86점 5천만원 초과 - 4.29점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감점)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법인이 받은 시정명령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 평가에 반영된 시정명령은 제외 · 시정명령은 방송법 위반에 한정 - 시정명령 : - 4.57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5.71점 5천만원 초과 - 8.57점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 여부 등(70)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 실적의 적정성(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의 적정성 -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및 주요내용 변경 시 사전 승인 취득 여부 - 재승인조건에 따른 이행 실적 제출 여부 - 이행실적 점검 관련 필요 사항 협조 여부 - 재승인조건에 대한 이행 실적의 적정성 - 이행촉구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여부 - 이행촉구에 따라 제출한 이행 계획 대비 이행실적의 적정성 · 재승인시 부과한 권고사항 이행의 적정성 - 권고사항 이행실적 제출 여부 - 권고사항 이행실적의 적정성

3. 심사평가 결과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세부심사항목별 심사결과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점수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계량	326.86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122.55
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실행실적및계획의적정성	120	비계량	68.20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이행실적의적정성	60	비계량	33.00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실행계획의적정성	60	비계량	35.20
2-2.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70	비계량	42.20
2-2-1.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30	비계량	17.30
2-2-2.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40	비계량	24.90
2-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	12.15
2-3-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	8	비계량	4.81
2-3-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12	비계량	7.34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106.16
3-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90	비계량	50.80
3-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이행실적의적절성	45	비계량	24.00
3-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	45	비계량	26.80
3-2.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80	비계량	44.20
3-2-1.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의 적절성	40	비계량	21.20
3-2-2.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	40	비계량	23.00
3-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20	비계량	11.16
3-3-1.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	8	비계량	4.04
3-3-2.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	12	비계량	7.12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58.38
4-1.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	비계량	29.70
4-1-1. 경영·투자 실적의 적정성	20	비계량	12.20
4-1-2. 경영·투자 계획의 적정성	30	비계량	17.50
4-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30	계량	16.98
4-2-1. 부채비율	12	계량	12.00
4-2-2. 자기자본순이익율	9	계량	2.30
4-2-3. 총자산증가율	9	계량	2.68
4-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	11.70
4-3-1.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	8	비계량	4.00
4-3-2.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	12	비계량	7.7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37.06
5-1.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	비계량	16.92
5-1-1.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	12	비계량	6.74
5-1-2.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	18	비계량	10.18
5-2.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감점	계량	-10.85
5-3.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준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계량	-5.71
5-4.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의 적정성	70	비계량	36.70
합 계	1,000		651.01

■ (주) 매일방송(MBN)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A	B	C	D	E	F	G	H	I	J	K	L	평 점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계량	326.86	326.86	326.86	326.86	326.86	326.86	326.86	326.86	326.86	326.86	326.86	326.86	326.86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101.00	115.00	104.00	112.00	107.37	138.00	132.00	114.00	121.00	147.90	134.00	134.00	122.55
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실적및계획의적정성	120	비계량	65.00	65.00	52.00	62.00	47.98	77.00	76.00	60.00	70.00	86.00	84.00	72.00	68.20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이행실적의적정성	60	비계량	30.00	30.00	26.00	25.00	23.99	38.00	40.00	30.00	35.00	43.00	44.00	33.00	33.00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실현계획의적정성	60	비계량	35.00	35.00	26.00	37.00	23.99	39.00	36.00	30.00	35.00	43.00	40.00	39.00	35.20
2-2.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70	비계량	26.00	40.00	37.00	42.00	45.00	46.00	44.00	41.00	40.00	48.00	39.00	50.00	42.20
2-2-1.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30	비계량	11.00	15.00	14.00	18.00	18.00	17.00	20.00	18.00	17.00	20.00	16.00	20.00	17.30
2-2-2.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40	비계량	15.00	25.00	23.00	24.00	27.00	29.00	24.00	23.00	23.00	28.00	23.00	30.00	24.90
2-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	10.00	10.00	15.00	8.00	14.39	15.00	12.00	13.00	11.00	13.90	11.00	12.00	12.15
2-3-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	8	비계량	3.00	4.00	6.00	3.20	6.39	7.00	5.00	6.00	4.00	5.50	4.00	4.00	4.81
2-3-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12	비계량	7.00	6.00	9.00	4.80	8.00	8.00	7.00	7.00	7.00	8.40	7.00	8.00	7.34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129.00	97.00	90.00	112.00	84.00	122.00	116.00	100.00	105.00	107.40	115.00	102.00	106.16
3-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90	비계량	61.00	45.00	40.00	56.00	40.00	56.00	54.00	47.00	52.00	57.00	58.00	43.00	50.80
3-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이행실적의적절성	45	비계량	26.00	20.00	20.00	28.00	18.00	25.00	27.00	25.00	26.00	27.00	25.00	19.00	24.00
3-1-2.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	45	비계량	35.00	25.00	20.00	28.00	22.00	31.00	27.00	22.00	26.00	30.00	33.00	24.00	26.80
3-2.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80	비계량	55.00	40.00	40.00	48.00	34.00	56.00	50.00	40.00	42.00	40.00	46.00	46.00	44.20
3-2-1.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의 적절성	40	비계량	23.00	20.00	16.00	24.00	16.00	29.00	26.00	20.00	22.00	16.00	23.00	22.00	21.20
3-2-2.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	40	비계량	32.00	20.00	24.00	24.00	18.00	27.00	24.00	20.00	20.00	24.00	23.00	24.00	23.00
3-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20	비계량	13.00	12.00	10.00	8.00	10.00	10.00	12.00	13.00	11.00	10.40	11.00	13.00	11.16
3-3-1.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	8	비계량	4.00	5.00	3.00	3.20	4.00	4.00	5.00	5.00	4.00	3.20	4.00	4.00	4.04
3-3-2.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	12	비계량	9.00	7.00	7.00	4.80	6.00	6.00	7.00	8.00	7.00	7.20	7.00	9.00	7.12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66.98	54.98	60.98	60.98	47.58	57.98	59.98	62.98	58.98	60.37	54.98	56.98	58.38
4-1.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	비계량	40.00	25.00	32.00	31.00	25.00	29.00	31.00	35.00	31.00	28.99	26.00	28.00	29.70
4-1-1. 경영·투자 실적의 적정성	20	비계량	15.00	10.00	15.00	12.00	10.00	13.00	13.00	15.00	11.00	11.99	11.00	10.00	12.20
4-1-2. 경영·투자 계획의 적정성	30	비계량	25.00	15.00	17.00	19.00	15.00	16.00	18.00	20.00	20.00	17.00	15.00	18.00	17.50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A	B	C	D	E	F	G	H	I	J	K	L	평 점
4-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30	계량	16.98	16.98	16.98	16.98	16.98	16.98	16.98	16.98	16.98	16.98	16.98	16.98	16.98
4-2-1. 부채비율	12	계량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4-2-2. 자기자본순이익율	9	계량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2.30
4-2-3. 총자산증가율	9	계량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2.68
4-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	10.00	13.00	12.00	13.00	5.60	12.00	12.00	11.00	11.00	14.40	12.00	12.00	11.70
4-3-1.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	8	비계량	3.00	5.00	3.00	5.00	1.60	4.00	4.00	4.00	4.00	6.40	4.00	4.00	4.00
4-3-2.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	12	비계량	7.00	8.00	9.00	8.00	4.00	8.00	8.00	7.00	7.00	8.00	8.00	8.00	7.7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27.44	41.44	30.44	43.44	19.84	39.44	36.44	41.44	43.44	43.64	24.44	43.44	37.06
5-1.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	비계량	17.00	18.00	17.00	18.00	6.40	17.00	18.00	17.00	19.00	18.20	14.00	16.00	16.92
5-1-1.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	12	비계량	7.00	8.00	7.00	7.20	2.40	6.00	7.00	7.00	7.00	7.20	6.00	6.00	6.74
5-1-2.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	18	비계량	10.00	10.00	10.00	10.80	4.00	11.00	11.00	10.00	12.00	11.00	8.00	10.00	10.18
5-2.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감점	계량	-10.85	-10.85	-10.85	-10.85	-10.85	-10.85	-10.85	-10.85	-10.85	-10.85	-10.85	-10.85	-10.85
5-3.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계량	-5.71	-5.71	-5.71	-5.71	-5.71	-5.71	-5.71	-5.71	-5.71	-5.71	-5.71	-5.71	-5.71
5-4.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의 적정성	70	비계량	27.00	40.00	30.00	42.00	30.00	39.00	35.00	41.00	41.00	42.00	27.00	44.00	36.70
합 계	1,000		651.28	635.28	612.28	655.28	585.65	684.28	671.28	645.28	655.28	686.17	655.28	663.28	651.01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2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4. 심사의견서

2017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2017.11.30.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신청서 검토, 의견청취, 심사평가 등을 하고 다음과 같이 심사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 11. 10.(금)

□ 2017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1. 심사사항 별 소견

가. 중점심사 항목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 오보·막말·편파 심의제재 건수가 기타 종편3사에 비해 적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으나 이의 실질적인 운영 및 개선 노력이 미흡함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출연자심의위원회의 외부인 비중을 늘리고 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작·편성의 독립성과 내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과 주요 책임간부의 임면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건수가 2014년 ○%에서 2017년 ○%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보도 프로그램 편파성에 대한 불만 해소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시청자 권익보호)

-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등에서 이익집단 성격의 협회 추천자 및 전문가 비중은 높은 반면 언론시민단체, 환경, 인권 등 공공성과 시민성이 강한 단체의 추천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을 감안, 향후 추천에서 시청자 대표성을 높여야 함
- 시청자 의견 및 불만 접수 시 인터넷 접수의 경우 악의적 비방이 많다는 이유로 통계에서 누락시킨 바, 객관적 사실 자체로 통계를 작성하고 내용을 파악한 뒤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천기누설’, ‘엄지의 제왕’ 등 프로그램에서의 건강 기능식품의 홍보와 동 시간대 홈쇼핑 채널에서의 관련 식품 판매가 연계된다는 소비자 불만과 관련, 동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송사 내부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다양한 분야의 조화로운 편성)

- 뉴스·시사논평·버라이어티쇼·다큐멘터리 등 4개 장르가 매년 0%~0%를 차지할 정도로 편성이 집중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탐사보도, 교육·문화·예술, 영화 등 기타 장르의 편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재방편성 계획을 신청서에 약 0%로 제시하였으나 사업자 의견청취시 0% 초반대로 낮추겠다고 답변한 점을 감안, 0% 초반의 구체적 수치를 다시 제출받을 필요가 있음
- 어린이의 현실적 시청시간대를 고려하여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을 오전7시~9시, 오후 5시~8시로 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콘텐츠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시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향후 3년간 콘텐츠 투자계획도 종편사 중 가장 적은 액수로 나타나 콘텐츠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 연도별 이행실적 점검 시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이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등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

나. 그 외 심사 항목

○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협찬은 방송의 공익성을 해할 우려도 있는 점을 감안, 협찬 수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수익이 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매출구성에서 협찬매출이 '14년 ○원, '15년 ○원, '16년 ○원으로 급증했으며, '16년 매출액의 전년대비 증가액 ○원 중 ○%에 해당되는 ○원이 협찬매출 증가에서 나온 것임

- 당초 승인시 약속한 일자리 확대 취지에 부응하고,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채용인원 확대에 노력하고,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성이 있음
- 감사 2명 중 1명이 매경미디어 그룹의 부회장으로 대주주인 매일경제신문사의 특수관계자이며, 사외 이사 3인 모두 비방송 업종의 기업회장이라는 점에서 방송의 전문성, 경영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1년 승인시 약속한 '사장공모 추천제'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9월 ~ 2017년 8월까지 국산 방송장비 및 솔루션 투자계획(○억원) 대비 실적(○원)이 약 ○%선으로 아주 저조한 점을 감안, 향후 투자계획(○원)에 대해서는 연도별 이행실적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방송발전 지원 계획 및 방송법령 등 준수)

- 제작단가에 대한 분기별 시장조사를 통해 제작비를 현실화 했다고 실적에 기입했으나 실제 제작단가의 분기별 시장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콘텐츠 공정거래 노력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짐
- MBN 자체적인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외주제작사의 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하게 지불하도록 하고, 외주제작사 선급금 지급을 위한 내부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저작권 및 방영권 등 수익배분에 있어 외주제작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재송인 조건 및 권고(안)

심사사항		조건	조건(권고)
공통			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조건)		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14년 4건, '15년 2건, '16년 3건을 받아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2018년부터 재송인 유효기간까지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
프로그램 기획·편성 ·제작	편성의 다양성	조건	4.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2018년부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프로그램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불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 5.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을 2018년부터 42.3% 이하로 하되, 매년 1% 포인트 이상 단계적으로 감소시킬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권고	①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당 시청자의 가시청시간대를 고려하여 편성할 것
	콘텐츠 투자 (조건)	6. 방송 콘텐츠 투자 실적 및 계획이 현저히 미흡하므로, 향상된 콘텐츠 투자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재송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 이를 준수할 것 (부가단서) '콘텐츠 투자금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경영·재정 ·기술적 능력	경영 전문성·독립 성투명성 (권고)	② 이사 및 감사 선임 시, 방송사업 경영의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수익의 건전성(권고)	③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수익을 창출하여 협찬수익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고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일자리 창출(권고)	④ 계약직 및 파견직 등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2011년 승인 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	
	국산장비 (권고)	⑤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국산 방송장비 도입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방송발전 계획	방송산업 상생 (권고)	⑥ 외주제작사 등 방송관련 유관사업자와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5. 심사위원회 회의 및 사업자 의견청취 속기록

2017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속기록

- 일 시 : 2017. 11. 8.(수) 10:48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1층 강의실(107)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록

- 회 의 명 :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 일 시 : 2017. 11. 8.(수) 10:48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1층 강의실(107)
- 참석위원 : 이광재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이상기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최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영성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양윤숙 (법무법인 태울 변호사)
강평경 (서강대 경영대학 부교수)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부교수)
이태민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허남호 (방송미디어연구소 UHD TV 사업 담당)
김자혜 ((사)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학부 교수) (13명)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속기록

【10시 48분 개회】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편PP 재승인 심사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는 TV조선, JTBC, 채널A 등 3개 종편PP의 재승인 심사가 있었으며, 오늘부터는 유효기간이 11월 말에 만료되는 (주)매일방송의 재승인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종편PP의 위상과 역할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신청법인의 공과실에 대해 면밀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해 8월, 방통위에서는 이번 재승인 심사 시 방송의 품격제고, 조화로운 편성, 콘텐츠 산업 기여 등을 중점 심사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업계획서를 전반적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심사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심사지원에 애써 주실 방통위 사무처 직원 분들이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심사지원반을 소개해 드립니다.

○ 심사지원반

- 안녕하십니까. 심사지원반입니다. 먼 길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심사의 경우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심사해 주셔서 지난번 재승인 심사가 굉장히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사지원반 소개) 진행하시다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심사지원반, 제1차 회의 개최를 위해 성원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 열세 분 전원이 참석해 주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보고사항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 이광재 심사위원장

- 상정안건은 <보고사항> 2건, <의결사항> 2건입니다. 먼저 <보고사항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 지원반은 서면보고 대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첫 번째 보고 안건은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인데 이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지상파와 종편을 포함한 방송사업자 전체적인 심사의 기본계획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보고 드리는 방송사업자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에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안건을 보고드리면 기본계획의 내용도 같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서류를 다 갖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혹시 서면보고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심사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일단 2개의 보고사항을 접수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사항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접수하겠습니다.

나.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

○ 심사위원장

- <보고사항 나>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입니다.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붙임>을 참조하겠습니다. 이 건은 2016년도 8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의결(가)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

부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주요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재승인 대상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개사입니다. 이 중에 조선방송, JTBC, 채널A, YTN, 연합뉴스TV 5개사는 지난 2월에 심사를 해서 이미 재승인을 통과했고, 매일방송 MBN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한다. 그리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함. <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는 이미 확정된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합니다. 재승인 여부, 재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심사위원회 임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심사항목·배점과 평가방법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심사사항 대분류 5개 항목과 심사항목 중분류 14개 항목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분류인 세부심사항목과 배점을 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심사평가 및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고 필요시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을 제시합니다.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라>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심사항목 및 심사사항별 배점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을 보시면 총점이 1,000점입니다. 종편PP도 그렇고 보도PP도 1,000점인데 종편PP를 보시면 심사사항에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분류입니다.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가 400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이 21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이 190점,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이 10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가 100점 해서 총 1,000점 만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여부 결정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합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사항 대분류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대분류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 2개 대분류 항목이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5> 추진일정은 이미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은 대

부분 같은 내용이라서 심사위원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들으신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질의라기보다도 3월 심사가 다 통과돼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 방송사가 조건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지난번 심사 결과 배점을 볼 수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저희가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평가가 돼서 어떠한 점수를 받았고 그리고 재승인 조건을 어떤 것을 부과했는지 자료가 있으니까 다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심사에서는 JTBC가 700점을 넘게 받았고, 채널A가 661점,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650점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아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사항 나>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결사항

가. '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해당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심사세부계획에 관해서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심사세부기준에 관한 건으로 보고 받으시면 더 매끄러울 텐데 그전에 심사위원회의 직무, 역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구성 방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먼저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시면 됩니다. 1페이지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2박 3일 수·목·금 3일 동안 이루어지고 오늘은 심사위원회 운영계획, 세부 심사기준을 의결하는 회의를 두 번 개최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해당 법인인 MBN의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계량평가

결과를 의결해서 동일한 점수로 부여하겠습니다. 2일차 저녁까지 심사평가표 의견서 작성 결과 마감을 받을 것이고, 3일차에는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의결하시고 2시까지 해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세부계획을 토대로 하여 사업자별 재승인 신청서 서류를 검토하고 의견청취를 통해 내용을 검토해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직무를 부여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재승인 여부와 조건 부과는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서 방통위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심사위원장이 소집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공식적인 회의는 총 4회에 걸쳐 개최되는데 공식적인 회의가 개최돼서 의결할 경우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회람하셔서 서명해 주시면 되고 회의 내용은 속기록으로 작성·보관됩니다. 백서 등을 통해 심사결과가 공개될 텐데 심사위원 평가결과와 의견은 실명은 밝히지 않지만 익명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보실 심사자료는 신청서류 본문과 부속서류, 보정서류 및 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서류로 제한됩니다. 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서류의 의미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경우에 오늘 오후 6시까지 추가 제출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내일 의견청취 전까지 사업자에게 별도로 해당 서류들을 가지고 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 의결을 통해 심사자료로 채택한 서류를 말합니다. 이외에 시청자 의견청취 자료를 저희가 미리 시간을 할애하여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받으신 후에 접수해 주시면 그것을 심사자료에 반영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법인·대표자·편성책임자 행정처분 등 조사 결과와 내일 있을 신청법인 대상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말씀드렸듯이 총 4회 개최됩니다. 오늘 제1차, 제2차 회의가 이루어지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 계량평가를 의결하시면 되고, 제4차 회의에서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오전에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청사업자 의견청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과 사업계획 중에서 직접 대면을 통해 질의하시고 질의응답하셔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사전논의를 통해 어떤 내용을 청취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의견청취 날에는 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3인이 참석하시고 배석하는 실무자가 4인 이내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의견청취 결과는 별도의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의 정성평가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오늘 2시~2시 30분간 미리 사전적인 준비를 하고 그때 의견청취 진행 계획을 보고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의견청취가 10시 30분부터 이루어지는데 그전에 1시간 30분 동안 일종의 리허설과 역할분담과 의견청취서, 질의서를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취 후에 결과를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붙임>자료를 보시면 심사장 배치도가 있는데 코바코 화합관은 이번 위원회 회의를 위해 1층과 3층을 씁니다. 1층은 심사장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3층은 숙소로 활용됩니다. 숙소는 2인 1실이지만 각 한 분씩 사용하실 수 있고, 심사장은 지금 계시는 곳에서 주로 회의를 하시고 저쪽 옆에서 심사 자료를 보실 때 조금 넓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다만, 내일 의견청취 전에 오늘까지는 이쪽에서 심사자료를 보시고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자료를 저쪽으로 옮겨서 좀 더 편한 곳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붙임 2>에 심사위원회 주요 일정이 있습니다. 시간 타임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붙임 3>에 저희가 부탁 말씀드린 생활수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읽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궁금한 것이 있는데 MBN 첫 승인 때 준수사항이나 부가조건으로 부여된 사항이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2014년 재승인 때 부가된 사항이 있고 그것도 별도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 부분도 자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자료를 드릴 것이고, 심사항목에 보시면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이 점수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나. '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2017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2017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 세부심사기준을 <붙임>과 의결한다. 2)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 세부심사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내용은 <붙임>을 참조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입니다. 심사기준은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이것이 대·중·소분류로 분류되며 재승인 세부계획에서는 심사사항, 심사항목과 배점만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그에 따른 평가 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돼서 지금 여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두 번째 세부평가 방법입니다. 기본원칙입니다.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각자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합니다. 심사위원장님을 제외하고 모든 심사위원이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벌령위반 등 이미 방송평가에 반영된 행정처분 사항은 제외하여 계량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했습니다. 평가유형입니다.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계량평가는 방송평가와 재정적 능력, 벌령위반 정도, 시정명령 건수 및 이행여부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정량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하게 됩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심사항목에 따른 실적, 계획 배점(안)>이 있습니다. 심사항목이라는 것이 아까 개요에서 말씀드린 중분류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이것 중에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9>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12>, <13>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 여부 4개가 계량입니다. 그리고 이 항목을 제외한 다시 1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이해 편의를 위해서 왔다 갔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계량평가는 다른 항목평가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각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 범위 내에서 구체적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아까 4개 외에는 지금 나눠드린 심사참고표와 심사평가표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지요. 환산 범위를 예를 들어 소분류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수를 주고 싶다면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를 써야 합니다. 81%에 해당하는 구체적 점수를 써도 되고 99%에 해당하는 점수를 써도 됩니다. 그것이 도대체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참고표에서 그것이 몇 점인지 저희가 다 표시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점수 계산입니다. 재승인 대상 사업자의 최종 점수는 세부심사항목별 계량평가 점수와 비계량평가 점수의 합으로 구합니다. 계량평가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량적 방법으로 산출한 점수를 부여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고, 비계량평가는 세부심사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으로 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합니다.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인 여부 결정입니다. 이것은 아까 계획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심사항목별 심사입니다. 세부심사항목 구성입니다. 각 심사항목을 과거 실적과 미래 계획 간 균형 있게 심사평가하기 위해 실적과 계획으로 구분하여 세부심사항목을 구성했습니다.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심사항목에 <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이 14가지 심사항목 중에 <2> 항목인데, 오른쪽에 보면 실적과 계획을 60점, 60점으로 했습니다. 중분류상 <2> 총 점수는 120점인데 그것을 실적 60점, 계획 60점으로 나눈 것이지요. 그래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 실적의 적정성이 60점,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 계획의 적정성이 60점입니다. 그런데 일부 심사항목은 실적과 계획을 구분하지 않고 과거 실적만 반영했습니다. 다시 4페이지를 보시면 실적만 반영한 것은 중분류 중에 <1> 방송평가, <9>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14>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개입니다. 그런데 실적평가 중에 <1>과 <9>의 경우에는 실적이기도 하고 계량평가이기도 합니다. 송평가가 400

점이니까 400점 외에 심사항목의 배점이 전체 600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심사항목의 실적과 계획의 비중을 같게 하여 총점 1,000점 중 종편PP는 방송평가를 포함하여 실적 731점, 계획 269점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적과 계획의 비중이 같은 것은 다시 4페이지를 보시면 심사항목 중에서 <2>번 항목이 실적과 계획이 각각 60점, 60점이고, <5>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이 각각 45점씩입니다. 그리고 <6>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제작·협력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이 각 40점씩입니다. 세부적으로 1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완성분을 짜 놓은 것이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몇 점인지 대·중·소분류로 해서 일단 안을 짰습니다. 이 배점 비중은 올 2월에 종편 3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근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세부심사에 따른 실적, 계획 배점(안)은 지금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실적과 계획이 731점, 269점으로 구분되어 있고 합쳐서 1,000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심사항목의 평가방법, 이것이 주요 심사항목인데 사실은 계량평가의 평가방법을 말씀드리는데는 것입니다. 계량평가가 방송평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그리고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이행여부,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이렇게 4가지 사항입니다. 그러면 방송평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항목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이고 배점은 400점이고 평가지표는 계량입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및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이후의 방송평가 점수를 반영합니다.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는 MBN 같은 경우에는 '12년 방송평가입니다. 그래서 '13년도, '14년도, '15년 방송평가를 적용하게 되지요. 그래서 평균점수가 700점 만점에, 그러니까 방송평가는 만점이 700점입니다. 방송평가 만점 700점 중 '13, '14, '15년의 MBN 방송평가 합산 평균점수가 557.01입니다. 다만, 동일 사안이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14년 재승인시 반영된 감점 점수를 제외하고 반영합니다. 감점 점수는 '13년 1월 1일~'14년 8월 31일까지 감점 점수를 제외합니다. 이것이 조금 애매한데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방송평가에서 기존에 '12년까지는 방송평가가 들어갔고, '14년 11월에 MBN 재승인 심사를 했는데 '12년은 방송평가가 들어가서 방송평가에 이 뒤에 있는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나 시정명령 건수에 대한 감점이 다 반영이 되지요. 그리고 '13년, '14년도는 방송평가가 없어서 '13년, '14년도 감점은 그냥 감점으로 해서 마이너스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3년, '14년, '15년도 방송평가 점수를 반영하니까 '13년과 '14년도에는 지금 감점을 하려는 것도 감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중복적으로 감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3년 1월 1일~'14년 8월 31일까지 반영된 감점 점수를 다시 더 해 주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량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 보시면 확연히 아실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플러스한다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플러스한다기보다는 중복적으로 감점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송평가 점수 700점을 400점으로 환산 시 MBN 방송평가 점수 557.01은 318.29점이 됩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입니다. 세부심사항목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입니다. 적용대상 및 기간을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재승인 신청법인의 '14년 9월 1일~'17년 8월 31일까지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17년 9월 30일까지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1안> 같은 경우 8월 31일까지 정한 이유는 '17년 2월 종편 3사 재승인 심사할 때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만3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4년 2월 1일~'17년 1월 31일까지 한 예에 따르면 아까 '14년 8월 31일까지 했으니까 '14년 9월 1일부터 만3년이면 '17년 8월 31일이 되지요. 그런데 <2안>안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7년 2월 종편 3사 재승인할 때 종편 3사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17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전월인 '17년 1월 31일까지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MBN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17년 11월 30일이니까 10월, 9월해서 '17년 9월 30일까지 적용하는 것이 <2안>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단 제가 쪽 보고를 드리고 나서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범위입니다.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법무부 등 11개 기관과 관련한 방송, 상사 및 공정거래 분야 등에 대한 법 위반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행정처분은 제외합니다. 참조 기준입니다. 방송평가를 참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기준을 참조합니다. 그러면 방송법 위반의 과태료는 -4점을 감점하고, 과징금 5,000만원 이하는 -10점, 5,000만원 초과는 -15점, 심의제재는 주의 -1점, 경고 -2점 등이 있고 공정거래법 위반은 과태료 -4점, 시정명령 -8점, 과징금 -10점, 그 외 법령은 과태료 -2점, 시정명령 -4점, 과징금 5,000만원 이하 -5점, 5,000만원 초과 -7.5점입니다. 그리고 '16년 7월 1일 이후 방송된 사항에 대한 심의제재의 감점을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송법 위반으로 심의제재에서 주의가 -1점이지 않습니까? '16년 7월 1일 이후 방송분에 대해서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 위반 규정을 3회 위반하거나 객관성, 재난방송, 선거방송 관련 유형을 3회 위반하면 2배를 감점합니다. 그리고 기타 유형은 1.5배를 감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점 기준입니다. 이 위의 참조기준은 방송평가에 대한 감점 기준이 얼마였나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이번에 재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 7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하여 실제 감점점수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4에 곱하기 700분의 400을 하면 -2.29가 나오지요. 그런 식으로 쪽 실제 감점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감점도 '16년 7월 1일 이후 방송실적 분에 대해서 아까 위에 말씀 들으신 특정 조항에 대해서 3회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2배 감점, 기타 유형은 1.5배 감점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5년까지는 연평균 감점 사항 방송평가 결과를 그냥 반영하면 되고, 왜냐하면 '15년까지는 방송평가가 있고 '16년부터는 아직 방송평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방송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16년 1월 1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8월 31일이나 9월 30일까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감점 합계를 직접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중인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여부입니다. 방송평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과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확정된 행정처분만을 대상으로 안정된 심사평가가 가능하도록 소송 중인 행정처분에 대해서

감점을 유예합니다. 소송 제기 여부는 재승인 심사 개시일 직전 근무일 18시 기준으로,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소송 제기 여부를 판정한 것이지요. 다음입니다.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이행여부입니다. 세부심사항목은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입니다. 적용 대상 기간도 아까와 똑같습니다. 재승인 신청법인의 '14년 9월 1일~'17년 8월 31일 또는 9월 30일까지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이 대상이고, 시정명령 범위는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하되,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시정명령 등은 제외합니다. 소송 중인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 감점 유예하는 것은 같고, 참조 기준은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시정명령은 -8점, 시정명령 불이행해서 과징금 5,000만원 이하를 받은 경우는 -10점, 5,000만원 초과는 -15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감점하는 기준은 아까 위반 사례와 동일하게 방송평가 점수 700점을 400점으로 환산하면 시정명령은 -4.57점, 5,000만원 이하 과징금은 -5.71점, 5,000만원 초과하는 과징금은 -8.57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와 똑같이 '15년까지는 연평균 감점 사항 방송평가 결과를 적용하고 방송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16년 1월 1일~'17년 8월 31일 또는 '17년 9월 30일까지는 감점 합계를 반영합니다. 다음은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입니다. 이것은 심사사항 대분류가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이 100점이고, 그중에서 중분류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이 30점이고 이 30점을 나눈 것이 부채비율 12점, 자기자본순이익률 9점, 총자산증가율 9점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심사항목은 지상파 재허가와 방송평가 등에서 심사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의 주요지표 중 대표적 지표인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과 총자산증가율을 세부심사항목으로 마련했습니다. 대상기간입니다. 신청법인의 최근 3년간 '14년, '15년, '16년의 재무현황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방법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지표별 전 산업 평균, 표준편차와 대상회사의 지표값을 비교합니다. 최저점은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평가의 최저점을 지상파 재허가 심사 시와 같이 20%로 부여했습니다. 참고로 '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시에는 신생매체로서의 특수성과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의 형평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최저점수를 30%로 부여한바 있습니다. 세부심사항목, 지표값 범위별 취득점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임 1>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중·소분류로 나누고, 그리고 평가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시기에 용이하게 평가방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긴 내용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6페이지를 보시면 방송법 위반 기준 점수 항목에서 마지막에 보면 항목 ②와 항목 ③ 더한 것이 있고, 항목 ②와 항목 ④ 더한 배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②와 ③이 같이 있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감점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까?

○ 심사지원반

- 아닙니다.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② 경고와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라는 제재가 각각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②번 제재 또는 ③번 제재 또는 ②+③인 '경고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라는 별개의 제재 1개가 부과될 뿐입니다. 따라서 추가 감점이 아니라 고유의 ②+③ 제재를 받아 - 2.86 감점을 받게 됩니다.

○ 심사위원

- 5페이지를 보시면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를 적용하는 적용대상과 기간에 대한 건입니다. 2014년 9월 1일~2017년 8월 31일까지가 <1안>이고, <2안>이 2014년 9월 1일~2017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안>을 했을 경우에 지난 2월에 한 것에 비해 재승인 유효기간 전전전월이 아니라 전전전월이 되니까 그것이 약간 문제가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만약 <2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적용대상 기간이 37개월이 되니까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아예 적용기간을 2014년 10월 1일부터 해서 2017년 9월 30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그러면 2014년 9월에 처분받은 것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MBN에 대해서 엄청난 큰 혜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빠지지 않고 적용하는 것인데, 다만 그 기간 적용을 얼마로 할지 3년으로 할지, 3년 1개월로 할지는 어떤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평가자가 재량을 갖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합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2월에 3사를 심사할 때 3년을 적용했을 때 만약에 MBN에 대해서만 3년 1개월을 적용하면 MBN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1>안의 경우 MBN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전전전월까지만 적용받게 되니까 그것도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희가 2015년에 재승인 조건을 MBN이 불이행해서 2016년에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2016년 것을 점검했더니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이행을 해서 콘텐츠 투자계획을 못 지켜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과징금을 부과한 시점이 2017년 9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 1건이 적용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3사 형평성을 따져 보면 8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이 이번 심사에서는 제외가 되지요. 그런데 실익은 사실 없습니다.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된 건에 대해서 MBN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든 저렇게 적용하든 간에 어쨌든 그 건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익은 없는데 한번 논의해 보고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을지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안건에 반영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1안>으로 가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 심사지원반

- 이런 문제가 결국은 심사할 때 융통성을 발휘해서 적용해야 하는 부분일 것 같고, 이것이 딱 정해진 법칙이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제 생각에는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는 행정처분을 얼마나 받았느냐라는 계량적인 평가기준이기 때문에 그 행정처분 기간이 중심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기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신다면 <1안>이 맞다

○ 심사위원

- <1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만을 따지면 사실상 재승인 유효기간 전전월, 이 안도 어느 측면에서는 형평성에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1안>으로 가도 형평성에 맞는 측면이 있고, <2안>으로 가도 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심사항목 자체가 관계법령 위반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나>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1안>, <2안> 결정을 아직 안 하셨습니다.

○ 심사위원

- 저희 의결을 통해 <1안>인지, <2안>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들 의견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말씀들을 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저는 소송 중인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여부에 의해 방송사업자가 소송을 통해 감점을 회피

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월 때문에 3년 1개월로 늘어나지만 그것이 만약 8월이었다면 회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건부나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뭔가 방법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그것은 결국 원칙에 대한 문제인데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미확정 처분으로 봐서 점수를 감점에서 빼줄 것인지 아니면 행정청 단에서는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감점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종편 심사만 볼 수 없고 지상파라든가 다른 방송사업자 심사, 통신사업자 심사의 경우에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다 빼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라서 지금 단계에서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상반기에 할 때 TV조선과 JTBC는 3월 31일이고, 채널A가 4월 21일이라서 그것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그때는 감안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었고 그때는 동일하게 기존과 비슷하게, 2014년 3월에 재승인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1월 말까지 행정처분을 감점 적용했기 때문에 그 예에 준해서 연초에는 똑같이 1월 말까지 감점하는 것으로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이번에 8월 31일까지 하면 다음번 재승인 심사 때 9월 것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9월 것이 다음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만약 그렇다면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면 오히려 9월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아마 확정이 될 테니까요.

○ 심사지원반

- 그렇지요. 다음 재허가 심사 전에는 확정이 되겠지요.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 심사위원

- <1안>과 <2안>을 비교해 보면 제일 심의 기준인 형평성이 맞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1안> 8월 31일까지 하고, 이것이 행정소송을 하든 안 하든 결과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니 8월 31일 <1안>이 더 형평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제 생각에도 <1안>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적용기간이 타사들에게도 적용됐기 때문에 일단은 형평성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안> 같은 경우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익이 있든 없든 떠나서 어차피 이것이 나중에 다시 또 산정되기 때문에 굳이 논란 의혹을 받아가면서까지 <2안>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1안>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심사위원

- 이렇게 보시면 방송평가에서도 행정처분에 대해서 계속 점수가 각각 부여되어 있는데 그러면 행정처분 기간으로 해야지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요, 원칙적인 기준이.

○ 심사위원

- 그런데 이것이 650점 훨씬 위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650점 근처에 있게 되면 상당히 난감한 사안일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지금 현실적으로 난감한 상황이 생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8월 말까지 했든 9월 말까지 했든 이것 때문에 점수가 추가로 더 감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원칙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안>, <2안>을 넣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소송 중인 건이 반영되고 안 되고 해서 해당 점수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과징금을 5,000만원 이하로 받은 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10점이 감점되고 그것을 환산비율로 적용하면 5.71점이 감점됩니다, 만약 MBN의 과징금이 이번엔 포함돼서 적용된다면. 그렇지만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심사에서 <1안>으로 하든 <2안>으로 하든 그것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수가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위원장

- <2안>에 대해서 또 의견 있으십니까?

○ 심사위원

- 이것이 만약에 행정소송으로 가면 이번 건은 소송이 걸려서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 소송이 계속 되지 않아서 그냥 포함돼서 했을 때 이것이 행정소송으로 가면 행정처분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행정처분 기간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참고로 말씀드리면 <2안>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2월 심사는 3월까지가 유효기간 만료였는데 한 달 전인 2월에 심사를 하게 된 것이고, 지금의 심사는 11월 31일이 유효기간 만료인데 11월에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심사기간을 언제로 두었느냐 차이 때문에 전전월의 문제가 발생하는 실무적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까? (“<1안>으로 하시지요”하는 심사위원 있음) 전체적인 의견이 <1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니까 <1안>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지요. (“예”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 이외에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심사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나> ‘2017년 종편PP(MBN)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5. 폐 회

○ 심사위원장

- 실무반에서 특별하게 말씀하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으시면 오늘 제1차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 44분 폐회】

2017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 속기록

- 일 시 : 2017. 11. 8.(수) 13:36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1층 강의실(107)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록

□ 회 의 명 :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

□ 일 시 : 2017. 11. 8.(수) 13:36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1층 강의실(107)

□ 참석위원 : 이광재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이상기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최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영성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양윤숙 (법무법인 태울 변호사)
강평경 (서강대 경영대학 부교수)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부교수)
이태민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허남호 (방송미디어연구소 UHDTV 사업 담당)
김자혜 ((사)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학부 교수) (13명)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속기록

【13시 36분 개회】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심사지원반 성원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 열세 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에 관한 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2017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17년도 MBN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 접수를 의결한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붙임>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종편PP 재승인 심사할 때 공개적으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의견접수 기간은 '17년 9월 1일~9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였으며, 접수방법은 우편, 팩스, 이메일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접수된 건수는 총 134건이며, 그중에 저희가 유효하게 접수한 건수는 87건입니다. 밑에 통계표를 보시면 우선 우편으로 1건, 팩스는 0건, 이메일로 86건이 들어왔고 저

회가 동일 성명·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동일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중복'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건은 7건, 성명 및 개인식별 정보가 미흡한 의견은 '누락'으로 분류하였는데 이것은 40건입니다. 그래서 총 134건이 접수되었으며, 유효한 87건 중 재승인 찬성의견은 0건, 재승인 반대의견은 83건, 기타는 4건입니다. 접수 결과를 말씀드리면 종합편성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시사 및 보도프로그램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으며, 현 정권에 대해 편파방송, 특히 ○○○의 편파적 발언에 대한 지적이 대다수가 있었습니다. MBN 프로그램 중 <실제상황>과 <천기누설> 등 선정적이고 부정확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많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시청자 제출 의견에 대해서 재승인 심사 반영 결과를 방송법에 따라 공표해야 하는데 재승인 심사하고 재승인 여부를 의결한 후에 백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뒤에 보시면 <붙임>으로 제가 6건 정도로 주요 시청자 의견을 요약해 드렸는데 이것을 읽어보시면 되고, 이렇게 책자로 총 87건의 의견을 저희가 다 인쇄해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에 배치할 예정이니까 틈나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시청자 의견에서 기타 4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 **심사지원반**

- 찬성이라든지 반대를 표명하지는 않았고 그냥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요약문을 올렸는데 그것에 대해 의견을 접수한다든지 그런 것이 기타로 분류되었습니다.

○ **심사위원**

- 시청자 의견청취의 공지 방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심사지원반**

- 저희가 일단 공고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저희 홈페이지에 올렸고, 그것을 관보 게재도 하고 MBN에게 요청해서 MBN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MBN 주요 시청시간대 프로그램에 1회에 두번 정도 홀림자막으로 공표했습니다. 한 달간 진행했습니다.

○ **심사위원**

- 주 1회입니까?

○ **심사지원반**

- 1일 2회입니다.

○ 심사위원

- 87건이 집계가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것은 전부다 들어간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여기에는 87건이 다 들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여기에 의견을 요약해 주셨는데 이 의견을 요약하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제가 다 읽어봤고 대부분은 가장 짧게 '반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 외에 길게 자신의 의견을 써 주신 분 중에 조금 유효하다고 생각한 것만 추렸습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

- 대상자 연령이나 성별 같은 것들이 국민의 인구 분포에 비례해서 추려 놓습니까, 아니면 그냥 제출자들을 다 받아서 한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보통은 주실 때 성명이나 주소 정도만 해서 구별할 수 있게끔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희가 성별이라든지 유효하게 접수할 수 있는 건은 다 넣었습니다.

○ 심사지원반

- 따로 구획을 나누어서 분류해서 받거나, 그렇게 하려면 20대, 30대 맞춰서 비율을 정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접수하고 그것을 가지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은 것입니다. 사전에 무엇을 정해서 표본을 정하고 이렇게 추출하듯이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 심사위원

- 나이대별 반대 이유나 나이대별 분류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개인정보가 있어서 저희가 주민번호를 따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성명과 주소 정도만 들어오는 편이어서 나이대로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이런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을 보면 반대하는 쪽은 적극적으로 하고, 수동적이라든지 그냥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침묵하는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이 왜곡현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 심사위원

- 시청자 의견을 받는다는 공지는 어떻게 하셨지요?

○ 심사지원반

- 저희가 광고문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MBN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방송으로 흘림자막으로 나갔습니다.

○ 심사위원

- 그 기간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 심사지원반

- 한 달간 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지난번 TV조선이나 JTBC도 한 달 정도 밑에 자막을 흘려서 시청자 의견을 받는 양의 비교가 가능한지요?

○ 심사지원반

- 예, 한 달씩 동일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 심사위원

- MBN은 87건수로 나왔는데 다른 방송에 비해 데이터가 비교될….

○ 심사지원반

- 지난번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의견 총 건수가 32,000건 정도 받았습니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분류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대부분의 의견은 반대의견이었습니다. 종편 재승인을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 찬성, 반대를 떠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시청자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많이 반복적으로 다 나타내고 있는데 시청자위원회에서 문제제기된 것이 시정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특정인을 거론하기보다는 쪽 대강 요약해 놓은 것을 읽어보면 시청자위원회에서 문제제기된 것이 그대로 이분들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발적인 시청자들에게 한 달 동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참고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것에 점수….

○ 심사지원반

-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의결하는 것은 점수에 반영하시라는 취지입니다. 심사자료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에 반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아주 미세 부분인데 5페이지를 보시면 ○○○씨 같은 경우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수시로 경력직을 뽑는데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수시로 경력직원을 뽑는 등, 신규 일자리 창출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심사위원

- 이것은 TV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요?

○ 심사지원반

-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 공고를 낼 때 MBN이 이것을 위해 세 페이지 정도 신청서를 요약해서 올리는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올리기 때문에 이분은 그것을 보시고 작성해 주신 의견입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저희가 의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고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의결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보고만 들었지 의결하는….

○ 심사지원반

- 왜 이것을 의결하느냐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평가에 반영하는 심사자료로 의결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변경해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자료로 쓰기 위해 의결한다는 취지입니다.

○ 심사위원

- 접수를 의결한다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접수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 심사지원반

- 접수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보고사항

가 종편PP(MBN) '17년도 상반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

○ 심사위원장

- <보고사항 가> '종편PP(MBN) 2017년도 상반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심사지원반 서면보고 대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이 건은 저희가 별도로 종편의 사업이행계획 실적을 점검할 때 자문반을 따로 구성해서 자문반은 주로 교수님들이신데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의견이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면보고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 심사위원장

- 이것을 아마 다 읽어보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신지요?

○ 심사위원

- 반대는 아닌데 이것을 쓱 지나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데 항상 신참이 무섭다고, 핵심적인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점검 결과를 봐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에 재승인을 하고 나서 재승인 조건들이 붙여졌고 그것에 대한 이행실적은 지금 사업계획서에도 반영되어 있고 저희가 별도로 드린 재승인 심사 참고자료에도 어떤 식으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이 재승인 조건에 따라 2017년도 상반기 실적에 대해 점검한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 재승인할 때 저희가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정성 확보방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세부이행계획을 내도록 했고, 그것에 따라서 종편사업자들이 낸 계획을 보면 방송의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계획에 따라 구축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4페이지 <표>에 보시면 평가사항이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송의 공적책임 확보 이렇게 3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고 여기에 대해 실적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해 보고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제출한 세부이행계획은 이행을 했다, 당연히 사전모

니터링 시스템이나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관련된 시스템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보수·진보 패널 균형 외에 출연자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즉 출연자들이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어서 이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층적 토론을 통한 사회현상에 대한 대안제시의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토론프로그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은 깊이 있는 토론 내지는 대안제시가 되지 못하고 단순히 비방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시청자 모니터링 관련해서도 시청자모니터단의 모니터 내용을 보면 칭찬의 자화자찬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과연 실질적인 시청자모니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의구심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공정방송위원회라고 해서 종편에서 오보·막말·편파방송의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내·외부 위원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방송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오보·막말·편파방송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보다는 자체 제작회의, 내부 제작회의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밑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참고로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쪽 한번 보시고 의문 나는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말씀을 들어보면 MBN에 하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심사지원반**

- 형식적으로는 뭔가 자기들이 하겠다는 계획들을 갖추고 있지만 운영되는 실질을 보면 계획처럼 잘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 의견인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이행실적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정성 확보 관련해서 6개월마다 반기별로 계속 평가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승인 조건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MBN의 경우에는 2015년 실적을 점검했을 때 재방비율과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 못해서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6년 실적을 점검했을 때 재방비율은 이행하고 콘텐츠 투자 비율은 이행을 못해서 과징금 4,5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7페이지 <붙임 1>을 보시면 매일방송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서 재승인 조건 2번입니다.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운영실적을 매반기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매반기가 2017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것을 저희가 심사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중간중간에 보고가 들어왔을 때 방통위에서는 보고만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방통위에는 없습니까?

○ **심사지원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저희가 실적을 못 지켰을 때 행정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시정명령이나 아니면 행정지도 차원에서 별도 공문을 보내서 이행촉구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징금 처분 등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안 지키는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징금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도 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업무정지를 한 바는 없고 과징금 처분을 계속 해 왔습니다.

○ **심사위원**

- 과징금 처분의 빈도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심의할 때 그 자료가 나타나겠네요. 빈도수라든지 어떤 수위 같은 것에 대해서….

○ **심사지원반**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씩 이행실적 점검을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시정명령이 나가거나 아니면 과징금이 나가거나 이 정도입니다.

○ **심사위원**

- 두 해에 걸쳐 실행을 안 한 것입니까? 콘텐츠, 과징금이 나왔는데….

○ **심사지원반**

- 콘텐츠 투자계획 같은 경우에는 재승인 유효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실행을 하지 않았습시다. 이행을 못한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이것은 심사평가 <5-2>와 <5-3>에 해당되는 계량평가의 결과로서 이미 감점 표시가 된 상태이지요?

○ **심사지원반**

-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나간 부분은 감점이 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징금 부분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빠지는 것이고 시정명령 제기한 부분은 소송에서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감점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은 계량평가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계량평가에 들어가고, 또 보시면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라고 비계량평가 항목 70점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8페이지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MBN은 TV조선에 비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방통위가 뭔가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편에 대한 이런 지적은 쪽 있어 왔던 부분입니다. 종합편성채널인데 TV조선이나 다른, JTBC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도·교양 위주, 처음에는 드라마도 하기는 했지만 거의 드라마는 자기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도·교양 위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명백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고서는 말이 종편이지 종편 같지 않은 채널입니다. 이런 지적은 시청자 의견에도 다 나왔던 부분입니다. 예전에 지상파 같은 경우 보도·교양·오락 비율을 지정하는 것이 있었는데 종편도 뭔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 심사지원반

- 지난 3월에 재승인할 때 3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재승인 조건으로 쫓습니다. 그때 뉴스나 탐사보도, 토론대담, 시사논평 프로그램처럼 보도 쪽으로 분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향후에는 34% 미만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재승인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도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안 지켰을 때 후속적인 행정적인 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교양이나 오락 부분까지 얼마의 비율로 편성하라고 하는 것은 다소간 무리한 측면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심사위원

- 34%라는 것은 방송 송출시간 기준으로 한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편성시간 기준으로 해서 34% 미만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그동안 했던 분야별 비중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 심사지원반

- 실적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2017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 참고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종편PP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 투자계획이나 재방비율 그런 것까지 쪽 점검하고 실적이 어떻게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편성비율...

○ 심사지원반

- 편성비율은 2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조화로운 편성과 관련해서 MBN과 다른 3사의 장르별 프로그램 편성 실적과 그 뒤쪽에 보면 계획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보여주신 자료 서면으로 제출된 것은 2017년도 상반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게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심사평가에 있어서 2번 항목과 3번 항목을 평가함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저희가 이 보고를 받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저희는 2013년~2016년도까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된 것은 2017년도 상반기만 있지 않습니까?

○ 심사지원반

- 그것은 저희가 따로 보고드린 것이고 그전 부분은 심사 참고자료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2016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가 있고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지난번 재승인받은 것이 2014년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재승인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것이 2014년 12월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행실적에 대해서 점검됐는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안건 14페이지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2017년도 상반기만 따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가장 최근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 2015년, 2016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방통위에서도 점검을 다 해서 그것을 행정처분까지 끝낸 상황입니다.

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상반기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한 것이고 이것은 따로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사를 바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위원회에 이것을 보고드리고 심사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위원님들이 받으신 유인물을 다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의문 나는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자료가 심사평가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계속 질문을 하셔서 그 의문점을 풀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것은 나중에 휴식시간 때 다시 서류를 검토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지원반**

- 그리고 오전에 질문하신 종편PP 3사 '17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은 심사 참고자료 32 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여기에 나와 있는 공정방송위원회가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책임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세부계획을 내도록 2014년도에 재승인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종편사들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의 질적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로 위원회를 하나 또 구성한 것입니다. 편성위원회도 별도로 있고 시청자위원회도 별도로 다 있는데 추가로 방송의 품격 제고, 공적책임 제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별도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더 보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것을 거의 내부 위원들, 그러니까 편집 담당자라든가 편성 담당자라든가 내부 위원들로 구성하다가 최근에는 외부위원들까지 추가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심사위원**

- 권고사항에 1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5가지 이상이 있는데 점검 결과는 2번 항목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3, 4, 5, 6번은 나머지 참고자료에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저희가 2번 사항에 대해서만 반기별로 점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는 이것만 점검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매년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35% 이상 편성은 이행했다고 봐야 합니까?

○ **심사지원반**

- 예, 그것은 다 이행했습니다. 종편들의 외주비율은 높습니다.

○ **심사위원**

- 외주비용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입니까, 아니면 퀄리티가 높아서 그런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제가 그것은 확실한 근거자료가 없는 관계로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사업자들에게 세부적인 자료를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심증을 가질 수 있는데….

○ **심사위원**

- 요즘 말하고 있는 일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외주제작이나, 내부제작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아서….

○ **심사지원반**

- 의견청취 할 때 그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 **심사위원장**

- 궁금하신 것을 다 질의하셨습니까?

○ **심사위원**

- 그런데 정규직, 비정규직 그런 논란은 고용노동부 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요. 맞는데 저희가 심사….

○ **심사위원**

- 방통위에서 그렇게 하면 직무 침범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심사와 관련해서 심사항목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송법에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영 계획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사업계획서에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상파 쪽에서도 보고 있고 공통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여담인데 2014년도 권고사항에서 '공익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이렇게 쓰셔도 관계없습니까? 공익적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규정해서 들어올 텐데 이렇게 넣으면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텐데….

○ 심사지원반

- 결국은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면 최종 마지막 회의 때 심사위원님들이 주시는 심사의견들을 종합정리를 하고 심사의견 나온 것 중에 권고사항도 붙이다 보니까 표현을 그것보다 더 좋은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표현을 못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권고사항이나 재송인 조건의 문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이런 정도의 표현은 권고사항으로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쓰든가, 공익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라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원래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그렇게 하라고 방송사에게 하는 것이 직무유기 같아서 그렇습니다.

○ 심사지원반

- 내용을 보시면 신청서를 보면 턱없는 프로그램들을 공익적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 공익적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심사위원

- 방송사가 공익적 프로그램이 아닌 것을 공익적 프로그램인 것처럼 제출한 까닭은 방송사에서 공익적 프로그램의 방송 비율이 정확하게 미니му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예, 미니мум이 있습니다. 공익프로그램 10% 미니мум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 심사지원반

- 법령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렇다면 매일방송에 대한 권고사항으로서도 공익적 프로그램을 설정한다고 권고할 그런 권한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심사지원반

- 결국은 이 심사평가 과정에서 공적책임이나 이런 확보를 얼마나 해 왔는지에 대한 실적이나 계획을 저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만약 공익적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하게 되면 공익에 많이 기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보실 때 공익적 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셔서 보시겠지만 어쨌든 사업계획서를 써 내는 종편사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써내고, 그중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심사위원들이 인정해 주시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욕심에 그렇게 써 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려서 배점해 주셔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방통위가 그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기는 한데 사실상 공익적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용어 자체가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아주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은 것이지요. 아직까지 못한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지금 심사지원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기에 모인 중요한 이유는 넓게 보면 다 방송발전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심사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사항 가> '중편PP(MBN) 2017년도 상반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접수하겠습니다.

5. 폐 회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제2차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 18분 폐회】

2017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 속기록

- 일 시 : 2017. 11. 9.(목) 17:08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1층 강의실(107)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록

- 회 의 명 :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
- 일 시 : 2017. 11. 9.(목) 17:08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1층 강의실(107)
- 참석위원 : 이광재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이상기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최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영성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양윤숙 (법무법인 태울 변호사)
강평경 (서강대 경영대학 부교수)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부교수)
이태민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허남호 (방송미디어연구소 UHD TV 사업 담당)
김자혜 ((사)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학부 교수) (13명)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 속기록

【17시 08분 개회】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심사지원반 성원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 열세 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추가 심사자료 채택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추가 심사자료 채택에 관한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추가 심사자료 채택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 문입니다.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추가 심사자료 채택에 관한 건」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추가 심사자료 채택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건의 추가 심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4년~'17년까지 프로그램 제작 협찬수익 내역, 협찬 기업명을 표기해서 요청해 달라고 했습니다. '16년 협찬수익 ○원에 대한 프로그램별 수익내역 전체 제공을 요청했고, 두 번째로 '14년~'17년까지 접수 채널별 전화, 인터넷 등 시청자 불만 건수를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 '14년~'17년까지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와 대차대조표상 감가상각비 총액이 상이한 이유를 요청했습니다. 네 번째, 드라마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니다. '14년~'17년까지 방영된 드라마 전체에 대해서 저작권 소유 주체의 명확한 기재를 요청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추가 심사자료가 4건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장

- 그런데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 심사지원반

- 오전에 드렸던 자료가 있는데 그것 포함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예, 오전에 추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지금 들으신 대로 관계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지금 제출된 자료 2건 모두 제가 요청한 자료라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드라마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자료는 미디어업계 통상 직접제작비를 지원했을 경우에 저작권을 방송사가 대부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분명하게 ○% 제작비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에게 모두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요청했는데 제가 실수로 직접제작비 지급금액을 함께 요청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안 했습니다. 저작권이 그쪽에 있다는 것만 분명히 밝혔고 그것 이상의 다른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 위원님 말씀대로 비독점 국내 방영권을 가졌다면 드라마의 특성상 재방, 삼방 넘어갈수록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거의 용도 폐기될 정도가 되면 넘어가는 정도가 아닌가 싶어서 실질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것이 제작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협찬수익을 아까 오전에 요구했을 때 2017년도는 프로그램별로 해서 협찬수익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2016년도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나온 답변처럼 그 당시에는 프로그램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받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다고 저희에게 보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에 대한 출처가 각 프로그램별 어

땡게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두 번째 자료는 제가 요청을 했는데 계획서상에는 전화로 접수된 건만 계획서상에 있고 추가로 온 자료에는 인터넷으로 접수된 것도 제시했는데 1년에 1,000건, 500건 그 정도로 결과가 있습니다.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3번 항목은 제가 요청을 했는데 손익계산서에 명시된 감가상각비와 대차대조표상에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와 차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설명이 되었고 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했던 회계사와 직접 통화했는데 손익계산서 판관비에 나타나는 감가상각비는 비품에 해당하는 것만 명시했고 나머지 큰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원가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방송장비, 방송설비에 관한 감가상각비는 매출원가에 다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질문한 것은 “그러면 그 감가상각비와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합치면 이 금액이 나오나?”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은 힘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와서 대차대조표상 나타나는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것과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난 감가상각비, 다시 말하면 비품의 감가상각비이지요. 금액을 비교했는데 그것도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감가상각비가 도대체 어떻게 어떤 근거로 나와서 명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가 대차대조표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까?

○ 심사위원

- 적게 나오지요.

○ 심사위원

- 매출원가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얼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판관비 항목에 들어와 있는 감가상각비는 대차대조표에서 계산된 것보다는 적게 나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이것이 일종의 이익을 갖다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익 액수가 조금 커지겠네요? 맞습니까? 더 줄어듭니까?

○ 심사위원

- 회계사가 이야기한 바가 정확하다면 총 감가상각비는 매출원가에서 포함시킨 감가상각비와 판관비에서 나타난 감가상각비 합친 것이 대차대조표상 차이에서 나타나는 감가상각 누계액 전년도와 올해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감가상각에서 계산되는 감가상각비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고, 회계사가 이야기한 부분도 틀리다, 자료가 맞지 않다, 비품상의 감가상각비라고 했으면 그것이라도 맞아야 하는데 손익계산서상의 감가상각비, 판관비에서 나타나는 감가상각비가, 비품의 감가상각비가 그것만 보더라도 그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재무제표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 유기적 연관성이 있고 이것을 비교했을 때 일관하게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연결시켜서 계산했을 때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 심사위원

- 일단 항목을 매출원가에 반영 하나 판관비에 반영 하나 예를 들어 나중에 나온 이익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쪽 회계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계정을 여기에 넣었다, 여기에 넣었다는 것은 어차피 제대로만 넣었다면, 원 금액대로 다 넣었다면 뒤에 후단에서 뭔가 달라지는 것은 없고, 그런데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매출원가에 반영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용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추후라도 이것은 방통위에서 회계정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리고 제가 승인계획서에서 확인한 바로는 판관비의 감가상각비는 비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판관비에 나타나는 감가상각비는 대차대조표상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의 전기와 현기의 차이값이 바로 그 비품의 감가상각액입니다. 그런데 그 값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것과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금액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지금 손익계산서에는 그것보다 훨씬 적게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이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하시면 그런가보다 싶은데 저희 같은 문외한들은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러한 차이점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실수에 의한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사위원

- 그런데 방송기자재나 그런 것이 감가상각을 설정하는 기준 자체가 딱 확정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마다 조금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액수가 큼니까?

○ 심사위원

- 적지는 않습니다.

○ **심사위원**

- 매우 크지요. 그런데 어떻게 감가상각을 하느냐의 문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그것은 경영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재무제표상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심사위원**

- 회계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제가 반복된 표현인데 분식회계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현재로서는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는 다소 의구심이 든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매출원가의 세부항목이 어디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했던 회계사가 어쨌든 감가상각액의 총액이 관관비에서 보고된 것과 매출원가에 흡수돼서 들어가는 것과 합이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감사한 회계사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 **심사위원**

- 그것이 2016년 회계자료입니까? 아니면 2015년, 2014년 3년간 다...

○ **심사위원**

- 2016년도 것으로 시작해서 봤고 2015년도도...

○ **심사위원**

- 2년 동안?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자료에 대한 보충자료를 다시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기에는 시간상 어려워 보입니다.

○ 심사위원장

- 더 이상 요청을 해도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평가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참작해서 이 자료를 평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신뢰도를 감안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료를 기준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 이외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추가 심사자료 채택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나.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 계량평가 결과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 계량평가 결과에 관한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 계량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 계량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계량평가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본문 3페이지입니다. 계량평가 결과 방송평가는 400점 만점에 326.86점, 그리고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례는 10.85점이 감점되었습니다. 시정명령 및 불이행은 5.71점이 감점됩니다.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은 30점 만점에 16.98점에 해당합니다. 이 해당 항목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평가의 세부평가방법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평가 점수는 ‘13년에 577.01점, ‘14년에 574.53점, ‘15년에 564.48점이 되어서 평균값이 572.01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4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26.86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평가 점수에는 ‘14년 재승인 시 반영된 감점 점수를 제외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 감점에서 제외된 반영 점수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례 평가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세부평가방법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송법 위반에 따른 주의가 7건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3.99점, 위반에 따른 경고가 2건 있어서 -2.28점, 방송법 위반에 따른 관계자 징계가 1건 있어서 -2.29점, 과태료가 1건 있어서 -2.29점이 되어서 총 감점 점수의 합계는 -10.85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세부평가방법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건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1건 있어서 총 5.71점이 감점되었습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시정명령 1건과 과징금 부과처분 1건은 감점에서 확정되지 않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감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평가결과 보시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회

계자문단 회의를 통한 초안을 마련했고 어제 심사위원회 경영, 경제, 회계 위원님들이 평가 점수를 검수해 주시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세부평가방법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어제 오전에 이번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을 의결해 주셨는데 해당 세부심사 기준 의결(안)에 해당 항목에 대한 세부평가 산식이 있었습니다. 이 세부평가 산식에 대해서 잠깐만 상기를 시켜드리자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지표별 전 산업 평균과 표준편차와 대상 회사의 지표값을 비교하겠다는 것이 그 평가방법의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기업경영 분석을 보기 위한 업종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연도별 기업경영 분석을 이용했는데 18개 기업 분류 중에서 2개 값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 제외된 업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18개 총 업종 평균값과 개별 업종 평균값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서 평균값을 왜곡시키고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쪽을 제외하고 16개 업종을 기준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습니다. 각각 16개 업종 기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증가율 3개 항목에 대해서 '14년, '15년, '16년 각각 값이 나와 있는데 해당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어제 세부심사기준 의결 시 최저점은 20%로 설정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최저점은 20%로 설정하고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8페이지에 재정적 능력 평가점수가 산출되었습니다. '14년 평가점수와 '15년 평가점수, '16년 평가점수를 더한 다음에 이를 3으로 나눈 평균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채비율에 대한 평가점수는 '14년에 12점, '15년에 12점, '16년에 12점으로 평균값이 12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14년 1.8점, '15년 2.76점, '16년 2.33점으로 평균값은 2.3점에 해당합니다. 총자산증가율은 '14년 1.8점, '15년 2.6점, '16년 3.64점이 되어서 평균 2.68점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점수는 이 3개 값의 합산치인 16.98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들으신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MBN의 회사명이 무엇이지요?

○ **심사지원반**

- (주)매일방송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8페이지 테이블에 매일경제가 아니라 매일방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수정해서 의결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지적하실 사항이 없을 만큼 준비가 잘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나>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 계량평가 결과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4. 폐 회

○ 심사위원장

- 오늘 제3차 회의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 31분 폐회】

2017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 속기록

- 일 시 : 2017. 11. 10.(금) 11:04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1층 강의실(107)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록

- 회 의 명 :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
- 일 시 : 2017. 11. 10.(금) 11:04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1층 강의실(107)
- 참석위원 : 이광재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이상기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최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영성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양윤숙 (법무법인 태울 변호사)
강평경 (서강대 경영대학 부교수)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부교수)
이태민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허남호 (방송미디어연구소 UHD TV 사업 담당)
김자혜 ((사)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학부 교수) (13명)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 속기록

【11시 04분 개회】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심사지원반 성원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 열세 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에 관한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의결주문입니다.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붙임> 보시겠습니다.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2017년 11월 30일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신청서 검토, 의견청취, 심사평가 등을 하고 다음과 같이 심사의견을 제출합니다. 심사의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사항별 소견입니다. 먼저 중점심사 항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과 관련한 심사의견입니다. 오보·막말·편파 심의제재 건수가 기타 종편3사에 비해 적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으나 이

의 실질적인 운영 및 개선 노력이 미흡함.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출연자심의위원회의 외부인 비중을 늘리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기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제작·편성의 독립성과 내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과 주요 책임간부의 임면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건수가 2014년 0%에서 2017년 0%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보도 프로그램의 편파성에 대한 불만 해소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의'로 수정하겠습니다.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입니다.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등에서 이익집단 성격의 협회 추천자 및 전문가 비중은 높은 반면 언론시민단체, 환경, 인권 등 공공성과 시민성이 강한 단체의 추천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을 감안, 향후 추천에서 시청자대표성을 높여야 함. 시청자 의견 및 불만 접수 시 인터넷 접수의 경우 악의적 비방이 많다는 이유로 통계에서 누락시킨 바, 객관적 사실 자체로 통계를 작성하고 내용을 파악한 뒤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천기누설>, <업지의 제왕> 등 프로그램에서의 건강 기능식품의 홍보와 동 시간대 홈쇼핑 채널에서의 관련 식품 판매가 연계된다는 소비자 불만과 관련, 동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송사 내부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다양한 분야의 조화로운 편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시사논평·버라이어티쇼·다큐멘터리 등 4개 장르가 매년 0%~0%를 차지할 정도로 편성이 집중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탐사보도, 교육·문화·예술, 영화 등 기타 장르의 편성을 늘려 편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재방편성 계획을 신청서에 약 0%로 제시하였으나 사업자 의견청취 시 0% 초반대로 낮추겠다고 답변한 점을 감안, 0% 초반의 구체적 수치를 다시 제출받을 필요가 있음. 어린이의 현실적 시청시간대를 고려하여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을 오전 7시~9시, 오후 5~8시로 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콘텐츠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승인시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향후 3년간 콘텐츠 투자계획도 종편사 중 가장 적은 액수로 나타나 콘텐츠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이행실적 점검 시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이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 등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

○ 심사지원반

- 그 외 심사 항목입니다.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입니다. 협찬은 방송의 공익성을 해할 우려도 있는 점을 감안, 협찬 수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수익이 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매출구성에서 협찬매출이 '14년 0원, '15년 0원, '16년 0원으로 급증했으며, '16년 매출액의 전년대비 증가액 0원 중 0%에 해당되는 0원이 협찬매출 증가에서 나온 것임. 당초 승인 시 약속한 일자리 확대 취지에 부응하고,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채용인원 확대에 노력하고,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성이 있음. 감사 2명 중 1명이 매경미디어 그룹의 부회장으로 대주주인 매일경제신문사의 특수관계자이며, 사외이사 3인 모두 비방송 업종의 기업회장이라는 점에서 방송의 전문성, 경영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1년 승인 시 약속한 '사장공모추천제'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2014년 9월~2017년 8월까지 국산 방송장비 및 솔루션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약 0%선으로 아주 저조한 점을 감안,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연도별 이행실적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방송발전 지원 계획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작단가에 대한 분기별 시장조사를 통해 제작비를 현실화 했다고 실적에 기입했으나 실제 제작단가의 분기별 시장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콘텐츠 공정거래 노력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짐. MBN 자체적인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외주제작사의 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하게 지불하도록 하고, 외주제작사 선급금 지급을 위한 내부 기준을 정립하는 하는 한편, '하는'이 중복됐습니다. '하는' 하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및 방영권 등 수익배분에 있어 외주제작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승인 조건 및 권고(안)입니다. 먼저 공통 조건은 <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방송의 공적책임과 관련해서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와 관련한 조건입니다. <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14년 4건, '15년 2건, '16년 3건을 받아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2018년부터 재승인 유효기간까지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과 관련된 조건(안)입니다. 먼저 편성의 다양성과 관련한 조건으로는 <4>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시사·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2018년부터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참고로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프로그램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붙임>의 분류 기준에 따르되,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 <5>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을 2018년부터 0% 이하로 하되, 매년 1% 포인트 이상 단계적으로 감소시킬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일 1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관련 권고사항으로는 <1>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당 시청자의 가시청시간대를 고려하여 편성할 것.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조건입니다. <6> 방송 콘텐츠 투자 실적 및 계획이 현저히 미흡하므로, 향상된 콘텐츠 투자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재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을 것. 부가 단서로 '콘텐츠 투자금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영·재정·기술적 능력과 관련된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경영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관련된 권고사항으로 <2> 이사 및 감사 선임 시, 방송사업 경영의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수익의 건전성과 관련한 권고사항으로 <3>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수익을 창출하여 협찬수익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고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다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권고사항입니다. <4> 계약직 및 파견직 등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2011년 승인 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 다음 국산장비와 관련된 권고사항입니다. <5>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국산 방송장비 도입계획을 성

실히 이행할 것. 마지막으로 방송발전 계획과 관련된 유료방송 상생 관련 권고사항입니다. <6> 외주제작사 등 방송관련 유관사업자와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궁금한 사항은 아니고 날짜 제안 관련해서 <2>, <5> 조건에서 31일로, <5>도 '1월 말까지'가 아니라 '1월 31일까지'로 적시해서 동일성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4> 조건에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계획서를 잘 지켜라,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계획서에서 34%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4페이지 콘텐츠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위에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통일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질의보다 오타 수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말에서부터 목이 뻐던 것 같은데 3페이지에 '에 대한', '에 대한' 반복되는 것,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보도 프로그램 편파성에 대한 불만 해소 노력'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지원반

- '보도프로그램 편파성에 대한 불만 해소 노력'

○ 심사위원

- 이 의견서도 MBN에게 가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의견서도 다 공개가 되는 내용입니다.

○ 심사위원

- 의견서와 뒤에 있는 조건까지 다 포함해서요?

○ 심사지원반

- 예, 그렇습니다. 보다 보니까 6페이지 맨 아래쪽에 유료방송 상생 관련 권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료방송에 한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방송시장 상생’, ‘방송산업 상생’ 이런 쪽으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표현이 좋을지, ‘방송산업 상생’ 이렇게 쓸까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리고 콘텐츠투자 조건 <6>인데 ‘재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향상된 콘텐츠 투자계획을 승인 받을 것’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MBN 입장에서는 그 계획을 고쳐서 승인만 받으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준수할 의무는 부과가 안 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상식적으로는 준수라는 이야기이긴 한데 다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끝에 ‘이를 준수할 것’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 이를 준수할 것’, 다른 사업자는 다 ‘준수’로 했습니다.

○ 심사위원

- 5페이지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서 끝에 모두 ‘필요성이 있음’, ‘필요가 있음’ 또 ‘필요가 있음’인데 ‘감사 2명 중 1명이 매경미디어 그룹의 부회장으로 대주주인 매일경제신문사의 특수관계자이며, 사외 이사 3인 모두 비방송 업종의 기업회장이라는 점에서 방송의 전문성, 경영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전부 ‘필요성이 있음’ 이렇게 일관되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만 특별하게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진짜 시급한 것입니까?

○ 심사위원

- ‘마련이 필요함’

○ 심사위원

-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이 정도로 완화시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심사위원

-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심사위원

- '필요가 있음' 이렇게...

○ 심사위원

- 사실 이것은 별로 시급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임기가 있어서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함'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필요가 있음'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 심사위원

- 문맥을 조금 다듬는 차원인데 4페이지 중간에 뉴스·시사논평·버라이어티쇼 쪽 하면서 '집중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또 뒤쪽에 '편성을 늘려 편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으니 뒤쪽을 그냥 '편성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하면 '해소'가 계속 들어갈 필요가 없이 문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6페이지 '경영·전문성독립성투명성' 부분에 글자 사이에 콜론 하나씩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너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 심사지원반

- 페이지 수를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6페이지 <표>에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권고사항에 '경영전문성독립성투명성'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 사이에 콜론 하나씩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장

- 그다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심사위원

- 3페이지에 출연자심의위원회의 외부인 비중을 늘리고 그다음에 다 지우고 '실질적 기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실질적 기능을 유도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것을 거기에 적을 수 없으니까….

○ 심사지원반

- 실질적 기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심사지원반

- 어떤 추가하시는 것….

○ 심사위원

- 아까 추가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추가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고쳐져서 차라리 지우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외부인 비중을 늘리고 실질적 기능을 유도할 것’

○ 심사위원

- 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심사지원반

- ‘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더 이상 궁금하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제기된 것들은 일부 자구수정이지만, 근본적으로 내용을 고친 것은 아니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이라는 것보다는 원안대로 의결해도 괜찮겠지요?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 심사지원반

- 이것은 수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수정의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정하신 것을 수정의결하시는 것으로….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수정한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지원반

- 3페이지입니다. '외부인 비중을 늘리고 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으로 고치겠습니다. 또 3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도 프로그램 편파성에 대한'으로 '에 대한'은 삭제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조화로운 편성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영화 등 기타 장르의 편성을 늘릴 필요가 있음'으로 고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어린이의 현실적 시청시간대를 고려하여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을 오전 7시~9시, 오후 5~8시로 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문단 마지막 줄입니다. '방송의 전문성, 경영성,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마지막 문단 세 번째 줄에 '기준을 정립하는'에서 '하는'이 반복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조건 및 권고(안)에서 조건 <5> 마지막 줄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로 수정하겠습니다. 조건 <6> '재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고 이를 준수할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방송발전계획에서 <6> '방송산업 상생 관련한 권고'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까지 들으신 수정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 심사위원

-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4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 프로그램 현실적 시간대에 '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조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 심사지원반

- 방금 '권고'로 수정했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권고'로 바뀌었지요?

○ 심사지원반

- 바꿨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됐습니다.

○ 심사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실질적 기능을 유도한다는 의미가 실질적 기능 강화가 아니고 유도와 어떻게...

○ 심사위원

- 지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보도 쪽에 3명, 외부위원을 딱 2명 놓고 형식적으

로 운영하고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사내 심의위원회 규정이 실질적으로 보도 쪽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근거규정이 있는지조차….

○ 심사위원

- '실질적 기능 강화'라고 하면 안 됩니까?

○ 심사위원

-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외부위원을 늘리고….

○ 심사위원

- '유도'라는 단어보다 '강화'가 더 좋겠네요.

○ 심사지원반

- '강화'로 수정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자구수정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심사지원반

- 3페이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출연자심의위원회의 외부인 비중을 늘리고 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심사위원

- 궁금한 것이 심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과 뒤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안), 그러니까 심사사항별 소견과 재승인 조건 및 권고(안)에 나오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나, 권고나 이런 것을 일치시켜야 합니까?

○ 심사지원반

- 심사위원들께서 논의하셔서, 사실 이 심사의견서에 나오는 심사의견을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써 주신 것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심사위원께서 써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한다거나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더라도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셔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셔야 조건이나 권고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저는 이의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 심사위원

- 저도 거의 다 일치한다고 보고 '조건부 승인'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이라면 '조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권고는 추가 사항이고….

○ 심사위원

- 저는 이것을 할 때 조건으로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썼는데 다른 분들이 다 권고로 하시자고 하니깐 권고로 하는 것에 이의 없습니다.

○ 심사지원반

-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조건으로 붙이면 저희가 실적을 매년 받아서 이행 실적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경우에 시행명령, 과징금, 업무정지 이런 조취를 취할 수 있고, 권고사항은 저희가 접수를 매년 실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따로 그것을 점검해서 매년마다 하지는 않고 다음번 재승인 때 권고사항에 대한 실적을 받아서 평가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6페이지 맨 밑에 유료방송은 아까 무엇으로 바꾼다고 했지요?

○ 심사지원반

- '방송산업 상생'….

○ 심사위원

- '산업'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사항 가> "2017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에 관한 건"을 수정한 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폐 회

○ 심사위원장

- 오늘 제4차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공식 일정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회의를 마치기 전에 뒷바라지를 해 주신 심사지원반 여러분과 속기사님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심사 여러분께도 2박 3일간 정해진 생활수칙대로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생활공간 속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심사업무를 성심성의껏 수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고생하시면서 만들어낸 심사결과는 우리나라 방송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심사기간 중에 모두가 아무 탈 없

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박 3일 동안 주야로 정말 수고들 많이 하였고 끝까지 맡으신 직무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1분 폐회】

2017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 의견청취 속기록

- 일 시 : 2017. 11. 9.(목) 10:3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1층 강의실(106)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록

- 회 의 명 :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 의견청취
- 일 시 : 2017. 11. 9.(목) 10:3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1층 강의실(106)
- 참석위원 : 이광재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이상기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최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영성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양윤숙 (법무법인 태울 변호사)
강평경 (서강대 경영대학 부교수)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부교수)
이태민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허남호 (방송미디어연구소 UHD TV 사업 담당)
김자혜 ((사)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학부 교수) (13명)

2017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 의견청취 속기록

< (주)매일방송 의견청취 >

【10시 30분 개회】

○ 심사위원장

- 지금부터 (주)매일방송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신청법인의 의견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매일방송 관계자 분들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입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멀리 이곳까지 와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직접 제가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본 의견청취의 비공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매일방송의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발언한 전 과정은 속기와 녹음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주)매일방송 대표자이신 ○○○ 님 맞습니까?

○ (주)매일방송 대표이사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 님 맞습니까?

○ (주)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최대주주를 대표해 오신 ○○○ 님 맞습니까?

○ (주)매일방송 최대주주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법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크심사위원회 심사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 참석자는 이미 배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대표님 맞습니까?

○ ㈜매일방송 대표이사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가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신청법인의 대표자께서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3분 정도의 모두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모두발언을 하실 때 현재 우리나라에 공존하고 있는 종편과 보도채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에 답변하신 분들은 답변하시는 분의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방송 대표이사

- MBN 대표입니다. 저희 MBN은 1995년 3월 뉴스채널로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22년 간 방송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종편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지난 10월까지 72개월 가운데 60개월 동안 종편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면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일평균 도달 가구수도 900여만 가구를 기록하며 다른 경쟁 종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경쟁사가 AGB 닐슨에 의뢰한 TV뉴스 이용 채널조사에서 MBN이 일부 지상파 채널을 추월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MBN이 과거 지상파 프로그램 흉내 내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르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MBN은 정보와 예능이 결합된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와 착한교양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면서 200회 이상 장수 프로그램이 10여개에 달할 정도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개국 이후 꾸준한 매출 성장과 함께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적자에서 벗어나는 등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방송은 공익적·공공적 성격이 강한 산업이어서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시청자는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1995년 유료 방송이 시작되고 개국했던 사업자 대부분이 최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MBN은 설립 이후 책임경영이라는 원칙 아래 최대주주의 변동 없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종편 출범 당시 약속했던 새로운 고용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MBN 내부인력 ○명 외에도 외주제작사 등을 포함해 ○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심사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종편 초기에 예상보다 시장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콘텐츠 투자가 계획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세에 있는 만큼 앞으로 콘텐츠 투자계획을 확실하게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스 프로그램에서 출연진의 발언이 몇 차례 논란거리가 됐다는 점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MBN은 진보와 보수, 중도 성향 출연자를 균형 있게 선정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실제 MBN이 종편 4사 가운데 막말·편파방송에 대한 심의제재 건수가 가장 적다는 점은 나름의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종편과 보도채널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편은 보도채널과 다르게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콘텐츠 시장을 비롯한 방송산업 발전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로 바뀐 이후 저희는 공정하고 신뢰 받는 뉴스 못지않게 재미있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 왔습니다. MBN은 이번 재승인을 전후해 제2의 개국이라는 각오로 종합편성채널의 정체성에 맞는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주)매일방송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이미 모두발언에서 한번 언급하셨지만 콘텐츠 투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크게 2가지 질문하겠습니다. MBN은 지난 3년간 콘텐츠 투자 실적이 미미하여 반복적인 행정처분을 받았습시다. 또한 향후 3년간 계획도 역시 타 종편보다 액수도 적고 집중투자의 시기도 4~5년 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종편PP의 방송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많은데 이렇게 콘텐츠 투자에 대해 소극적인 이유를 다시 한 번 명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펀드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2011년 승인 당시 계획에 대비하여 현재 ○원 정도 덜 투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14년 재승인 심사 의견청취 과정에서 콘텐츠 투자금 산정 기준에 있어서 방통위 지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6년도 신청서에서도 콘텐츠 투자금 중 일부가 과대 산정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투자금액 제출자료가 신뢰성이 낮게 된 이유, 그것이 실수라면 발생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매일방송 대표이사

- 먼저 콘텐츠 투자 계획이 계획보다 미흡했다는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적되는 적자 그리고 방송 경영 환경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했던 사업성과를 내지 못했고, 또 콘텐츠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콘텐츠 투자가 있어야 더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수입을 넘어서 과도한 투자가 재무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투자하기보다는 재무 안정성에 무게를 둔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투자 규모가 조금 부족하고 적지만 매출액의 일정 부분 50% 정도는 매년 콘텐츠 투자 비로 썼고, 또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황금알>, <동치미>, <나는 자연인이다>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좋은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난 것 이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회사 고용구조 때문에 비슷한 매출의 타 종편보다 투자 실적이나 계획이 조금 적게 나타난

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MBN의 외부제작비 규모는 결코 타사에 비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채널 때부터 함께 해 온 카메라기자, 방송기술 또 미술 같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을 회사에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타사처럼 콘텐츠 투자비로 집계되지 않고 간접제작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투자비로 집계되지 않아서 손해를 보고 있지만 이들을 외주하지 않아서 보도채널부터 계속된 공정한 방송이라는 더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 주신다면 편성책임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매일방송 대표이사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 입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제작비를 산정해서 방통위에 보고하고 나중에 ○원으로 당시에 직접제작비와 간접제작비 분류방법을 알고 수정해서 보고드렸는데 그중에 일부 포함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회선사용료라는 부분이 ○~○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고 바로 수정신고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나간 3년 동안 저희들 제작투자 실적이 현저히 적다, 그래서 제재를 받고 또 과징금을 물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2014년~2016년까지 본방송 제작건수로 보면 MBN이 타 방송에 비해서 적지 않거나 상당히 많은 수준의 격차가 나게 저희들이 제작건수가 많습니다. 뉴스를 제외한 일반 제작물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통계를 저희 내부에서 잡아 보니까 2016년 프라임시간대에 제작건수가 1년에 ○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 종편은 ○건이었고, 다른 종편은 ○건, 나머지 또 종편은 ○건대였습니다. 거의 ○건 정도 이상 격차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비를 산정해 보면 항상 저희들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제작 프로그램은 외주제작비를 줄 때에는 통계상 보니까 타 종편에 비해 4개 종편 가운데 두 번째 정도 됩니다. 적은 곳과는 ○원 정도 격차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뉴스 제작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직접제작비와 간접제작비와 나누어지는데 저희들은 영상취재 그다음에 영상편집, 미술, 기술 분야의 ○명 정도 됩니다. 이 분야의 인력을 저희들이 직접고용해서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일부가 아니라 MBN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종편사는 뉴스 관련 인력에 대해서 분사해서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인력 그다음에 장비, 감가상각 이런 모든 복리후생에 관련해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제작비로 산정되어서 제작비에 포함되고, MBN 같은 경우에 정규직으로 내부 직원과 모든 장비를 내부에서 구입해서 쓸 경우에는 간접제작비로 해서 포함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원 정도 격차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비 기준을 같이 동일하게 적용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가 내부에서 검토해 보니까 MBN의 순수제작비 투자 기준으로 보면 MBN이 ○번째 정도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저희들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시면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 **㈈매일방송 대표이사**

- MBN 대표입니다. 질문해 주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텐츠펀드 관련해서입니다. 저희가 2012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아시아문화펀드에 〇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1월에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 해지 이유에 대해서는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가 좀 더 효율적이다, 또 콘텐츠펀드에 대해서는 주로 영화 관련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방송, 드라마나 예능, 교양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해지하게 됐고, 또 저희는 직접 펀드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매일방송 대표이사**

-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2014년과 2015년에는 저희가 보도채널의 분류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적게 기재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발견하고 방통위의 분류기준을 정확히 적용을 했더니 〇원 정도 콘텐츠 투자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2016년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회선사용료에 관해서 콘텐츠 투자비로 잘못 기재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지만 답변을 3분 이내로 짧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편성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께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방편성 실적을 보면 지난 3년간 〇%에서 대략 〇%까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자 입장으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3년간의 계획을 보면 〇%~〇%로 오히려 높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방편성비율을 다시 이렇게 높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재방비율을 대체로 〇% 이하로 책정하고 있는 다른 종편PP들보다 MBN은 제법 높다고 판단되는데 프로그램 방영의 다양성을 위해서 재방비율을 축소시키는 개선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함축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방비율이 높아서, 저희들이 지키지 못해서 그

것도 지난번에 방통위에서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재방비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BN은 그동안 보도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보도비율을 0% 초반대로 낮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보도비율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보도를 많이 하면 재방비율이 낮아지고 보도를 적게 하면 재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3년간 계획에 0~0%라고 말씀드린 것은 가능하면 뉴스 비중을 줄이겠다는 계획과 함께 그 다음에 제작물을 좀 더 다양화시켜서 재방비율을 낮추겠다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방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주부 대상 프로그램을 낮시간대에 생방송으로 띠편성을 10시 30분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재방비율이 0%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다양한 제작물이 더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재방비율을 방통위에서 또 시청자가 요구하는 대로 점점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낮시간대 주부 대상 정보프로그램을 꾸준히 가져가면 재방비율은 0% 초반대에서 유지하고, 또 드라마나 다른 콘텐츠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가면 재방비율이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제 질문은 방송의 공적책무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이고, 크게 2가지를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비율을 줄이면서 공익적 프로그램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시청자들이 생각할 때는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익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줄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늘리겠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서 시청자 의견청취를 받은 결과 전체 87건 중에서 재승인을 반대하는 의견이 83건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청자 의견의 대다수가 보도의 편파성, 객관적이지 못한 논평 등 뉴스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MBN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구현하기 위한 내·외부적인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MBN에서도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2017년부터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내부의 자율성 보장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작·편성 책임자 등 주요 간부의 입면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MBN은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2018년부터 외부 전문가 2인을 포함해서 공정방송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정방송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언론 관련 학회 등 외부위원 추천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짧게 답변해 주시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주)매일방송 대표이사

- 보도 공정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보·막말·편파방송으로 인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 건수가 종편 4사 중 최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는 ○건을 받았는데 다른 종편들을 보면 ○건, ○건 그리고 제일 많은 종편이 ○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일 많은 종편보다는 ○분의 ○수준으로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위원회들을 구성해서 좀 더 공정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특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객관적인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 2명을 위촉했습니다. 또 공정방송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도책임자와 실무자를 포함하는 노사동수로 분기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MBN은 노조가 있고 또 기자협회가 있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조나 기자협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류호길 ㈜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허락해 주시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책임자입니다. 저희들이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나 토론 프로그램이 굉장히 공익적인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뉴스로 다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뉴스 비중을 줄이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수시로 제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방송의 공정성 관련해서 종편이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또 편파성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MBN은 그동안 공정한 부분, 막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가장 공정한 방송, 지난 3년간은 공정한 방송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말씀하신 외부전문가에 대해서 언론학이나 이런 쪽에서 추천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종편PP의 '외부 출연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기사에 게재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2017년 9월 4일~10월 1일까지 모니터 결과입니다. MBN의 출연자 겹치기가 1인 각 14회~28회, 성별 불균형이 남자 88.6%, 여자 11.4%로 편중이 심하고, 출연 정치인의 성향이 여당 19명, 야당 32명으로 편중이 심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정한 패널리스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MBN에서 운영하는 출연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인으로 하고 외부인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매일방송 대표이사

- 먼저 출연자들이 너무 편향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 또 말씀 주신 출연자위원회를 통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출연자가 있으면 철저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항의 경중에 따라 무기한 출연금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이 매일 출연진을 확인하고 있고, 저희는 이념적인 성향이나 소속 정당 그리고 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까지 고려해서 출연진들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출연자

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고,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 숙지하고 서면까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성별이나 또 출연자 겹치기 문제, 특히 출연자 겹치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도 신경 쓰고 있고 최대한 겹치지 않게 출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출연자를 발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타사 출연자까지 모니터하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출연자 겹치기를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장르 편중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2016년까지 15개 장르 중에서 뉴스, 시사논평, 버라이어티쇼, 다큐멘터리 이런 4개 장르가 전체의 ○%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심층보도는 1편도 없고 교육, 문화, 예술도 거의 없습니다. 향후 3년간 편성계획에서 이 4개 장르 편성비율을 ○%~○%로 낮추겠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11개 장르 편성이 여전히 굉장히 적습니다. 대표자께서 아까 종합편성 방송의 정체성에 맞도록 방송을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종합편성은 조화롭고 다양한 편성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장르 편중이 심한 근본요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이 요인이 해소될 수 있을지, 또 해소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매일방송 대표이사

- 저희가 종합편성을 처음 시작했을 때 드라마나 음악 프로그램, 예능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들을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청자들에게 인지도가 낮은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양한 편성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당장 11월 말에 <이웃의 탄생>이라는 드라마 촬영에 들어갑니다. 또 12월에는 <철수씨와 02>이라는 단편 드라마를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프로그램은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탐사보도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탐사보도는 2011년~2012년까지 <시사기획 맥>이라는 탐사보도 프로그램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기자들을 투입하는 많은 자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폐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보도를 통해서 탐사, 기획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고, 또 국정농단 사태 때는 특정보도로 기자협회에서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탐사보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문제,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단가에 대해서 재승인 신청서에는 “제작단가에

대한 분기별 시장조사를 통해 제작비를 현실화"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에서 요구했던 실제 생산요소에 대한 제작단가 시장조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을 못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제작비를 현실화했다면 물가상승률이나 제작단가 상승 등을 다 전반적으로 반영했을 경우에 <천기누설>의 경우 일부 프로그램에서의 제작단가가 3년 전에 비해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 종편사의 경우 한 달에 한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사는 방영권만 가지고 독립제작사가 저작권을 가지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MBN도 현재 시행하고 저작권 배분제도 외에 타 종편처럼 정기적인 편성물에 대해 상생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매일방송 대표이사**

- 제가 두 번째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작권 관련해서는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은 타 방송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새로 방송하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해외 판매 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제작사가 저작권을 갖는다면 제작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성공에 대한 과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실패했을 경우에는 또 그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같이 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제작사와 상생을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편성책임자가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입니다. MBN이 프로그램에 대해 장수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프로그램들에 대한 단가를 올려주는 것이 분기별 시장조사를 통해 현실화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이 방식은 제작본부장이 제작PD들을 모아놓고 전원 대상으로 해서 매월 첫 번째 주 월요일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은 시장의 PD들의 느낌이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제작단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실제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과 저희들이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〇~〇% 정도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천기누설>이 처음에는 제작사와 협찬 관련해서 제작사에서 협찬으로 이 비용을 충당하려는 것들 때문에 3년 전에 저희들이 제작비를 충분히 인상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를 보통 제작사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외면하지 않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항상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양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범해서 지금까지 〇~〇%가 대부분 다 올라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PD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시장조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 ㈜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저희들이 시장조사는 PD들이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일방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그렇지만...

○ 심사위원

- 그것이 시장조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 ㈜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예,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답변했습니다. 2가지 물겠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드라마 관련해서는 기획비용이나 위협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나눠 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청서 347페이지에 보면 드라마의 실제 제작비 대비 지급률은 ○%인데 저작권은 국내 저작권과 해외 저작권을 모두 제작사에 준다고 쓰셨습니다. 맞는 사실입니까? 저작권을 모두 국내, 국외 다 제작사에 준다고 분명하게 쓰셨습니다.

○ ㈜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책임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쓰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MBN이 드라마를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드라마 타이틀이 주 ○~○편씩 꾸준히 하다가, 저희들이 초기에는 시청률과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드라마를 제작해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드라마 제작 편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작된 드라마를 해외에 판매해 봤습니다. 전체 제작비 중 평균적으로 ○% 정도 저작권이 활용됐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MBN의 드라마 판매 파워 가지고 저희들이 겪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드라마는 그동안 거의 하지 못했는데 드라마를 한다면 저작권은 저쪽에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제작비의 ○% 정도 주면 저희들도 제작비를 ○% 정도 세이브를 할 수 있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한 3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드라마에 대한 브랜드파워가 높아질 경우에는 또 다른 형태로 저희들에게 제안이 들어옵니다. 드라마제작부가 3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에 드라마팀장을 임명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도 드라마를 해 보자, 그리고 다른데 드라마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것을 그 이후에 저희들이 드라마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판권을 소유하고 비용을 어떻게 하면 서로 분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지상파보다는, 지상파는 브랜드파워가 크기 때문에 비용을 적게 들이고 세어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제작비도 충실하게 주면서 저작권도 아무래도 지상파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제작사에 주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하는 분위기는 저희들이 최소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경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3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흑자로 전환이 되었는데 매출액이 전년 대비 〇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을 보니까 특별히 협찬 수익이 2014년에 〇원, 2015년에 〇원, 2016년에 〇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2016년 매출액 증가의 한 〇%가 협찬수익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협찬수익은 어떤 것이며, 특별히 2016년에 크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비의 대부분을 협찬수익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되며, 또 이런 형태의 수익구조가 종편의 바람직한 수익모델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협찬수익의 증가로 인해서 2016년에 경영도 흑자로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에 콘텐츠에 대한 투자계획은 제대로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과연 방송사로서 바람직한 모습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매일방송 대표이사

- 저희가 협찬 매출이 〇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종편도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지상파를 말씀드리면 협찬 비율은 적지만 금액은 저희보다 훨씬 큼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광고를 늘리고 또 매출을 늘린다면 자연스럽게 협찬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2018년 예상해 봤을 때 광고가 〇원이고 협찬이 〇원으로 그 비중이 〇%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2016년에 협찬수익이 〇원 정도 증가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시청률이 조금 좋기 때문에 협찬사들의 제안이 많이 와서 자연스럽게 협찬이 늘게 됐습니다. 또 협찬이 많은 것이 좋냐, 바람직한 수익모델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협찬보다는 광고매출이나 다른 부분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미진한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외주화를 하지 않고 직접 고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편 도입 목표 중 하나가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있고, 날이 갈수록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사도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전략 방향에서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로 국내 방송시장 성장둔화 극복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재승인 신청서 538페이지에 제시된 해외방송프로그램 판매매출 자료를 보면 2014년~2016년 3년간 〇원 수준, 연평균 〇원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방송 프로그램 판매매출액 대비 비율로 봤을 때도 2014년 〇%에서 2016년 〇%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해외 판매매출 계획 측면에 있어서도 2018년 〇%, 2020년 기준 〇%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조금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외 콘텐츠 매출 확대에 대해서 경영진의 견해와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방송 대표이사

- 저희가 22년간 방송 경험을 통해 ○만 해외 가시청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편 4사 중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가시청자 수준을 ○만에서 ○만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를 미 전역에서 생방송으로 볼 수 있고, 또 뉴질랜드, 필리핀 같은 곳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판매에 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편 초기에는 드라마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드라마 제작을 조금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해외 콘텐츠 수출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시트콤드라마나 또 아까 말씀드린 예능드라마 같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작하고, 내년에는 더욱 더 제작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외 판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글로벌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세계시장에 유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다음으로는 경영의 투명성·공정성 강화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BN은 대표이사, 이사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객관성의 확보 방안으로 '경영진을 전문 경영인으로 구성하여 방송의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재승인 신청서 434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는데 현 대표이사 회장 및 사장 두 분 모두 방송인 출신 전문경영인이 아니며, 매일경제신문사 창업자의 가족으로 알려져 있어서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전문 경영인 중심 경영체제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구하고 계신 경영방향이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경영인지, 아니면 방송전문 경영인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립성 및 객관성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감사 선임에 있어서 현 감사 2명 중 1명은 매경미디어그룹의 부회장으로 매일경제신문사의 특수관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3명 모두 역시 방송과는 무관한 업종의 기업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한다면 경영에 있어서의 전문성은 물론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11년 종편 승인 심사 시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회와 사장 공모 추천제를 약속하셨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방송 대표이사

- 먼저 각 방송사마다 처한 사정과 역사 그리고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말씀해 주신 방송의 책임경영 또 독립성과 객관성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방송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 MBN에는 보

도채널부터 20년 동안 함께 해 온 임직원들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사내 동수의 편성위원회 그리고 공정방송위원회 같은 기구들을 마련해서 좀 더 공정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종편 유일하게 노동조합이 저희 경영진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성·보도제작의 권한을 분리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본부장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 경영진들도 각 본부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편성책임자가 좀 더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 회장님이 신문 출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94년부터 회장님은 MBN 경영을 시작해서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해 오셨습니다. MBN을 초기에 보도채널로 만들 때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방송 경영이나 방송의 콘텐츠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당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할 때 다른 언론사들에게도 여러 자격을 쫓지만 그때 유일하게 MBN만이 케이블이 시작될 때 방송하겠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20여년 넘게 방송을 해 왔기 때문에, 또 책임경영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방송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MBN의 경영은 독립성 때문에 어떤 편파나 그다음에 한쪽 쏠림현상으로 인해 비난받는 그러한 대열에서 MBN은 항상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고용 관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기대효과가 일자리 확대라는 명분을 세웠던 것 같고, MBN도 사업계획서를 통해 2015년까지 정규직 기준으로 ○명의 인력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14년 말 정규직으로 ○명을 고용하는 데 그쳐서 처음 출발할 당시에 약속한 인원의 반도 채용하지 못했는데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두 번째로는 2017년 현재 정규직은 ○명으로서 2014년에 비해 순증한 근로자가 ○명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3년 동안 ○명을 채용했다고 계획서에 쓰여 있는데 실제로 이직한 숫자도 한 ○명 가까이 되어 있어서 이런 이직 상황이 굉장히 많은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계약직, 파견직까지 포함한 총 근무인력 ○명 중에서 정규직이 ○명, 계약직 ○명, 파견직 ○명 등으로 비정규직이 ○명으로 전체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범할 당시에 약속한 일자리 확대 취지에 부응하고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서 채용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특히 2016년부터 흑자로 전환된 부분을 감안해서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여력이 됐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매일방송 대표이사**

-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규직의 순증이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직이나 타 방송사로 가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규직을 뽑으려고 했지만 수습으로 정규직을 더 뽑기에는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조금 미흡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접고용도 말씀을 주셨지만 간접고용도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외주제작의 경우 교양프로그램에는 0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있고, 또 예능 같은 경우에는 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8월 기준으로 외부인력이 0명 될 정도로 간접고용 효과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신규로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기자 0명 그리고 PD 0명 해서 총 0명을 뽑았습니다. 걱정해 주신 대로 좀 더 고용을 확대하고 정규직 비중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추가로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MBN은 오래 전부터 계속 사업자는 아니지만 보도채널을 오래 하다가 종편의 승인을 받아서 종편채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MBN은 직접 고용으로 인한 인원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0명 정도 선입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준으로 타 종편사의 경우에는 0명 선 이하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MBN이 내부 고용으로 인한 직접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비율도 타 종편사나 아니면 타 방송사와 비교해서도 저희들 정규직 비중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내부에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다음 기술 분야 질문입니다. MBN은 2014년 재승인 시 2016년까지 삼송지역에 제작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번 재승인 심사 시 2021년까지 삼송 본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 방송장비 도입 등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 본 건은 재승인 조건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는 심각한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방송 대표이사

- 먼저 삼송제작센터 삼송 본사에 관련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송 프로젝트가 조금 연기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송 프로젝트는 규모가 0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시급성이나 또 자금 사정으로 공사 시기가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투자의 시급성을 말씀드리면 삼송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이유가 방송 제작환경, 특히 스튜디오 환경의 개선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상암DMS, 일산 빛마루 같은 그런 외부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 자금 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적자가 누적되었고 또 방송 경영환경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시기를 조금 늦추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송 주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그 당시에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또 주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고, 또 주변에 계획됐던 다른 투자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삼송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설계가 완성되어 있고 인허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내년 0년에 착공을

해서 ○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삼송 제작센터가 완공되면 촬영이나 편집, 더빙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UHD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UHD 방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시청자, 소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중편과 홈쇼핑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연계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MBN에서도 <천기누설>이나 <엄지의 제왕> 같은 프로그램에서 건강식품을 소개한 이후 채널을 돌리면 금방 홈쇼핑에서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의견취취에서도 ‘장사에 눈이 먼 MBN 절대 재승인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2016년 급속히 늘어난 ○원이나 되는 협찬수익의 연계편성이 행여 효자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습니까? 만약 문제의식이 있다면 개선의지는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매일방송 대표이사**

- 저희 중편과 홈쇼핑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과관계나 연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과거에 여러 가지 지적들을 주셨고 저희의 건강 프로그램이 효능에 대해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타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저희 MBN의 편성이 영향을 받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 열세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시청자 권익에 대한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의견 및 불만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단순 문의이고 또 100% 처리됐다고 신청서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 내역을 보면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및 불만이 해마다 ○%, ○%, ○%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떤 문의사항이 있는지 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정기적인 시청자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 시행 자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상황>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평가가 매해 가장 나쁜데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매일방송 대표이사**

- 시청자 민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문의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내용에 대한 단순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한 문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또 보도에 관련

해서는 저희 출연진들에 대한 불만, 또 한 출연진을 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을 비판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불호가 갈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는 양쪽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상황>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상황>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에 관한 것을 재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극적인 장면이나 내용이 조금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의 의도는 좀 더 권선징악적인 내용, 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1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재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심사위원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의견청취한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나 또는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출연자심의위원회 운영 부분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 외부 출연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출연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연자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정성 시비가 계속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내신데 보니까 출연자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만 했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출연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보도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장을 외부인으로 하고 외부위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추가로 답변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이 없었던 점은 충분히 저희들이 추가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MBN은 시청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정성과 막말 이런 방송의 품위와 관련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인사가 포함된 출연자심의위원회는 여러 단계 중 사실은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단계 검증시스템으로 인해서 출연자가 제작PD와 거기의 소속원들이 일단 출연자를 선정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스크 회의를 거쳐서 사전에 심사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날 결재를 받아서, 그것은 출연자의 품위 그다음에 이념적인 균형, 막말 여부, 그동안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저희들이 먼저 판단하고 출연을 시킵니다. 그리고 출연자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정 기간 내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시청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양한 시청자의 의견 그다음에 공정성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아픈 지적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도국에서 운영하는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자에 대해서는 보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되 외부 출연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객관성 있는 인사를 모시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편성책임자 분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점이 듭니다. 방송의 전문성을 이야기하시면서 20년 동안 보도채널을 해 왔다는 점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보도채널이 일반적인 종합적인 보도채널이 아니라 경제전문 보도채널입니다. 매일경제 역시 경제지로서의 전문성은 인정하는데 종합편성이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경제지다 보니까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중요시하고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 종합편성이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어야 그것이 종합편성이고, 그런 시청자들을 우선시 하는 방송이 될 때 공익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막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방송의 품격이라고 이야기하지, 그것을 공익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지금까지 쪽 듣다 보면 종합편성채널로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도 경제지 중심의 마인드, 아까 20년 동안 지속해 왔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도 종합편성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아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종합편성채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입니다. 제가 답변 과정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느낌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방송의 경험이 쪽 있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공익적인 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법 제6조에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해서 편성원칙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공익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수자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하느냐, 또 그분들에 대해 따뜻한 배려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작지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BN은 <소중한 나눔 무한 행복-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장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출연시켜서 그 방송을 통해 ARS 자발적인 모금을 해서 그 모금액을 직접 바로 그쪽으로 전달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으로 인해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 0원 정도 소수자에게, 거기 출연자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MBN이 종편에서 유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MBN의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사노라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들 어렵게 살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분들, 그분을 통해서 대리 만족하고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구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서 MBN이 대체로 보면 공익적인 프로그램 면에서도 선정적이거나 이런 프로그램들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고 국민 정서를 순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 과정 중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을 일정 정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MBN도 '11년 종편 승인심사 당시에 그런 취지로 감사위원회와 사장공모추천제를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행이 잘 안 됐습니다. 아까 질문에도 있었는데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작편성책임자 등 주요 간부 임면(任免)에 구성원들 의견을 일정 정도 수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2가지 질문을 아까 했었는데 답변을 제가 충분히 못 들은 것 같아서 그 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매일방송 대표이사**

-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런 점에 대해 아까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 방송사마다 처한 역사가 다르고, 또 각 제도마다 경영체제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유와 경영의 분리도 중요한 문제지만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또한 중요한 독립성 관련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편성·보도제작의 권한이 조금 더 분리되어 있고 그런 각 부문 체제로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오늘 제출하신 협찬수익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오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명이 있고 7월, 8월 협찬 일부가 있었는데 MBN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천기누설>이 빠져 있는데 <천기누설>은 협찬수익이 없었습니까?

○ **(주)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천기누설>이 빠지게 된 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어떠한 회사 협찬, 이렇게 요청하는 프로그램에는 <천기누설>을 넣지 않았습니다.

○ **심사위원**

- 받은 적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협찬수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주)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천기누설>에서는 저희들이 협찬수익이 없습니다.

○ **심사위원**

- 전혀 없습니까?

○ **(주)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예.

○ 심사위원

-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찬수익에 금액과 현물이 함께 포함된 금액입니까? 현물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 협찬금만 나와 있는 것입니까?

○ ㈜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저희들이 구분한 것은 우선 프로그램 협찬금만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현물은 포함이 안 된 금액인 것이지요?

○ ㈜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아닙니다. 현물은 일반제작 프로그램의 PD들이 간혹 협찬을 받지만 제작 프로그램의 가격을 낮추는 것에 그 당시당시마다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분류하지 못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이 협찬금액은 최소 금액인 것이 맞습니까? 이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 ㈜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일반 프로그램 협찬은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맞습니다.

○ 심사위원

- 알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전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은 공적책임이 있다는 것은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MBN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으며, 편성시간이 언제인지를 밝혀 주시고 방송시간을 그 시간대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방송 대표이사

-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소수 시청자인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했던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0%인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확대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전문채널이 많이 존재하고 또 최근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시보기로 시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애니메이션과 어린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중소제작사와 협업을 통해 좀 더 양질의 애니메이션을 많이 공급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시간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심야시간대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도 많은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 10월부터는 시간대를 주말 오후 5시로 변경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편성을 변경하였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추가 질문이 아니고 아까 초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 선임에 있어서 독립성 그리고 객관성 확보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으셨고, 감사위원회 설치 미이행에 관한 문제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제가 더 궁금해 한 것은 이쪽 부분이었는데 전혀 설명은 하지 않고 간과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 **㈜매일방송 대표이사**

- 말씀 주신 대로 감사위원이라는 조직이 현재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2명의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이사진들 그리고 경영진들의 직무 집행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 준법경영 그리고 투명경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음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지금까지 어려운 질문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비교적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나무> 관련해서 ARS 모금액을 전달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ARS을 통해 모금된 금액 전액을 전달합니까, 아니면 편성하면서 생기는 제작비를 차감하고 지급하십니까?

○ **㈜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ARS 관련해서 불이웃에 대해 우리가 모금해서 전달하는 것은 우리 회사 내 회계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직접 전액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다하게 ARS로 모금이 되면 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추가로 얼마 이상을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했다가 다시 추가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 **심사위원**

- 두 번째로는 <뉴스8>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간을 7시 30분에 방영하면서 타이틀을 왜 <뉴스8>로 했는지 궁금해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 집 시계가 틀렸나?' 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그것도 편성책임자가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벌써 <뉴스8>로 정해진 지가 오래 됐습니다. 한 4년,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조금조금씩 변동은 있었는데 <뉴스8>이라는, 처음에 8시에 시작이 돼서 MBN의 메인뉴스로 자리 잡았는데 시간을 옮기는 과정에서 <뉴스8>을 떼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러한 의견이 내부에서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브랜드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겠다는 쪽이 우세해서 <뉴스8>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뉴스8>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뉴스로 MBN에서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린이가 소수라고 보는 시각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은 아직까지 소수지만 분명히 여성은 다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도 분명 소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 소수자를 배려하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시각의 전환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매일방송 대표이사**

-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마인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3분 정도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방송 대표이사**

- 존경하는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 좋은 질의와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콘텐츠 투자에 나서고 다양하고 재미있고 또 시청자에게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MBN이 중편으로서 두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재승인을 준비하면서 오보나 막말 그리고 편파방송이 없었는지, 공정한 방송을 하고 있었는지, 또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러 차례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저희 MBN이 보다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MBN은 언론이면서 동시에 콘텐츠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받는 언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생산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 편성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부터 공격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중편 시청자는 중장년층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젊은 층들이 좋아할만한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부터 새로운 MBN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저와 MBN 임직원들은 제2의 개국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장시간 좋은 질문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신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 오늘 오랜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매일방송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신청법인의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5분 폐회】

Ⅵ. 재승인 의결

1. 종편PP 재승인 의결(안건, '17.11.27)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2017 - 41 - 241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7. 11. 27.	
공개여부	공 개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매일방송 -

제 출 자	위원장
제출일자	2017. 11. .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매일방송 -

< 2017. 11. 27.(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

1. 의결주문

- 2017년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매일방송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17년 12월 1일부터 '20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제안이유

- 2017년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3. 경과사항

- '14. 11. 18. (주)매일방송 재승인 의결
- '15. 9. 24.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의결
- '16. 8. 11.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 의결
- '17. 5. 30. (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서 접수
- '17. 9월 시청자 의견청취('17. 9.1.~9.30까지 총 87건 접수)
- '17. 11월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17. 11.8.~10일, 총 3일간)
※ 심사기간 중 대상 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 실시('17.11.9)

4.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가. 구 성

- 「'17년도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장 및 분야별 전문가 12명(방송·미디어 3명, 법률 2명, 경제·경영·회계 3명, 기술 1명, 시청자·소비자 3명) 등 총 13명

※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

분야	성명	현직
심사위원장	이광재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방송(3인)	정연우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최용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상기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법률(2인)	김영성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양윤숙	법무법인 태을 변호사
경영·회계(3인)	김진기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태민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강평경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기술(1인)	허남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방송·미디어연구소 Project Leader
시청자·소비자(3인)	김자혜	(사)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최경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나. 운영

-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 : '17. 11. 8.(수) ~ 11. 10.(금) (총 3일간)

<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일정 >

구분	주요 내용
11. 8(수)	재승인 세부심사기준 의결,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 등
11. 9(목)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 사업자 의견청취, 계량평가결과 및 추가 심사자료 의결, 심사평가표 및 심사의견서 작성 등
11. 10(금)	심사의견서 의결

5. 심사평가 결과

-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651.01점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을 충족하였음

-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는 총점 100점 중 37.06점을 획득하여 과락

※ 재승인 기준 :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1,000점 만점 중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며, 650점 이상이라도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항목이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가능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에도 조건부 재승인 가능)

< 심사평가 결과 >

심사사항 (배점)	점수	비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326.86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122.55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106.16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58.38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37.06	항목 과락
합 계	651.01	재승인

6.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가. 중점심사 항목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 오보·막말·편파 심의제재 건수가 기타 종편3사에 비해 적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건수가 2014년 9.9%에서 2017년 46.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보도 프로그램 편파성에 대한 불만 해소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다양한 분야의 조화로운 편성)

- 뉴스·시사논평·버라이어티쇼·다큐멘터리 등 4개 장르가 매년 96.5%~96.7%를 차지할 정도로 편성이 집중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탐사보도, 교육·문화·예술, 영화 등 기타 장르의 편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재방편성 계획을 신청서에 약 47%로 제시하였으나 사업자 의견청취시 40% 초반대로 낮추겠다고 답변한 점을 감안, 40% 초반의 구체적 수치를 다시 제출받을 필요가 있음
- (콘텐츠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시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향후 3년간 콘텐츠 투자계획도 종편사 중 가장 적은 액수로 나타나 콘텐츠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나. 그 외 심사 항목

○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협찬은 방송의 공익성을 해할 우려도 있는 점을 감안, 협찬 수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수익이 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당초 승인시 약속한 일자리 확대 취지에 부응하고,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채용인원 확대에 노력하고,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성이 있음

○ (방송발전 지원 계획 및 방송법령 등 준수)

- MBN 자체적인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외주제작사의 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하게 지불하도록 하고, 외주제작사 선급금 지급을 위한 내부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저작권 및 방영권 등 수익배분에 있어 외주제작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세부 내용은 <붙임3> 참조

7. 검토 의견

- 방송법령 및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총점 1,000점 중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과락항목이 있으므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
 - 사업계획 및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과 함께 '외주사와의 상생방안' 등에 대한 별도 조건을 부가

< (주)매일방송 주요 재승인 조건 >

-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8년은 6월 30일까지 별도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
-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14년 4건, '15년 2건, '16년 3건을 받아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2018년부터 재승인 유효기간까지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
-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2018년부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재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외주제작사와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17년 12월 1일부터 '20년 11월 30일까지로 함

※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8. 향후 계획

- '17. 11월 말 승인장 교부
- '17. 11월 말 재승인 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 '18. 3월 중 재승인 백서 발간

붙임 1. (주)매일방송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2.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
3.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서
4. 종편PP 심사평가항목 및 배점. 끝.

(주)매일방송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구 분	내 용
재승인 조건	<p>1.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p> <p>※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개선계획이 우선함</p> <p>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8년은 6월 30일까지 별도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p> <p>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14년 4건, '15년 2건, '16년 3건을 받아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2018년부터 재승인 유효 기간까지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p> <p>4.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2018년부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p>※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프로그램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붙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p> <p>5.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p>6.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 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구 분	내 용
	<p>7.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재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p> <p>8.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외주제작사와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p>권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불만 사유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여성노안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당 시청자의 가시청시간대를 고려하여 편성할 것 ○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수익을 창출하여 협찬수익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고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계약직 및 파견직 등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2011년 승인 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국산 방송장비 도입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붙임2>

<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 >

장르	정의
뉴스	○ 국내외 사건, 사고, 쟁점 등과 관련해서 진행자를 중심으로 기자가 취재한 사실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정규 뉴스 및 특별 편성 뉴스포함)
탐사보도	○ 국내외 특정 시사 쟁점에 대해, 심층적인 탐사 취재 사실 및 관련 분석 내용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시사논평	○ 국내외 시사 쟁점 관련 보도내용(자사 및 타사)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 사실에 입각한 촬영과 합리적 재구성을 통해 현실을 기록하는 프로그램
생활정보	○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있는 정보와 화제 거리를 안내하거나 소개하는 프로그램
토론·대담	○ 특정 주제에 관해 진행자가 관련 전문가의 입장을 묻거나 관련 전문가가 찬성 반대 등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프로그램
교육문화예술	○ 교육 : 정규교과과정을 다루거나 그에 준하는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 교양 강좌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 ○ 문화·예술 : 전통문화예술과 현대문화예술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
드라마	○ 서사(narrative)구조를 지니는 허구적 구성물(fiction)
버라이어티쇼	○ 토크 버라이어티 쇼, 연예정보 쇼, 토크 쇼, 연예시상식, 시청자 비디오 모음 등의 오락 쇼 프로그램
음악쇼	○ 대중음악 일반을 다루는 프로그램
퀴즈·게임쇼	○ 지식이나 재치,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
코미디	○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의 연기 비중이 높거나 프로그램 전체의 목적이 희극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영화	○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서사가 있는 허구물
스포츠	○ 모든 종류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스포츠 뉴스(뉴스)와 특정 스포츠의 교습(교육·문화·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외
애니메이션	○ 실사영화와 다르게 다양한 제작방식을 통해서 구현되는 장르로 셀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페이퍼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등을 의미

※ 토론·대담 프로그램이란 특정주제에 관해 찬성·반대를 토론하거나 한 인물에 대해 집중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017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2017.11.30.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신청서 검토, 의견청취, 심사평가 등을 하고 다음과 같이 심사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 11. 10.(금)

□ 2017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1. 심사사항 별 소견

가. 중점심사 항목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 오보·막말·편파 심의제재 건수가 기타 종편3사에 비해 적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으나 이의 실질적인 운영 및 개선 노력이 미흡함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출연자심의위원회의 외부인 비중을 늘리고 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작·편성의 독립성과 내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과 주요 책임간부의 임면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건수가 2014년 ○%에서 2017년 ○%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보도 프로그램 편파성에 대한 불만 해소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시청자 권익보호)

-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등에서 이익집단 성격의 협회 추천자 및 전문가 비중은 높은 반면 언론시민단체, 환경, 인권 등 공공성과 시민성이 강한 단체의 추천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을 감안, 향후 추천에서 시청자 대표성을 높여야 함
- 시청자 의견 및 불만 접수 시 인터넷 접수의 경우 악의적 비방이 많다는 이유로 통계에서 누락시킨 바, 객관적 사실 자체로 통계를 작성하고 내용을 파악한 뒤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천기누설’, ‘엄지의 제왕’ 등 프로그램에서의 건강 기능식품의 홍보와 동 시간대 홈쇼핑 채널에서의 관련 식품 판매가 연계된다는 소비자 불만과 관련, 동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송사 내부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다양한 분야의 조화로운 편성)

- 뉴스·시사논평·버라이어티쇼·다큐멘터리 등 4개 장르가 매년 0%~0%를 차지할 정도로 편성이 집중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탐사보도, 교육·문화·예술, 영화 등 기타 장르의 편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재방편성 계획을 신청서에 약 0%로 제시하였으나 사업자 의견청취시 0% 초반대로 낮추겠다고 답변한 점을 감안, 0% 초반의 구체적 수치를 다시 제출받을 필요가 있음
- 어린이의 현실적 시청시간대를 고려하여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을 오전7시~9시, 오후 5시~8시로 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콘텐츠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시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향후 3년간 콘텐츠 투자계획도 종편사 중 가장 적은 액수로 나타나 콘텐츠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 연도별 이행실적 점검 시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이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등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

나. 그 외 심사 항목

○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 협찬은 방송의 공익성을 해할 우려도 있는 점을 감안, 협찬 수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수익이 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매출구성에서 협찬매출이 '14년 ○원, '15년 ○원, '16년 ○원으로 급증했으며, '16년 매출액의 전년대비 증가액 ○원 중 ○%에 해당되는 ○원이 협찬매출 증가에서 나온 것임

- 당초 승인시 약속한 일자리 확대 취지에 부응하고,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채용인원 확대에 노력하고,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성이 있음
- 감사 2명 중 1명이 매경미디어 그룹의 부회장으로 대주주인 매일경제신문사의 특수관계자이며, 사외 이사 3인 모두 비방송 업종의 기업회장이라는 점에서 방송의 전문성, 경영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1년 승인시 약속한 '사장공모 추천제'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9월 ~ 2017년 8월까지 국산 방송장비 및 솔루션 투자계획(○원) 대비 실적(○원)이 약 ○%선으로 아주 저조한 점을 감안, 향후 투자계획(○원)에 대해서는 연도별 이행실적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방송발전 지원 계획 및 방송법령 등 준수)

- 제작단가에 대한 분기별 시장조사를 통해 제작비를 현실화 했다고 실적에 기입했으나 실제 제작단가의 분기별 시장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콘텐츠 공정거래 노력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짐
- MBN 자체적인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외주제작사의 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하게 지불하도록 하고, 외주제작사 선급금 지급을 위한 내부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저작권 및 방영권 등 수익배분에 있어 외주제작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재승인 조건 및 권고(안)

심사사항		조건	조건(권고)
공통			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조건)		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14년 4건 '15년 2건 '16년 3건을 받아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2018년부터 재승인 유효기간까지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편성의 다양성	조건	4.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2018년부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프로그램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불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 5.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을 2018년부터 42.3% 이하로 하되, 매년 1% 포인트 이상 단계적으로 감소시킬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권고	①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당 시청자의 가시·시청시간대를 고려하여 편성할 것
	콘텐츠 투자 (조건)	6. 방송 콘텐츠 투자 실적 및 계획이 현저히 미흡하므로, 향상된 콘텐츠 투자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재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 이를 준수할 것 (부가단서) '콘텐츠 투자금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경영 전문성·독립성·투명성 (권고)	② 이사 및 감사 선임 시, 방송사업 경영의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수익의 건전성 (권고)	③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수익을 창출하여 협찬수익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고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일자리 창출(권고)	④ 계약직 및 파견직 등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2011년 승인 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	
	국산장비 (권고)	⑤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국산 방송장비 도입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방송발전 계획	방송산업 상생 (권고)	⑥ 외주제작사 등 방송관련 유관사업자와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종편PP 심사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사회,문화적 필요성(210)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60)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60)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70)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30)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40)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8)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1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90)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이행실적의 적절성(45)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45)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80)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적의 적절성(40)
		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40)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20)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의 우수성(8)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이행계획의 우수성(12)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경영.재정.기술적 능력(100)	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50)	경영.투자 실적의 적정성(20)
		경영.투자 계획의 적정성(30)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30)	부채비율(12)
		자기자본순이익률(9)
		총자산증가율(9)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20)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8)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12)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30)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의 적정성(12)
		방송산업 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적정성(18)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감점)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감점)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감점)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감점)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70)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의 적정성(70)

2. 종편PP 재승인 의결(속기록, '17.11.27)

나.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주)매일방송 (2017-41-241)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7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7년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매일방송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17년 12월 1일부터 '20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16년 8월 11일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하였고, '17년 5월 30일 (주)매일방송이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17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17년도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심사위원장 및 분야별 전문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651.01점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는 총점 100점 중 37.06점을 획득하여 과락에 해당합니다. 참고표를 보시면 재승인 기준은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1,000점 만점 중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며, 650점 이상일지라도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항목이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재승인 및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고,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에도 조건부 재승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MBN의 경우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점에 미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과 관련해서는 오보·막말·편파 심의제재 건수가 기타 종편3사에 비해 적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건수가 2014년 9.9%에서 2017년 46.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보도 프로그램 편파성에 대한 불만 해소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조화로운 편성과 관련해서는 뉴스·시사논평·버라이어티쇼·다큐멘터리 등 4개 장르가 매년 96.5%~96.7%를 차지할 정도로 편성이 집중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탐사보도, 교육·문화·예술, 영화 등 기타 장르의 편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재방편성 계획을 신청서에 약 47%로 제시하였으나 사업자 의견청취 시 40% 초반대로 낮추겠다고 답변한 점을 감안, 40% 초반의 구체적 수치를 다시 제출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콘텐츠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관련으로는 재승인 시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향후 3년간 콘텐츠 투자계획도 종편사 중 가장 적은 액수로 나타나 콘텐츠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 심사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기술적 능력과 관련해서는 협찬은 방송의 공익성을 해할 우려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협찬 수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수익이 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당초 승인 시 약속한 일자리 확대 취지에

부응하고,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채용인원 확대에 노력하고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방송발전 지원 계획 및 방송법령 등 준수와 관련해서는 MBN의 자체적인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외주 제작사의 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적절하게 지불하도록 하고, 외주제작사 선금급 지급을 위한 내부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저작권 및 방영권 등 수익배분에 있어 외주제작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방송법령 및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점 1,000점 중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과락항목이 있으므로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계획 및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과 함께 '외주사와의 상생방안' 등에 대한 별도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㉞)매일방송에 대한 주요 재승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8년은 6월 30일까지 별도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 다음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14년 4건, '15년 2건, '16년에 3건을 받아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2018년부터 재승인 유효기간까지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 다음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2018년부터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음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음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재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외주제작사와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 및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17년 12월 1일부터 '20년 11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11월 말 승인장 교부 그리고 재승인 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년 3월까지 재승인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MBN은 지난 '96년부터 방송을 해 온 경제보도 전문PP로서 종편PP 4개사 중 방송의 공적 책임 의식이 잘 정립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과거 독립PD 폭행사건 등 과거 행태는 물론 이번 심사과정에서의 허위 자료 제출 사례 등을 볼 때 MBN은 방송의 공적책무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매일방송의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심사 항목에서 37.06%의 과락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건부 재승인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국장님,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및 재승인 심사를 할 때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심사합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두 번째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는 첫 번째는 품격 있는 방송프로그램 그리고 조화로운 프로그램의 편성 그 부분과 콘텐츠의 적절한 투자, 이를 통한 시청자에 대한 보호 이 부분이 중점 심사사항이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런 것을 담아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사업계획서의 성격은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업계획서는 향후 재승인 유효기간 동안 사업자가 이행할 계획이고, 저희와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결국 사업계획서가 승인 및 재승인을 얻기 위해 자신들이 약속한 법적인 자기 구속력을 지닌 일종의 인가 문서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심사의견서에 보면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사항 이행에서 연도별 이행실적 점검 시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등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심각하게 재승인해 주어야 할 것이냐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의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이행방안 콘텐츠 투자 그리고 재방비율을 낮추겠다, 외주사와 상생방안을 담은 방송발전계획 등을 제출했습니다. 많이 개선 계획안을 냈는데 그러나 재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계획의 철저한 준수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가 이행실적을 중점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다 검토한 가운데 협찬 운영 및 관리 부분의 개선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주문하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관해서 주로 지적 나온 부분은 어떤 사항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협찬과 같은 경우에는 방송의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찬수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익이 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이번 재승인 심사 때 협찬 리스트나 품목별 협찬내용을 요청했었는데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제출을 프로그램별로 얼마 협찬을 받았는지는 제출했고, 다만 그 협찬을 어디로부터 받았는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밝힐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방송광고와 달리 협찬은 방송사에 직접 영업이 가능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적인 규제 근거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업비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타사에 유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 근거 신설 이전이라도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 방안 마련이 권고가 됐는데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별, 협찬주별로 또한 협찬내역별로 현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실행방안에 담아 주기 바랍니다. 또한 협찬 유치와 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협찬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MBN이 제출한 추가 개선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실적을 매년 받아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편성이라는 방송 자체가 처음 승인될 때부터 굉장히 의미를 가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일을 확실히 하도록 한 것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재방

비율이 47%라는 것은 그 책무를 지극히 망각한 것이라고 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승인과 관련해서 이것을 부관으로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향후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조차도 저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당 사가 여기에 제출한 계획보다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계속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종편4사가 현재 상태로 서로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정도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 가는 구조로는 안 된다, 지금 종합편성에 가장 가깝게 방송을 하는 사가 한 사가 있지요. 그런 구조로 좋은 쪽으로 계속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관은 확실하게 지키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송이 기본적으로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독립성이라는 것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야 기본적으로 가능한데 이사, 감사제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실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개선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외주제작사와 관계, 어느 사나 이것은 비단 종편뿐만 아니고 결국 지상파도 문제이고 다 문제입니다. 상생방안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표현이 예를 들면 표준계약서가 아니라면 그것이 마땅치 않은 표현이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협약서 같은 형태 이런 표현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여쭙 보겠습니다.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르면 개별 심사항목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에도 조건부 재승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개별 심사사항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은 과락을 정할 때 대충 60점 아래가 과락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송이라는 특성이 사회적인 책임, 공적인 책임이 굉장히 강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개별 심사사항이 평가점수가 40%, 이것이 기준이 맞는지 저는 아무리 안 돼도 50%는 되어야 한다, 40%라는 기준 자체가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종편이 승인된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리고 종편은 경영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공적인 책무를 더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과거에 이렇게 해 왔다는 관행 때문에 계속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것은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목표 중에서 개선해서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허가·재승인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무가 가장 중요한 역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사업자들이 일단 사업권을 획득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해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공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을 신장시키고 강화하는 쪽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 부관들은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2015년도에 재허가·재승인 관련된 기본계획을 의결해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 쪽 그동안 재허가·재승인을 진행해 왔고, 올해 MBN 재승인 그리고 다음 주쯤 의결하게 될 지상파 재허가가 끝나면 그 기본계획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지적들이 있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다 더 방송사의 공적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점수가 651점 나왔습니다. 지난 3년 전에 재승인 심사할 때 MBN이 몇 점 나왔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704점 받았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700점이 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가 뭘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지난번 '14년 재승인 이후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약속했던 내용들을 많이 이행 못했던 부분들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MBN 같은 경우 경제채널로 20년 이상 방송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심사위원회에서 넘긴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승인 불허에 준해서 사실상 추가 심사를 했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를 제외하고 제가 100점 기준으로 환산해 봤습니다. 두 번째 방송의 공적책임 210점 배점에 122점이면 58% 득점했습니다. 세 번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190점 배점에 106점이면 이것은 55.8% 득점했습니다. 네 번째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은 100점 배점에 58점이기 때문에 58% 득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송발전에 대한 기여 부분은 과락을 맞았습니다. 사실상 방송평가 점수가 없었다면 이것은 불허지요? 그렇게 봐야 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점수가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면서 논의했습니다만 마지막 안전에 올라 와 있는 방송평가가 과연 제대로 정확하게 방송 운영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서 타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MBN이 보여준 점수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시다만 추가 개선사항에 나왔던 2가지 정도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사의견도 있었습시다만 공정성 논란, 보도의 객관성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특히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서 MBN 측에서 제출한 개선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읽어주시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생방송 시사프로그램 출연자가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에 영구적으로 출연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이 있었고, 진행자로 인해 법정제재를 받았을 때 1회는 내부 징계, 2회는 교체, 타 종편에서 법정제재로 출연정지 조치를 받은 진행자와 출연자는 MBN에서도 동일하게 출연정지, 3회 법정 제재 시 프로그램 폐지, 방송 후 일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보고를 통해서 소속 정당 이슈별 균형 준수, 주 월간단위 출연자 비율 검증, 타사 언론사 기자들의 출연 확대, 출연자 심의위원회의 논의 및 의결내역 홈페이지 공개, 출연자 심의위원을 언론 관련 학회 등 공신력 단체 추천을 통해 위촉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이것을 다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안전 심사를 아주 점잖게 하시니까 MBN에 대한 심사과정이 아주 무난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과정에 대해 핵심적인 것을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MBN 같은 경우 지난번 재승인 심사 이후에 콘텐츠 투자금액과 관련해서 현재 소송 중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소송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MBN 쪽의 입장은 성실하게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라고 했고, MBN은 나름대로 어려운 방송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행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금액을 100%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랐다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번에 추가적으로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MBN 대표이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콘텐츠 투자 금액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번에 약속한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100%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100%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심결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해 두고자 하는 취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표철수 위원님께서 종편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해 언급하셨고 여기에 보면 지금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종편이나 지상파방송사나 편성 측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오히려 종편이 보도 부분이 높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은 뭐냐 하면 지상파에 대해서는 지상파 특히 지역 민방들까지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 특히 보도·제작에 대해서는 대주주들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조건 내지는 권고사항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종편에 대해 특히 보도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하는 종편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제4기 위원님들께서는 종편의 소유와 경영분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하신 것 입니다. 지금 논의과정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지 않지만 종편의 소유와 경영분리 문제, 특히 보도에 대해 대주주가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한 내부적인 원칙을 수립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검토했다는 것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많은 부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기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을 보면 보도프로그램의 편파성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는 9.9% 정도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불만건수가 그것밖에 안 됐는데 3년 뒤 지금은 46.4%로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 노력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출연자 1진 아웃제, 진행자가 한번 징계를 받으면 내부징계를 하고, 두 번째는 아예 교체한다, 법정제재 3번 이상 받으면 아예 프로그램을 폐지한다 이런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타 종편에 비해 수준이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채널A 쪽보다 약간 더 센 것 같고, TV조선보다 약한 수준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결론적으로 저는 종편들이 지금까지 해 온 방송들을 보면 초창기 진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제작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 출연자들이 대거 그렇게 해서 시간을 메우는 식의 생방송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보도전문채널과 별 차별이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혹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야말로 정말 이번 온 국민을 진영대결로 편 가르기 하는 이런 지나친 과도한 정치뉴스, 또 거기에 대한 분석은 이제 제발 그만하고 정말 종편답게 그렇게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 둡니다. 두 번째는 편성입니다. 편성도 다양한 편성이 되지 못해서 심사위원 의견을 보면 뉴스·시사논평·버라이어티쇼·다큐멘터리 등 4개 장르가 전체 편성비율의 97%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됐는지 짚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방비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일단 재승인 조건으로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이행비율대로 이행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버라이어티쇼나 다큐멘터리 부분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MBN의 중점 프로그램, 강세를 보이는 프로그램들이 그쪽에 많기 때문에 MBN이 그런 쪽 위주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지금보다는 개선되게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특히 한 가지만 확인해 둘 것이 자체제작 드라마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를 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드라마 편성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제출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과거 초창기부터 쪽 MBN 같은 경우 경제채널로서 방송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편을 허가받았고 종편을 시작했다면 이제 5년 지났으니까 종편답게 해서 드라마도 하고 그리고 특화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경제분야는 특화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타 종편과 똑같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저도 청문과정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표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사와 감사 그 부분이 심사의견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 2명 중 1명이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이고 또 대주주 매경신문사의 특수관계자이고 사외이사 3명 모두 비방송업종의 기업 회장이라는 점에서 방송의 전문성, 경영의 투명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승인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조건에 포함시켰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한번 읽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결안건 7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재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최초로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언제 들어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저희가 오늘 의결하면 2개월 이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에는 개선계획이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우선 MBN은 과거의 보도전문채널로서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아까 허 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종편보다는 그 경험을 살려서 더 잘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사실 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MBN 재승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방송사들의 재승인·재허가 과정을 더 엄격하게 새롭게 평가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방송평가위원회에 의해서 평가점수가 나오는데 이것이 변별력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변별력이 있었다라면 MBN은 낙제점 점수가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를 다시 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정성·공익성, 방송발전 기여도 이런 것 따지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새롭게 엄격한 기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차원에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사는 방영권만 갖고 제작자가 저작권을 갖는 이 시스템을 정착시켜서 방송계가 상생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방송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MBN에도 조건으로 제작사와의 관계, 제작비를 제대로 지급하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재승인이나 재허가 시 크게 반영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정착되고 우리 방송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게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하고 재승인·재허가 과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매듭을 짓고 가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표철수 위원님께서 과락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일괄적으로 주요 심사항목에서 50점만 넘으면 과락이 아닙니다. 그것이 과연 타당한 커트라인 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부분들은 좀 더 커트라인을 높게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은 종편사업자 등 방송사업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을 50점만 넘으면 통과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기준을 낮게 잡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안건이 의결되면 제3기 방통위에서 마련한 종합편성사업자 심사 기본계획에 의한 1차 심사가 다 끝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들에 대해 재승인할 때에는 다시 기본계획을 마련 해야 합니다. 그때는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송평가제도가 평가척도로서 타당성을 갖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종편들의 심사평가 기준들, 과락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위원들께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제4기 위원회에서 재승인·재허가 안을 마련할 때는 철저하게 새로운 방향에서 변별력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개별 과락점수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준으로 다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4기 위원회 재승인·재허가 기준안을 마련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Ⅶ.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청취 반영여부 공표**

**1. 종편PP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공고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와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구분	법인명	심사결과	승인 유효기간
종합편성	(주)매일방송	조건부 재승인	2020년 11월 30일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 여부

- (접수기간) 2017. 9. 1. ~ 2017. 9. 30.
- (접수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접수결과) 총 87건
-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접수된 시청자 의견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보고되어 심사에 반영됨